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01-10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I 유관기관 편





#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 제1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10
- 1-1①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 21
- 1-1② • 신성장기반자금(용자) ..... 27
- 1-1③ • 재도약지원자금(용자) ..... 33
- 1-1④ •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 38
- 1-1⑤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 43
- 1-1⑥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47
- 1-1⑦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49
- 1-1⑧ • 정책자금 이차보전 ..... 54
- 1-2 • 수출바우처 ..... 56
- 1-3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61
- 1-4 • K-스타트업센터(KSC) ..... 65
- 1-5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 69
- 1-6 • 온라인수출플랫폼 ..... 72
- 1-7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사업 ..... 75
- 1-8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 78
- 1-9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 81
- 1-10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85
- 1-1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88
- 1-12 • 연수사업 ..... 91
- 1-13 • 청년창업사관학교 ..... 94

1-14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98
1-15	•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102
1-16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105
1-17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08
1-18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112
1-19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15
1-20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120
1-21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23
1-22	• 구조혁신지원사업	127
1-23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131
1-24	• 성실경영평가 제도	135
1-25	• 진로제시 컨설팅	137
1-26	• 회생 컨설팅	139
1-27	• 내일채움공제	142
1-28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45
1-29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148

## 제2부 | 기술보증기금

2-1	• 기술보증	159
2-2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sup>+</sup> 우대지원 프로그램	163
2-3	•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166
2-4	•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69
2-5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171
2-6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73
2-7	• 창업기업 우대지원	175
2-8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178
2-9	• 클린플러스 보증	181
2-10	• 원클릭 보증	184
2-11	• 문화산업완성보증	186

2-12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189
2-13	·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191
2-14	· 탄소가치평가보증	194
2-15	· R&D 보증	196
2-16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200
2-17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204
2-18	· 기술평가	208
2-19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211
2-20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214
2-21	· 지식재산공제	217
2-22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220
2-23	· 기술신탁관리	224
2-24	· 기술임치	227
2-25	· TTRS(증거지킴이)	229
2-26	· 보증연계투자	231
2-27	· 벤처투자연계보증	233
2-28	· 엔젤투자연계보증	237
2-29	· VC투자매칭 특별보증	241
2-30	· 벤처확인평가	245
2-31	·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248
2-32	· 중소기업팩토링	251

### 제3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1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256
3-2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259
3-3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262
3-4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265
3-5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269
3-6	·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272

3-7 • 외식업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275
3-8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278
3-9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281
3-10 • 지역신용보증재단	284

## 제4부 | 신용보증기금

4-1 • 신용보증	292
4-2 •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297
4-3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00
4-4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303
4-5 • 보증연계투자	306
4-6 • 투자유선부보증	310
4-7 • 유동화회사보증	314
4-8 •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319
4-9 • 매출채권보험	322
4-10 • 잡매칭(Job Matching)	326
4-11 • 컨설팅	328
4-12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332
4-13 • 중소기업팩토링	335
4-14 • 녹색 공정전환 보증	338

##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5-1 • 202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345
5-2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346
5-3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348
5-4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350
5-5 • 기술금융 프로그램	352

## 제6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6-1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357
6-2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360
6-3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362
6-4 • 수출신용보증(매입) .....	364
6-5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366
6-6 • 단기수출보험 .....	368
6-7 • 중소기업Plus+보험 .....	372
6-8 • 환변동보험 .....	374
6-9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	378
6-10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	381

## 제7부 | 기업은행

7-1 • 2024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387
7-2 •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388
7-3 • IP사업화자금대출 .....	390
7-4 • IBK강소기업대출 .....	392
7-5 •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394
7-6 • IBK문화콘텐츠대출 .....	395
7-7 • IBK시설투자대출 .....	397
7-8 •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399
7-9 •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	401

## 제8부 | 한국산업은행

8-1 • 온렌딩대출 .....	404
-------------------	-----

##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 제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417
1-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21
1-3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425
1-4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429
1-5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432
1-6	로컬브랜드 창출	435
1-7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438
1-8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41
1-9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443
1-10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446
1-11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449
1-1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452
1-13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455
1-14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457
1-15	시장경영패키지지원	461
1-16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65
1-17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68
1-18	전통시장 화재공제	472
1-19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475
1-20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478
1-21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481
1-22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485
1-23	청년몰 활성화지원	489

1-24	• 온누리상품권 발행	494
1-25	• 일반경영안정자금	497
1-26	• 특별경영안정자금	501
1-27	• 소공인특화자금	505
1-28	• 혁신성장촉진자금	509
1-29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용자	513
1-30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516
1-31	• 경험형 스마트마켓	519
1-32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522
1-33	• 희망리턴패키지	526
1-34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29
1-35	• 상권정보시스템	532

## 제2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1	• R&D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543
2-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546
2-3	• 창업성장기술개발(R&D)	550
2-4	• 산학연Collabo R&D	555
2-5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559
2-6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563
2-7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67
2-8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570
2-9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573
2-10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576

2-11	지역특화산업육성	581
2-12	선도형 제조혁신 구축 지원	585
2-13	디지털협업공장	590
2-14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594
2-1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597
2-16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601
2-1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606
2-18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610
2-19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613
2-20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617
2-21	제조데이터 상품구매 지원	620

### 제3부 | 창업진흥원

3-1	예비창업패키지	628
3-2	초기창업패키지	632
3-3	창업도약패키지	635
3-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639
3-5	팁스(TIPS)	643
3-6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649
3-7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652
3-8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656
3-9	창업중심대학	660
3-10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664
3-11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667
3-12	재도전성공패키지	670
3-13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674
3-14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77
3-15	창조경제혁신센터	679

3-16 • 판교 창업존 운영 .....	681
3-17 • 메이커 활성화 지원 .....	684
3-18 • 청소년 비즈쿨 .....	688
3-19 • 도전! K-스타트업 .....	691
3-20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	694
3-21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696
3-22 •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699
3-23 • 창업지원포털(K-Startup) .....	702

## 제4부 | 중소기업유통센터

4-1 • 동반성장물 운영 사업 .....	708
-------------------------	-----

## 제5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1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713
5-2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717
5-3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721
5-4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	724
5-5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728
5-6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	731
5-7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734
5-8 •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	738
5-9 •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742
5-10 • MAS 컨설팅 및 등록 .....	745
5-11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	748
5-12 • 공공구매제도 운영 .....	752
5-13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755

## 제6부 | 중소기업중앙회

6-1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	764
6-2 • 사업조정제도 .....	767
6-3 •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	771
6-4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	774
6-5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776
6-6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780
6-7 •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	783
6-8 • 수출컨소시엄 사업 .....	785
6-9 •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ESG경영 툴킷 마련 지원사업 .....	789
6-10 • 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 확산 지원 .....	791
6-11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삼성전자) .....	793
6-12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포스코) .....	797
6-13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801
6-14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804
6-15 •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809
6-16 • 「참 관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	812
6-17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	815
6-18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	821
6-19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제도 .....	826
6-20 •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	831
6-21 •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	834
6-22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	837

##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1 · 기업간 거래공정화 .....	847
7-2 · 성과공유제 .....	852
7-3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	855
7-4 · 상생결제제도 .....	859
7-5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862
7-6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	866
7-7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869
7-8 · 기술보호지원반 .....	871
7-9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873
7-10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	876
7-11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	879
7-12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881
7-13 · 기술자료 임치제도 .....	884
7-14 ·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	887

## 제8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1 · 수출상담회 .....	894
8-2 · 예비창업패키지(지원사업정보 업데이트 예시) .....	896
8-3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	900
8-4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902
8-5 ·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C 수출 지원사업 .....	906
8-6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908
8-7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	910
8-8 · 이동KOTRA .....	913
8-9 · 무역사절단 .....	916

8-10	•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919
8-11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922
8-12	•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926
8-13	• 경제외교 활용포털	928
8-14	•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929
8-15	•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931
8-16	•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933
8-17	• 경제외교 활용 사업	936
8-18	•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938
8-19	• 트라이빅(TriBIG)	941
8-20	• 해외 진출 및 인증상담	944
8-21	•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서비스	947
8-22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950
8-23	• 열린무역관	953
8-24	•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955
8-25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957
8-26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959
8-27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961
8-28	• CES 혁신상 수상 지원	963
8-29	• 2024년 해외지사화사업	965
8-30	• 한국우수상품전	969
8-31	• 수출바우처사업	972
8-32	• 디지털 마케팅(buyKOREA)	977
8-33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979
8-34	•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982
8-35	•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984
8-36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987

## 제9부 | 한국무역협회

9-1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999
9-2	•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1001
9-3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1003
9-4	•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1005
9-5	• tradeKorea(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1007
9-6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1009
9-7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1012
9-8	•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1014
9-9	•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1016
9-10	•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4)	1019
9-11	• 해외 현지 전시·상담회 및 판촉전	1021
9-12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플래그십 B2B 상담회	1024
9-13	•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활용 「Step up to Export」 마케팅 진행	1026
9-14	•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1028
9-15	•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1031
9-16	•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1034
9-17	•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1036
9-18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1038
9-19	•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1043
9-20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1045
9-21	•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1047
9-22	•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1049
9-23	• 스타트업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1051
9-24	• 한·중 FTA, RCEP 현장방문컨설팅	1053
9-25	• FTA 콜센터 1380 운영	1056

## 제10부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10-1 · 한경협경영자문단 무료경영자문 .....	1060
10-2 · 경영닥터제 .....	1063
10-3 · 대기업 협력사(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	1065
10-4 · 중소기업 경영진단 .....	1066
10-5 · 맞춤형 교육 .....	1068
10-6 · 자문 우수기업 시상 .....	1070
10-7 · 중장년내일센터 .....	1072

## 제11부 | 대한상공회의소

11-1 ·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	1076
11-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	1078
11-3 · 코참경영상담센터 .....	1082
11-4 · 계약서 검토 서비스 .....	1084

# 제 1 편

---



# 유관기관 (금융기관)

## 제1편

### 유관기관 (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2부 > 기술보증기금
- 제3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4부 > 신용보증기금
-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 제6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7부 > 기업은행
- 제8부 > 한국산업은행

## 제2편

###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 제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2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3부 > 창업진흥원
- 제4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제5부 > 상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제6부 > 중소기업중앙회
-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8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제9부 > 한국무역협회
- 제10부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제11부 > 대한상공회의소

# 제 1 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용자)	○지원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li> <li>...</li> <li>■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li> <li>■ (추 가)</li> <li>■ (추 가)</li> </ul>	○지원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li> <li>...</li> <li>■ (삭 제)</li> <li>■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li> <li>■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li> </ul>
	○용자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용자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용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용자
신성장기 반자금 (용자)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li> </ul>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li> </ul>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li> <li>■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li> <li>■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li> <li>■ (추 가)</li> </ul>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li> <li>■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li> <li>■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li> <li>■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li> </ul>

구분	'23년도	'24년도
재도약지원자금 (용자)	<p>사업전환자금 ○지원예산 : 2,500억원</p> <p>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 : 가.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A, B, C등급)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p> <p>○지원내용 : 가.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p> <p>○지원예산 : 용자예산 총 980억원</p>	<p>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3,125억원</p> <p>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 : 가.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B, C등급) 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p> <p>○지원내용 : 가. &lt; 삭 제 &gt;</p> <p>○지원예산 : 용자예산 총 1,193억원</p>
	<p>재창업자금 ○지원예산 : 750백만원 ○지원조건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등</p>	<p>재창업자금 ○지원예산 : 1,000백만원 ○지원조건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요건 폐지</p>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p>○지원요건 &lt;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gt;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추 가) ■ (추 가)</p>	<p>○지원요건 &lt;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gt;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p>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용자)	<p>○지원금액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이내</p>	<p>○지원금액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이내</p>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p>○지원예산 : 67,500백만원</p>	<p>○지원예산 : 37,500백만원</p>
정책자금 이차보전	<p>○취급기관 ■ KDB, IBK,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p>	<p>○취급기관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p>

구분	'23년도	'24년도
수출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101,710백만원</li> <li>○지원기업수 : 2,644개사</li> <li>○지원기준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제도 연계지원을 위해 강소+단계 신설</li> <li>○평가지표 :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20% 비중으로 신설</li> <li>○기타 : 운임비 대폭 상승에 '물류바우처' 사업 별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111,860백만원</li> <li>○지원조건 : 3,370개사</li> <li>○지원기준 : 수출규모 이외 지정요건을 삭제하고, 수출바우처 사업 강소+단계를 강소단계로 통합하여 지원</li> <li>○평가지표 : '신시장 개척 노력' 평가지표를 30%로 확대</li> <li>○기타 : 운임비 안정화에 따라, '물류바우처' 사업 별도 운영을 폐지하고, 수출바우처 국제운송 메뉴판으로 지원</li> </ul>
글로벌화 지원플랫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17,514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17,816백만원</li> </ul>
글로벌화 지원플랫폼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K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세계 혁신거점에 거점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현지시장 진입, 안착, 스케일업 지원</li> <li>○지원국가 : 8개국(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스웨덴,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li> <li>○지원예산 : 14,440백만원</li> <li>○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투자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세계 혁신거점에 거점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현지시장 진입, 안착, 스케일업 지원</li> <li>○지원국가 : 9개국(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스웨덴,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li> <li>○지원예산 : 15,440백만원</li> <li>○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투자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li> </ul>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역사업별 모집 공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역사업 통합 공고</li> </ul>
온라인수출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마케팅 콘텐츠(동영상, 애플북 등) 제작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바이어 매칭 강화</li> </ul>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li> <li>○지원예산 : 5,474백만원</li> <li>○지원조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사항 없음</li> </ul>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교육비(등록금), 학과 운영비 등 지원</li> <li>○지원예산 : 15,036백만원</li> <li>○지원조건 : 중소·중견기업 소속 6개월 이상 재직자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사항 없음</li> </ul>
중소기업 특성화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변경사항 없음</li> <li>○지원예산 : 27,675백만원</li> </ul>

구분	'23년도	'24년도
인력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30,750백만원</li> <li>○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li> </ul>	○지원조건 : 변경사항 없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li> <li>○지원예산 : -</li> <li>○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li> </ul>	변경사항 없음
연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향상연수, 맞춤형 연수, 정책연수, 온라인연수 운영</li> <li>○지원조건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제외</li> </ul>	전년 동일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 사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규모 : 915명(개사)</li> <li>○지원예산 : 845억원</li> <li>○선정절차 : 3단계(서류→발표→심층)</li> <li>○민간주도형 : 4개소(경기북부, 대전, 제주, 부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규모 : 850명(개사)</li> <li>○지원예산 : 793억원</li> <li>○선정절차 : 2단계(서류→발표)</li> <li>○민간주도형 : 5개소(경기북부, 대전, 제주, 부산, 미정)</li> </ul>
창업성공 패키지 (글로벌 창업사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글로벌 D.N.A. 분야 혁신창업기업 패키지 지원</li> <li>○지원예산 : 10,863백만원</li> <li>○지원조건 : 업력 3년 이내 D.N.A. 분야 스타트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li> <li>○지원예산 : 13,859백만원</li> <li>○지원조건 : 업력 7년 이내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스타트업</li> </ul>
레저장비 산업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1,200백만원</li> <li>○지원대상 : 12개사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예산 : 600백만원</li> <li>○지원대상 : 6개사 이내</li> </ul>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필수 구축 (타 솔루션 등은 선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특화 지원 (타 솔루션 등은 일반형을 통해 지원)</li> </ul>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축설비 동시 지원</li> <li>○지원예산 : 5,450백만원</li> <li>○지원조건 : 감축 규제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축설비 동시 지원</li> <li>○지원예산 : 11,300백만원</li> <li>○지원조건 : 감축 규제대상이 아닌 중소기업</li> </ul>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24년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EU인정기관을 통한 검증 지원</li> <li>○지원예산 : 2,410백만원</li> <li>○지원조건 : CBAM 대상품목* 수출</li> </ul>

구분	'23년도	'24년도
		중소기업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른 50~90% 차등지원, 단 탄소바우처는 90% 일괄지원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분야 14개 프로그램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단, 탄소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 이하 제조 중소기업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른 45~85% 차등지원, 단, 탄소바우처는 40~85% 차등지원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분야 13개 프로그램 바우처 형태로 지원
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물량 : 사업전환컨설팅 400개사 ○지원조건 : 업력 3년 이상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지원물량 : 사업전환컨설팅 500개사 ○지원조건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원대상 : 가. <지원유형 신설>  나. <위기징후 식별기준 추가>  다.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라. 신용공여액 100억원 미만 마.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  ○지원예산 : 용자예산 총 677억원	○지원대상 : 가.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  * 벤처캐피탈(V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구조개선 목적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 나.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등급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용정보회사(6개사) : KoDATA,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다. 폐지 라. 신용공여액 200억원 미만 마. 협업 금융기관에서 당해 금융지원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 제외 ○지원예산 : 용자예산 총 745억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접수 : '23. 2월~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분야 : 최대 2개(세무·노무·법무 중) 지원한도 : 240만원	신청접수 : '23. 12월~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분야 : 최대 3개(세무·노무·법무 중) 지원한도 : 360만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회생 컨설팅)	신청접수 : '23. 2월~ < 워크아웃 컨설팅 > 지원대상 : 공동관리절차 기업	신청접수 : '23. 12월~ < 워크아웃 컨설팅 > 지원대상 : 공동관리절차 + 단독관리절차 기업

구분	'23년도	'24년도
내일채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기업·근로자가 5년간 공제금을 적립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li> <li>○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li> <li>○가입기간 : 5년</li> <li>○적립금액 : 2천만원 이상</li> </ul>	변경없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정부·기업·근로자가 3년간 공제금을 적립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li> <li>○가입대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청년근로자</li> <li>○가입기간 : 3년</li> <li>○적립금액 : 1.8천만원 이상</li> </ul>	변경없음
청년연계형 내일채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내용 : 기업·근로자가 3년간 공제금을 적립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li> <li>○가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 계속 근무중인 핵심인력</li> <li>○가입기간 : 3년</li> <li>○적립금액 : 1천만원 이상</li> </ul>	변경없음



##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5개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사용자 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
  -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에 공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용자한도

- 개별 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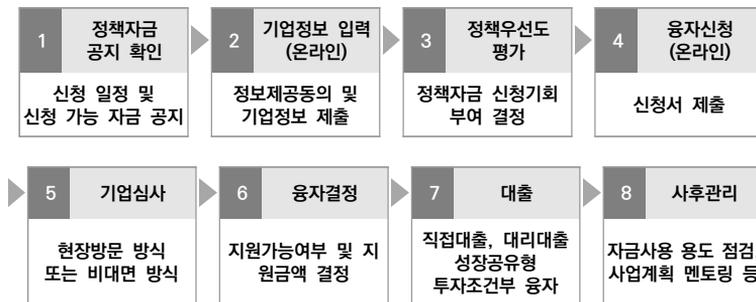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에 공지
-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별 대출 금리에서 0.3%p 차감
-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대기업, 자금조달 취약계층, 성과창출 기업 등에 금리우대를 통해 정책지원 목적성 제고
  - (정책우대) 소·부·장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0.1%p
  -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및 여성기업 0.1%p
  - (투자연계) 투자조건부융자 방식 지원기업 0.2%p
  - (성과창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창출 실적 보유 기업에 대출시 각 성과별 0.1%p,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 인하
    - \* '고용증가+수출향상+매출향상' 등 대출건당 최대 3개 유형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 가능
    - \* (적용제외)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긴급경영(재해) 등)

- (고용증가)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 전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수출향상)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매출향상) 자금 신청 직전년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하여 3년간 연평균매출액 20% 증가
  - \* 4개년 재무제표 없는 경우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제외

## 용자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용자
- (대리대출)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은행을 통해 기업에 용자
  - \* 대리대출 취급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 이차보전 취급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투자조건부 용자) 투자기관 투자(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부 용자 지원, 후속투자 유치 시 대출금 조기상환 조건의 용자방식

## 용자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용자 절차 운영

- ①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 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② 기업정보 입력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 자가진단 허위작성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 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용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혁신성장, 첫거래)분야, 고용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④ 용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
  -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 (기업진단) 기업애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 여부 결정
- ⑥ 용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용자 지원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 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용자하는 방식
  - \* 대리대출 가능 기관(14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용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추가 예외사항은 '24년 정책자금 용자공고 참조)

⑧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차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에서 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⑪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3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용자 4조 4,632억원, 이차보전 9,307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4,322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174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7,2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5,318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1,375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알림광장>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2022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로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가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세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설비구입 용도의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 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 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수출거래 중 추가로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실적이 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기업 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300억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 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진공 직접대출 외에도 자금종류에 따라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가능합니다.

---

## 용어 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 기업 선정기술 ■ (추 가) ■ (추 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삭 제)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용자방식	<창업기반지원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창업기반지원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용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용자

###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 청년전용창업자금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

- 제1·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
  -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 \*\* 대출 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5영업일 이내 중진공에 대출금 상환 증명서 제출 필요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클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중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챌린지 진단을 완료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용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용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용자결정 후 직접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용자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투자조건부용자) 정책자금 대출금리(변동)에서 우대금리 0.2%p 적용

## 대출기간

- (직접·대리 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조건부용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직접·대리 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연간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방식으로 지원 불가

- (투자조건부용자) 연간 1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투자조건부 용자방식으로 지원 불가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용자 1조 9,958억원, 이차보전 4,364억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 : 신규로 발행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신성장기반자금(용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전환, 스케일업(Scale-up)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추 가)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받은 기업

###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 (이차보전)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협동화' 자금 별도 운용

**<협동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 '용자제외 대상업종' 중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용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참고2)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민간은행 ESG금융(대출)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등 참여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디지털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 받은 기업

- \* 국내 복귀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용자방식

###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증권화 하여 민간 매각 및 증진공이 인수하고 회사채 인수 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후 자금 조달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
  - \*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성장공유형 방식은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 불가
-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
  - \*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용자공고 참고7)      ■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스케일업금융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구분이 없음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스케일업금융)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적용
  -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스케일업 금융 발행 별도 공고 참조([kosmes.or.kr](http://kosmes.or.kr))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협동화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스케일업금융
  - 일반사채(SB) : 5년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 주식연계형사채(BW)
    - \* (BW) 5년 만기 원금균등분할상환(매년 20%)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 (스케일업금융) 120억원 이내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직접·대리대출 및 성장공유형 대출



● 스케일업금융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용자 1조 4,587억원, 이차보전 2,663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재도약지원자금(용자)

신사업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재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b>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b>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b>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b>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사업전환계획 또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b>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자금)</b>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A, B, C등급)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b>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자금)</b>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B, C등급)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b>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b>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b>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b>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요건 폐지
지원 내용	<b>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자금)</b>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b>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자금)</b> 〈 삭제 〉
지원 규모	<b>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b> • 2,500억원	<b>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b> • 3,125억원
	<b>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자금)</b> • 980억원	<b>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자금)</b> • 1,193억원
	<b>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b> • 750억원	<b>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b> • 1,000억원

## 지원대상

###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아래의 유형(① ~ ⑦) 해당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li> <li>•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li> <li>•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li> <li>•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li> <li>•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li> </ul>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li> <li>• Sales &amp; LeaseBack 참여(선정)기업</li> <li>• 국세 물납 법인</li> </ul> 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진공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li> <li>* 협약은행(10개)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li> <li>* 지원절차 : 상담·접수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li> </ul>
재창업 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 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자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li> </ul>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li> <li>•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li> </ul>

##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li> <li>※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li> </ul>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li> <li>•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li> <li>※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li> <li>-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이내), 시설 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li> </ul>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li> <li>•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li> <li>※ 거치기간 종료시점, 거치기간 1년 연장 검토 가능</li> </ul>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중진공 홈페이지 (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 제출서류

- (공통) 용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 추진절차

###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 \* 재도전 신속지원 전용트랙 별도 운영(상담예약 생략 및 우선접수)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뉴스타트 데모데이 우수기업 중 신청가능 대상자(유효기간 이내 등)에 한해 별도 신청 안내

## 지원규모

### ● 재도약지원자금 총 5,318억원

- 사업전환 3,125억원, 구조개선 1,193억원, 재창업 1,000억원
- \* '23년 지원현황 : 재도약지원자금 4,230억원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사업전환 : (전화) 044-204-7482 (메일) 22mrj@korea.kr
- 구조개선 : (전화) 044-204-7481 (메일) mjkop99@korea.kr

### ● 중소기업부 창업정책과

- 재창업 : (전화) 044-204-7925 (메일) ghlee999@korea.kr

###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사업전환)

- 사업전환 : (전화) 044-204-9703 (메일) ksb91@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구조개선, 재창업)
  - 구조개선 : (전화) 054-751-9923~6 (메일) gih7472712@kosmes.or.kr
  - 재창업 : (전화) 054-7514-9622, 9922 (메일) hyein@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요건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추 가) ■ (추 가)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희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지원대상

-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으로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 ‘용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 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용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용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① 경영애로 사유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피해</li> <li>▪ 대형사고</li> <li>▪ 대기업 구조조정</li> <li>▪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li> <li>▪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li> <li>▪ 기술유출 피해</li> <li>▪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li> <li>▪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li> <li>* 참고15는 홈페이지 내 용자공고 참고</li> <li>▪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안전 법령 이행</li> <li>▪ 코로나19 피해</li> <li>▪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li> <li>▪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li> <li>▪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li> <li>▪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li> <li>▪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li> <li>▪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li> </ul> |
|--|--|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전협력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용자방식

- 직접대출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재해중소기업지원)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1,500억원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용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금액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 \* 기타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
- 지원조건 : 직접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
- 우대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이상 기업 우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174억원
- 지원금액 : 2,005억원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고정금리 선택가능
- (이자보전) 최대 3%p
- (성장공유형대출)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각각 구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이자보전)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간 5억원 이내
- (이자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기업정보입력(온라인) → 용자신청서 → 실태조사 단계 별로 서류제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추진절차 : 온라인 기업정보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 안내 → (신청권한 부여기업) 용자신청서 작성 → 기업 심사 → 지원여부 결정 → (지원승인기업) 대출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6)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공고(제2023-502호)
    - (경로) 알림광장-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이 지원가능하며,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출실적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1년간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판단하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간접수출** :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



## 동반성장 네트워크

지역 신산업 분야 공급망을 구성하는 대·중견기업 등(발주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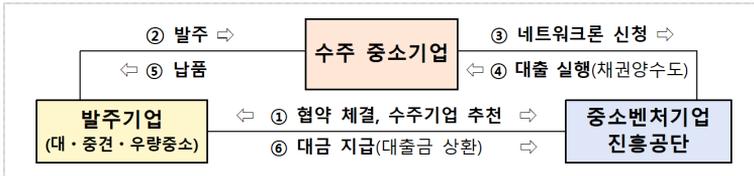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발주기업과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조건 : (융자방식) 직접대출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한도)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신청제외 대상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대·중견기업 등(발주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통해 상환
- 지원금액 : 1,000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최근 2개년 회계정보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6, taekyung11@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2-3211-5603, nate82@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중소벤처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증진공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팩토링 절차② 참고)
- 지원범위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 신청일로부터 62일 내에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외 대상

### 〈공통사유〉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 증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기업은 신청 제외
-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불건전업, 주점업 등)
-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용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및 다음에 해당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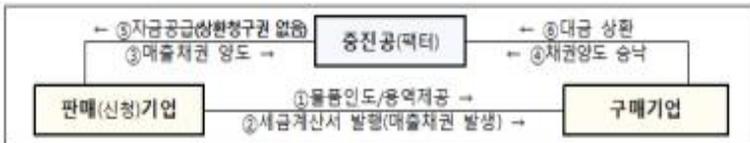
### 〈판매기업〉

- ▶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단,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지원내용

-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지원금액 : 375억원
- 지원한도 : (판매기업)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연간 30억원 이내
  -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제조업 1/20이내)
  -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 할인율 : 연 4% 내외
  - \* 구매기업의 신용위험, 매출채권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기간 : 90일 이내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중 선택 가능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3개년 결산재무제표, 24개월 이상 회계정보
- 선정평가 : 비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내용 : 신용위험평가,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6, taekyung11@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5, wj389@kosme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 (경로) 중진공 홈페이지-지원사업-매출채권팩토링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매출채권팩토링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구매기업의 경우 수수료, 금융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없으며, 판매기업에게 할인율(매출채권 인수 시 연 4% 내외)만큼 차감 후 대금이 지급됩니다.

Q

기존 신용대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 금융여신이 아닌 매출채권의 양수도방식이며, 차입금으로 미반영 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 및 판매기업의 상환책임 없이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정책자금 이차보전

산업구조 변화 대응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의 민간금융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취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B, IBK, 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수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li> </ul>

### 지원대상

-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

### 용자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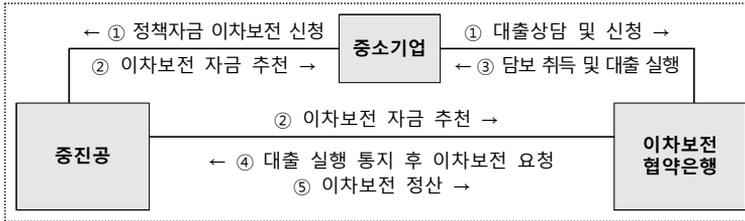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수출바우처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예산	101,710백만원	111,860백만원
지원트랙	1,000만불 이상 지원트랙 강소+ 신설	강소+단계를 강소단계로 통합
물류비	물류바우처사업 운영	물류바우처사업 폐지
평가지표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20% 비중으로 운영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30% 비중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트랙	기업 수	한도
내수 (특정한 내수)	전년도 수출액 0	1,200	30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150	6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달러 미만	1,000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500	40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400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270	100
	합계	3,370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경영사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차·향락, 건강유해 등)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식(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CI 등</li> </ul>
홍보 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li> <li>■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li> </ul>
조사/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li> </ul>

지원영역	지원항목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해외 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li> </ul>
통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li> </ul>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li> </ul>
해외규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li> <li>*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li> </ul>
특허/지재권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li> </ul>
서류대행/ 현지 등록/ 환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li> </ul>
홍보/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li> </ul>
브랜드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li> </ul>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li> </ul>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li> </ul>
국제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li> </ul>
무역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li> <li>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li> </ul>

- 지원규모 : 1,119억원 약 3,370개사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1차), 4월(2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21,2)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참고사항

---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기부 소관 5개 사업)

-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운영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전용선 제공
- 현지 시장 정보, 마케팅·법률·회계 등 자문 및 컨설팅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출장지원, 현지파견직원의 행정지원
- 금융·투자, 기술교류, 제품현지화, 물류, ODA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신청·접수

- 연중 수시(일부 사업은 공고 예정)
- (독립실 입주)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공유오피스 활용) G-SPACE(gbc.kosmes.or.kr) 온라인 및 모바일(인터넷 창에서 주소 입력) 신청 가능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입주) 경영평가, 진출 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도 등
  - \* (우대사항) 글로벌강소기업 1000+기업, 벤처인증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혁신성장 분야기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기업/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입주절차



\* 일부 지역의 경우, kotra와 공동 운영

## 지원규모

- 13개국 21개소\*에 독립실 및 공유오피스 운영
  - \* ('23년 12월 기준) 총 270 독립실 : (북미)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유럽)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아시아)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중국)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광저우 (남미) 멕시코, 산티아고, (중동) 두바이, 리야드
  - \* 중국 광저우는 '24년 1분기 폐쇄 후 타 지역으로 전환배치 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9, 751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 9675, 967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상담실)은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독립실 입주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 (연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용어 설명

**G-SPACE**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유오피스 공간활용률 및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이용예약이 가능토록 구축한 예약시스템 (모바일, 웹 : 인터넷 창에서 주소 입력 - [gbc.kosmes.or.kr](http://gbc.kosmes.or.kr))



## K-스타트업센터(KSC)

국가별 혁신거점에 설치된 8개국 K-스타트업 센터에서 현지시장 진입과 안착, 스케일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국가

- 8개국(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스웨덴,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 \* (거점형)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 \*\* (프로그램형) 미국, 프랑스, 스웨덴,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핀란드, 베트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투자 또는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단,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

### 지원내용

- 맞춤형 현지화 프로그램
  - 초기정착 지원 : 사무공간 입주지원(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법률·세무·회계 등 자문 및 법인설립 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바이어·사업화 파트너 발굴, 마케팅·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 및 IR·데모데이 지원
  - 성과창출 지원 : VC 매칭 및 글로벌 AC 전문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연계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KPI워크숍 : 참가기업-액셀러레이터 간 면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목표 및 세부 활동계획 등 현지진출 KPI 최종 수립
  - 진출준비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해외 파트너사를 매칭하고, 멘토링을 통하여 현지 진출전략 최종 점검 및 수정
  - 현지 프로그램 : 8주 동안 참여 창업기업의 KPI 달성을 위해 BM 고도화, 협력 파트너사 발굴, 투자사 매칭 등 현지 밀착지원
  - 성과발표회 : 국가별 우수 창업기업의 성과확산 및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

## 신청·접수

- (거점형)상시모집, (프로그램형)24.3월

## 제출서류

- 국·영문 사업신청서 등

## 처리절차

- 거점형



- 프로그램형



\* 위 절차는 변동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45개사 내외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781, 9683)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02-2039-1652, 1686)
- k-startupcenter.org 또는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K-스타트업센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증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거점형과 프로그램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형은 창업진흥원 위탁을 통해 입주공간 지원 없이,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만 제공하며, 거점형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하여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입주공간, 법인설립, 법률·회계·마케팅 자문 등의 현지정착 지원을 종합 제공합니다.

### 용어 설명

**엑셀러레이팅** :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 노하우, 시장 접근법, 투자 유치 등을 위한 IR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글로벌 및 자사 쇼핑몰을 활용한 판매지원, 공동물류, 온라인수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사업광고	내역사업별 모집 공고	내역사업 통합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각 내역사업별 요건에 따름
-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및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등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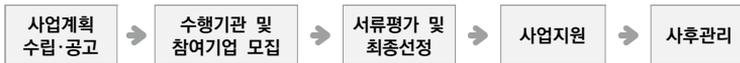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지원
  - ①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을 활용하여 중기제품의 판매대행 및 직접수출을 지원

- ② (자사몰진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 쇼핑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③ (미디어콘텐츠마케팅) 국가별 플랫폼과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맞춤형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연계 프로모션 등 지원
- ④ (온라인수출인프라)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를 위해 포럼, 정기교육 등 제공, 온라인수출 관련 애로해소센터 등 운영
- 공동물류 지원
  - ①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량집적 등을 통한 물류비 할인 등 지원
  -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
    - ① (온라인수출패키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온라인 수출지원 및 공동물류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3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 2차 최종 선정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광고

#### ● 광고명

- 「2023년 글로벌 쇼핑물 입점판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자사몰 진출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물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고비즈코리아 - 고객지원센터 - 사업광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 사업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kr. gobizkorea.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라이브커머스** : 온라인 상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쇼핑을 하는 서비스



## 온라인수출플랫폼

온라인수출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매칭 및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 쏠과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동영상, 앱북 등) 지원	해외바이어 매칭 강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및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등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 지원내용

- 고비즈 수출지원 : 선정업체에 고비즈코리아 입점, 수출 전용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검색엔진마케팅) 등 온라인수출 원스톱 지원
- 구매오피사후관리 :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피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구매오피 및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역전문가를 통한 거래 과정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3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 2차 최종 선정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고비즈코리아 - 고객지원센터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 gobizkorea.com)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고비즈수출지원과 구매오피사후관리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고비즈수출지원은 플랫폼 입점, 온라인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구매오피사후관리는 플랫폼에 내도되는 인콰이어리 검증, 해외바이어 매칭 관련 무역 쏠과정(바이어 협상,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용어 설명

**인콰이어리** : 해외바이어의 상품에 대한 문의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사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에게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등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채용지원
  - (지원기업) 구인애로 중소기업
  - (지원인력)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지원기업) 대·중견기업 사업단의 협력 중소기업
  - (지원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 사업단별 연간 전체 입교생의 20%한도 내에서 청년의 기준을 초과하는 구직자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
-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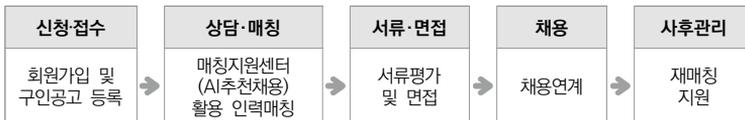
- 구인상담 및 구인공고 게시 : 채용조건, 구인공고 작성 상담, 중소기업 특화 플랫폼에 공고 게시
- 인재추천 및 매칭 : 기업별 맞춤형 인재 검색 및 추천, 서류 및 면접 매칭 지원
- 사후관리 : 취업연계 후, 공제사업·연수 등 정책 지원 연계, 필요 시 재취업매칭 지원 등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
  - \* (사업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지원  
(교육생) 주당 10만원 상당 훈련수당 지원

※ 일자리매칭플랫폼(<https://job.kosmes.or.kr>) 주요 서비스

①온라인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 코칭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제공
	AI 추천매칭	시가 기업특성에 맞는 구직자/기업 추천
	AI 역량평가	인공지능 기술활용 성향평가, 인지능력 평가 수행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취업준비도 검사, 진로직성검사 지원
②전문 상담사 지원	AI 모의면접	최신 AI 모의면접 무료응시 기회 제공
	자기소개서	구직자별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취업연계	구인기업-구직자 간 취업연계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추진절차
  - 중소기업 채용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3, 7448)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80, 9820)
-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 (☎ 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job.kosmes.or.kr)



## Q&A

**Q** 지방의 소규모 제조 중소기업인데, 일할 청년을 구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에 접속하여 구인공고를 등록한 후, 매칭지원센터 전문 상담사(☎1899-3001)와 채용 조건에 대해 상담 후 기업에 맞는 청년 인재를 추천 채용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Q** '23년에 현장코칭숙련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인데, 올해 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아니요, 2023년까지 운영했던 보조금 지원사업인 현장코칭숙련인력양성사업, 스마트제조기업일자리패키지 사업은 2024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4년에는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에서 퇴사자 발생 시 재매칭 지원을 강화하여 신규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 해드릴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산학 맞춤형교육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협회·단체) 사업단(컨소시엄)
  - 사업단은 전문대 1개, 직업계고 2개 이상, 중소기업 20개 이상 및 협·단체로 구성
  - \* 전문대 30명 이내 (단, 직업계고는 학교당 20~40명)

### 지원 제외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학생활동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직업교육, 전문대 진학,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우대
기업	전문기술인력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우대

##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단 사업 추진 절차



- 지원대학(17개대학, 34개 직업계고) (예산 5,474백만원)
  - \* '23년 지원현황 : 17개대학, 34개 특성화고 지원 (예산 5,474백만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운영계획 및 전략
  - \*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협력기관과의 연계·사후관리 방안 등
- 교육 수행여건
  - \* 당해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경쟁우위 강점 등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75, 9818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모집 공고
  - (경로) 알림마당>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대응자금** :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참여 학교, 참여기업 등에서 별도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 2년과정)을 개설하여  
중소·중견근로자(취업예정자) 직무역량 향상 및 학위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학과별 학생 정원은 20명 내외로 운영  
(박사과정은 10명 내외)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입학 가능
  - \* 학과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채용형 방식 가능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 \* 단,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적용 제외
- (유의사항)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3자 계약 체결 후 학위과정 이행,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1~2년) 협약기업에서 의무근무
  - 졸업 후 재교육형은 1년, 동시채용형·채용조건형은 2년간 협약 기업에서 의무근무

### 지원 제외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교육비(등록금), 학과 운영비 등 지원
- '재교육형' 및 '채용조건형' 등 2개 유형 지원

구분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참여 요건	학생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참여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지원 내용	학생	기준 등록금 65%(석·박사), 85%(전문학사·학사)	기준 등록금의 100%
	대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운영형태	주말·야간 과정		전일제 과정
의무근무	졸업 후 1년(동시채용형은 2년)		졸업 후 2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준등록금 인상
  - \* 기준등록금('23년 기준) : (석·박사) 302만원 (학사) 245만원 (전문학사) 230만원
  - \*\* 석·박사 65%, 학사·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채용조건형(학위와 상관없이 100%), 중견기업 40%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대학은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http://smes.go.kr/sanhakin)))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 사업 추진 절차



- 지원대학 (49개 대학, 88개 학과) (예산 150억원)
  - \* '23년 지원현황 : 49개 대학, 88개 학과 지원 (예산 150억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운영계획 및 전략
  - \*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협력기관과의 연계·사후관리 방안 등
- 교육 수행여건
  - \* 당해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경쟁우위 강점 등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77, 9818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중소기업 계약 학과) 모집 공고
  - (경로) 알림마당>사업공고
  - (홈페이지)





## Q&A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동시채용형** :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입학과 동시에 참여기업에 입사하여 주말 또는 야간과정을 학위를 취득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우대사항 :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신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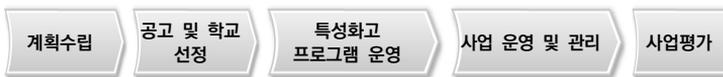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①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맞춤형(취업/산학)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②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활동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③ 특성화 마인드 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85개교('24)
- 지원금액 : 한 학교당 평균 1.2억원

## 신청 ·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hakin](http://www.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평가 또는 현장실태조사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특성화 목표 및 계획, 학교장 리더십, 인프라,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연계 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2, 9862, 9863, 9865, 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참고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검색) 특성화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인데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A**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위해서는 산학인 시스템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 특성화고와 협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참여기업의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사전교육을 통한 추가 교육비용 절감, 맞춤형 인재 확보, 병역지정 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시 우대혜택 등이 있습니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제외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병역지정업체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50% 감면
- 민간채용플랫폼 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5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최근 3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등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30점) → 심의위원회  
(총 70점 이상 기업)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서면평가
- (정성평가) 인재육성 노력, 복지인프라 수준, 교육훈련 수준 등을 현장방문하여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심의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5~6월)

서면·현장평가  
(7~8월)

심의위원회  
(9월)

최종선정  
(10월 초)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화) 044-204-7448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전화) 055-751-9829, 9825  
(이메일) bsmss@kosmes.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경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사업 공고
  - (홈페이지)





## Q&A

**Q** 3년 미만1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 3년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재무제표 평가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여 진행합니다.

**Q** 구조조정 등으로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 불이익을 받나요?

**A** 아니요,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년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으니 관련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과 만료 시 연장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별도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을 하시면 지정일로부터 다시 3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Q**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 평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세부절차에 따른 평가결과확인 안내 이메일 및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 신청” 탭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최종 선정된 기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 관리 시스템-정보마당-인재육성형지정기업현황”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수사업

- 전국 6개 중소기업 전문연수원을 운영하여 교육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재양성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과 디지털 제조기술, 뿌리·생산기술, 경영·품질 분야 등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등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등 대상 연수비 할인

####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경영분야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기업 현장 맞춤형연수, 이러닝·마이크로러닝 등 이러닝연수 운영
  - (직무역량향상연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경영·품질분야 연수 등
  - (정책연수) 중소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이차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부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	경영일반·직무,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 정신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부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직무·정책·맞춤연수) <http://sbti.kosmes.or.kr>  
(이러닝연수) <https://cyber.kosmes.or.kr>  
(마이크로러닝) <https://micro.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수비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추진절차 : 연간 연수과정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및 참여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2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2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6
- 중소기업충청연수원(천안) : 041-559-922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 연수사업처(온라인연수) : 031-490-1288
- 연수사업처(K-기업가정신 연수) : 055-751-9812



##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915명(개사)	850명(개사)
지원예산	845억원	793억원
선정절차	3단계(서류→발표→심층)	2단계(서류→발표)
민간주도형	4개소 (경기북부, 대전, 제주, 부산)	5개소 (경기북부, 대전, 제주, 부산, 미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지원조건 : 만 39세 이하인 자
- 우대사항 : 초격차·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우선 선발

### 신청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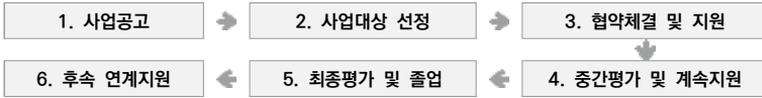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공간) 창업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쏠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적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 지원규모 : 850명(개사)
- 지원금액 : 793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4년 사업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사업화 추진 계획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044-204-7951 (이메일) spbaek5@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구리)	(안산) 031-490-1351, (구리) 031-554-2784-8
	서울	02-2130-1431~3, 1435-6
	인천	032-858-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6, 9268-9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2~9
	충북(청주)	043-903-9357-8
호남권 및 제주	광주	062-250-3031~2, 303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61-331-8708
	제주	064-759-9649
영남권	대구	053-656-8176-8
	경북(경산)	053-819-5053
	부산	051-305-9930~3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  
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용어 설명

**BM(Business Model)**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  
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준비부터 글로벌 혁신성장까지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 (D.N.A. 분야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내용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5천만원), 글로벌 D.N.A. 교육,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인바운드)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1.5억원), 글로벌 진출 특화프로그램,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아웃바운드)
지원예산	108억원	138억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및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지원조건 :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대표 연령 무관)

### 신청제외 대상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증(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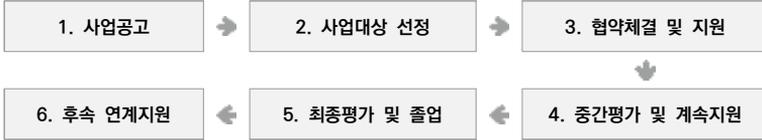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 세부 내용
  - (국내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별·진출단계별 글로벌 진출 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제공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 제공
  - (해외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직접 진출 희망(예정)국가 현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지원) 최대 1.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지원규모 : 60명(개사)
- 지원금액 : 138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신청 관련 기타 증빙서류 등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044-204-7951 (이메일) spbaek5@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02-6735-1334, (이메일) ljh@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 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학력·전공 무관)

#### 신청제외 대상

-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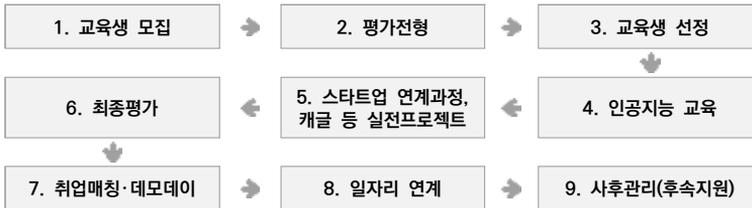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4년 교육과정 및 실전 프로젝트까지 4단계에 걸쳐 10개월 간 집중 운영
  - 인공지능 초급과정 :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 공통과정 운영
  - 인공지능 특화기초 :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심화 학습을 위한 기초이론
  - 인공지능 특화심화 : 데이터 엔지니어링(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처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머신러닝·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이해)

- 산업 융합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캐글(Kaggle) 플랫폼 기반 모의·실전 경진대회 참가 및 벤처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 실습

- 지원규모 : 200명(대면과정 100명, 비대면 과정 100명)
- 지원금액 : 27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심사 → 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상식평가 및 역량 면접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1 (이메일) spbaek5@korea.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2-6735-1343~4 (이메일) homming@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IT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학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면 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A** 교육 장소는 서울 홍대 스파크플러스(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86, LC홍대타워)입니다.

**Q** 사업에 선정되면 교육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A** 교육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교육 비용은 내실 필요 없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캐글(Kaggle)** : 전세계 AI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AI경진대회 플랫폼 (190여개국 300만명 참여)



##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스타트업에 해외 개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베트남 청년 기술인력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한 양국 관계 증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베트남 내 이공계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주한 베트남 이공계열 대학 유학생(베트남 국적자)
- 우대사항 : SW 계열 전공자, 한국어 가능자

### 신청제외 대상

- ▶ 교육과정 수료 및 수료 이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재학생 및 휴학생, 직장인 등은 제외(단, 전과정 수료 및 즉시 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SW 분야 실무 인력 양성 교육(5개월) 및 한국 취업 비자(E-7) 취득 지원
  - SW 분야 교육 : 스타트업에서 수요가 높은 IT 분야(Web, App, Back-End) 교육 및 기업과 연계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 실시
  - 취·창업 교육 : 취·창업, 비즈니스 관련 교육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 취업, 한국 기업문화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정착 지원
  - 한국어 교육 : 집중교육 대상자 및 희망자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 제공

- 지원규모 : 200명(베트남 현지 160명, 주한 베트남 유학생 40명)
- 지원금액 : 16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서류검토 → SW개발 상식테스트 → 심층면접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SW 관련 분야 역량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청년정책과  
(전화) 044-204-7952 (이메일) dlrlxor135@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 02-6735-1343~4 (이메일) homming@kosme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Q&A

**Q** 베트남 개발자 채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단의 사업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연락 주시면 채용 풀에 등록하여 사후 취업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교육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A**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한 베트남 유학생은 서울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조건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우대사항
  -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중복과제 지원 불가)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4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사업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6개사
- 지원금액 : 600백만원

구 분	항 목	내 용	지원비율
기술개발	자전거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1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75%이내
	해양레저장비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4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협약체결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 평가로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4년 사업공고문 참조

● 추진절차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528
-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 055-751-9855, 9858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 공고명 : 2023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세부추진계획 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부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 부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해양레저장비 부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열거된 품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내용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필수 구축 (타 솔루션 등은 선택지원)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특화 지원 (타 솔루션 등은 일반형을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뿌리기술(금형 등 14개 업종),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화학제품 등) 영위 중소·중견기업(총 24개 업종)
- 지원조건 : 고도화 최대 2억원, 동일수준 0.5억원(보조율 50%)
- 우대사항 : 스마트공장 교육 참여기업 등 가점부여\*

\* 세부사항 별도 사업공고문 참조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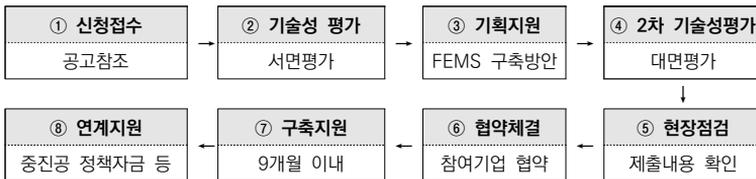
-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사업공고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 ②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FEMS) + ③고효율 설비개체 패키지 지원
- ①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FEMS 구축 방안 수립, 구축상황 코디네이팅 등 전주기 밀착관리
- ②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및 이와 연동된 디바이스(계측기) 등
- ③ (고효율 설비개체) 에너지다소비, 유틸리티 설비 등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24년 30억원 (예정)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1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2차 기술성 평가(사업계획 평가)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필요성, 지원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 접수 → 평가(1,2차 기술성평가) → 협약 → 구축 → 연계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 055-751-9588
- 사업관리시스템 : smart-factory.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 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3대 요소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용어 설명

**탄소저감** :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생산공정에 대한 에너지 정보수집을 통하여 공장 설비의 에너지소비 및 성능을 분석하고, 나아가 공장개선, 설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설비+컨설팅)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50여개사 (고도화트랙)동사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85여개사 (고도화트랙)23년 대상 + 기술보증기금 Net-Zero members 선정기업
사업 예산	5,450백만원	11,300백만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①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 多배출업종\* 영위기업  
\* 화학·비금속·1차금속제조업 및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 지원방식 : (기초트랙) 동 사업 지원선정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고도화트랙) 동 사업 지원완료 및 지원유효 업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기보)Net-Zero members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② 감축 규제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감축 규제대상 기업]

- ▶ 배출권 거래제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
- ▶ 목표 관리제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만~12.5만톤 이상 업체, 1.5만~2.5만톤 사업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시설계 컨설팅 및 탄소배출 감축 설비 구축 등 패키지 지원

### [ 주요 지원내용 ]

지원 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실시 설계	실시 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계획 컨설팅 등
	설계 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설비 도입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설비 도입	설비도입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 지원규모 : 85개사 내외(최대 3억원, 보조율 기초 50%, 고도화 70%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100억원

### [ 지원설비 예시 ]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 마그네틱 커플링(뿔프, 팬 등에 설치하여 모터의 동력절감) - IGBT 정류기(전기로 및 도금조 등의 에너지사용량 저감)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탄소포집기술	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23년도 기준 해당월 기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증비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심사(1.5배수 내외) → 현장점검(사업 계획서 내용 검증) → 신청업체 PT 기반 선정심의(1배수)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통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탄소감축 기대수준, 사업계획 타당성, 탄소 저감 인식개선 파급효과 등 성과(Outcome) 창출 가능성 중심 지원 기업 선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7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24
- (온라인 문의)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6호)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매출증대에 따라 신규 생산설비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설비 대비하여 고효율 설비를 설치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기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고효율 설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신규 또는 증설 설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Q

우대사항 중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수출실적 : 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자료

대기업 협력사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Q

설비도입 시 업체부담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한지요?

A

신용 및 타 담보제공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로 업체부담금 납부는 가능하나 지원설비를 담보로 제공한 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설비지원 이후 5년간 설비의 이전, 대여, 담보제공 등은 제한됩니다.

## 용어 설명

**온실가스** : 지구의 대기에 포함되어 지표에서 발출 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를 말하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이용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

**탄소국경세** :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관세, EU,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중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감축 컨설팅과 검증을 동시에 지원하여 CBAM부담금 감소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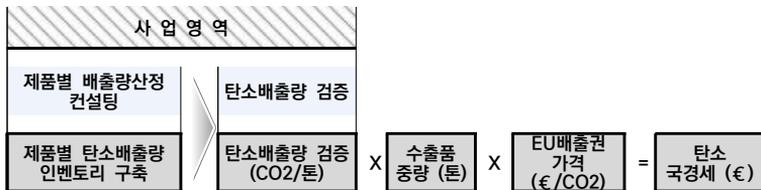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EU로 CBAM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직·간접 수출 포함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기업당 20백만원 한도, 최대 90%지원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제품별 탄소배출량산정 컨설팅 및 EU-ETS 인정기관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등을 통한 탄소국경세(CBAM) 대응지원

【 탄소국경세(CBAM) 산정 방식 】



- 지원규모 : 총 110개사 내외
  - \* (예시) 배출량산정 컨설팅 12백만원+EU-ETS 인정기관 배출량검증 8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총 사업예산 22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수출대기업거래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요건검토 → 현장점검 → 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업종 내 파급효과(수출규모) 및 탄소감축 및 수출·채용증대 수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방산업 중심 지원기업 선발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중기부	② 신청접수 신청업체	③ 서류심사 중진공	④ 현장점검·선정심의 중진공
⑧ 후속지원·모니터링 중진공	⑦ 검증지원 EU-ETS인증기관	⑥ 배출량산정 컨설팅 컨설팅 수행사	⑤ 협약체결 중진공↔지원업체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6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24  
- (온라인 문의)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 참고사항

- 24년 신규사업



## Q&A

**Q** 배출량 산정컨설팅을 수행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CBAM대응 컨설팅과 탄소저감 공정 개선이 가능한 전문가를 보유한 수행사를 증진공에서 공모하여 선정하고 각 수행사별 수행실적·서비스를 메뉴판으로 작성하여 지원업체가 수행사를 비교 후 선정합니다.

**Q**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수행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배출량 산정컨설팅 수행사의 추천 및 검증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내 EU-ETS 인정기관을 활용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합니다.

**Q** '23년 4/4분기 CBAM대상 수출기업들의 경우 '24년 1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A** 사업설명회와 보고서작성 방안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예정입니다. 또한 전환기간중 제출된 보고서의 수정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사업을 진행의 속도를 높여 선정된 기업의 경우 보고서 수정을 지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설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으로 탄소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EU-ETS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는 제도

**EU-ETS(EU 배출권거래제도)** : EU내 온실가스 배출기업간 배출권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기업당 배출권을 배당하고 감축분 만큼 교환경매 가능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재기컨설팅은 별도 운영하며,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기타 보조금법 위반 기업 등(상세 내용은 사업공고문 등 참조)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 경비의 40~85% 차등지원

\* 재기건설팅은 별도 운영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3억원이하	85	최대 50백만원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45	
120억원 초과~1,500억원 이하(탄소)	40	

## 바우처메뉴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건설팅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기술사업화, 노무, 인사, 회계, 구조개선 등
	제조혁신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중대재해예방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별도트랙) 탄소중립 경영혁신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 아이템 발굴, 인식개선 활동 등
	(별도트랙) 재기건설팅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 및 재기지원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재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제품시험 및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마케팅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브랜드 자원	C디자이너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및 재기건설팅은 별도 운영)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3.11월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 → 현장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100여개 사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http://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



## Q&A

Q

우리 기업이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http://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컨설팅이 필수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필수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구조혁신지원사업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사업·신기술 일자리로의 전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진단, 컨설팅,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디지털·노동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도박, 향락, 건강유해 등)

### 지원 내용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유형별 업종별·지역별 전문가를 통해 이행계획 수립 로드맵 등을 지원

구분	내 용
사업전환	• 기업역량 및 현황파악, 기업 경쟁력 분석, 사업전환 계획 타당성, 세부 이행 로드맵 수립 등
산업·일자리전환	•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 혁신형 사업전환	• 사업전환 세부내용 포함, 디지털화 수준 및 내부역량 강화, 단계별 개선 전략 및 실행과제 등

-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금융, 세제, 직무전환, 전직 등 지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사업전환자금 운자,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연계 등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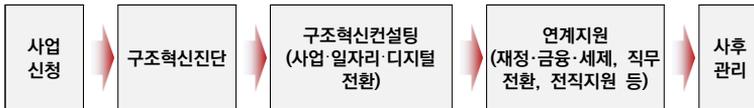
\* 신청요건 中 '신청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폐지

### 신청·접수

- 구조혁신지원사업(www.kosmes.or.kr/3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24. 1분기 내 사업공고 예정)

- (제출서류)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2 (메일) jhjang3@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전화) 055-751-9702 (메일) 85choihs@kosmes.or.kr
-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구조혁신지원센터, 사업전환지원센터)

##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컨설팅 분야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은 가능하지만, 구조혁신진단 결과에서 희망하는 컨설팅분야를 추천받아야만 컨설팅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사업전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전환에 해당

- ①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 30%)으로 늘어나는 경우
  - ③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비중이 일정 기준(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 30%)에 해당하는 경우
- \* 상시종업원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별도 산정)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 지원유형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li> </ul> <p>* 벤처캐피탈(V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구조개선 목적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p>
	〈 위기징후 식별기준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 등급</li> </ul> <p>*「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등급제공급' 허가 신용정보회사(6개사) : KoDATA,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p>
	•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 폐지
	• 신용공여액 100억원 미만	• 신용공여액 200억원 미만
	•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	• 협업 금융기관에서 당해 금융지원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 요건 적용 제외
지원 규모	• 용자예산 총 677억원	• 용자예산 총 745억원

## 지원대상

- 아래 유형①~②에 해당하는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구분	유형 ① 채권은행 연계형	유형 ② 투자자 연계형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진공 및 협약은행*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은행(총 10개)</li> <li>** 당해 협약은행 금융지원 원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캐피탈(V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의 구조개선 목적 지분투자, 출자 전환 등</li> </ul>
자격요건	위기징후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단,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기업 제외)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등급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용정보회사(6개사) : KoDATA,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업력/형태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신용공여액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 200억원 미만인 기업
	권리침해/채납	가압류, 세금채납 등 권리침해 및 채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 지원내용

- 중진공, 채권은행·투자자 공동 금융지원(만기연장, 신규대출, 지분투자 등)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구조개선 지원

구분	지원내용	
금융지원	신규대출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채권은행·투자자의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중진공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상담
- 추진절차 : 협약은행·투자자, 중진공(지역본·지부) 상담·추천 → 사전 검토 → 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사전협의 → 현장실사 → 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최종협의 → 지원결정 → 기업지원 → 이행점검

절 차	내 용	비 고
상담·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애로 상황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중진공(기업개선팀)에 추천</li> <li>- 경영애로 현황, 업력, 기업형태, 신용공여액, 신용위험등급, 조기경보등급, 권리침해·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li> </ul>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투자자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지원 가능성 사전검토</li> <li>- 구조개선 지원 필요성, 중점지원업종(혁신성장·그린·지역특화) 해당여부, 매출·이익 등 성장 가능성, 재무 특이사항 등</li> </ul>	중진공 (기업개선팀)
금융기관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li> <li>- 채권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은행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 연장, 금리조정 가능성 사전협의 실시</li> </ul>	중진공 (기업개선팀)
현장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 수립(심층) 및 지원타당성 평가</li> <li>- 지원예정금액 등을 기준으로 구조개선진단·경영개선계획 수립 대상기업 구분 후 정상화 가능성을 중점 점검</li> </ul>	중진공 회계법인
금융기관 최종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협의</li> <li>- 현장실사 결과 및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내역을 협약은행 및 투자자에게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여부를 최종 협의</li> </ul>	중진공 (기업개선팀)
지원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li> <li>-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투자 등</li> </ul>	중진공 (기업개선팀) 협약은행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결정 내용 실행</li> <li>-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투자계약 진행</li> </ul>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투자자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화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li> </ul>	회계법인 진단전문가

## 지원규모

- 용자예산 총 745억원 예정  
\* 미정인 상태로 향후 변동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1 (메일) mrjung13@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기업개선팀  
(전화) 054-751-9923~6 (메일) gih7472712@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지
- 공지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경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  
용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성실경영평가 제도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유효기간 內)

###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재정지원 :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진원) 등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 성공역량(준비도) 등을 심층평가하여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기 관	우대혜택 내용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창업자금 금리우대(△0.3%p)</li> <li>▪ 재창업자금 신청요건 완화(저신용 조건 예외)</li> <li>▪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운영(신청권한 부여)</li> </ul>
창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li> </ul>
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시 '도덕성평가' 우대</li> </ul>
SGI서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담보 이행 및 인허가 우대보증 지원</li> </ul>

## 평가방법

- (성실경영평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서류평가 실시
  - \* 재창업 전 기업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 등
  - \* 심의 탈락 시 6개월 간 재신청 제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재심 진행
- (성실경영 심층평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로 실시
  - \*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준비도) 등 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02-3211-5609, 5610)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challenge.or.kr)



## Q&A

**Q**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경우, 평가결과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A**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경우, 통과한 날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평가 결과가 유효합니다.

**Q**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면 재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 각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분야 : 최대 2개(세무·노무·법무 中) 지원한도 : 240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분야 : 최대 3개(세무·노무·법무) 지원한도 : 360만원
신청 접수	'23. 2월~	'23. 12월~

###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신청 불가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각 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공고의 용자 제한 업종 참고
-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55개사('23년 341개사)

● 지원 세부내용

- (기초진로제시 컨설팅)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분석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 분석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사업정리에 필요한 3가지 전문분야* * 세무/노무/법무분야	분야당 1~2MD	총 360만원 (분야별 120만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23. 12. 1일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2  
(메일) yeongi2910@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제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6)



**Q&A**

**Q**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회생 컨설팅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절차 진행 등을 지원(워크아웃의 경우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비용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워크아웃 컨설팅 〉 공동관리절차 기업 限	〈 워크아웃 컨설팅 〉 공동관리절차 + 단독관리절차 기업
신청접수	'23. 2월~	'23. 12월~

### 지원대상

- 회생 컨설팅 : ①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②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재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재휴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개인회생 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기본중위소득 125% 이상인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신청 불가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완료보고서 제출 전)인 기업
- ▶ 최근 5년간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워크아웃 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70개사 ('23년 169개사)
- 지원 세부내용
  - (회생, Pre-회생, 개인회생) 회생 신청부터 회생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구분	내용			
재무 세무	■ 회생신청서	■ 심문답변서	■ 채권목록표	■ 시부인표
	■ 회생계획안	■ 2차 집회서류		■ 회계세무 자문내용
	■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채권자+법원 연결 역할)			
	* 조사위원 불선임 : 관리인 보고서 작성(조사위원 보고서 수준)			

- (워크아웃) 워크아웃 관리절차 개시 및 연장에 필요한 실사 및 자구계획 수립 지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23. 12. 1일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메일) yeongi2910@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9627, 02-3211-5611)



## Q&A



회사는 2달 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개시결정이 공고된 이후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회생컨설팅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시에 이미 조사위원이 선임 되었기 때문입니다.



##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조건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적립 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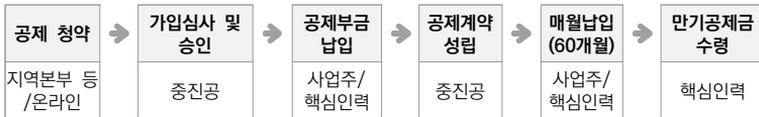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30%)

##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참고사항

- 사업 상세정보

-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소개 > 내일채움공제 > 상품안내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가입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 (적립금액) 3년간 1,800만원(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청년)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 월 18만원)
  - (기업)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 월 18만원)
  - (정부) 3년간 600만원 적립(3년 6회 분할 적립)

### 지원조건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 청년근로자, 정부가 3년간 1,800만원 공동적립
  - 『핵심인력:사업주:정부=1:1:1』의 비율로 납부(각 600만원씩)
- 적립 금액 : 3년간 1,800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참고사항

- 사업 상세정보
  -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소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상품안내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제조·건설업만 가입 가능한가요 ?

**A** 네, 맞습니다. 해당공제는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Q** 정부지원금 어떻게 적립되나요 ?

**A** 공제계약 성립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6회 적립됩니다.  
\* (1회차) 70만원 (2회차) 90만원 (3~4회차) 100만원  
(5회차) 110만원 (6회차) 130만원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재직할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조건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 가입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 참고사항

- 사업 상세정보
  -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소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상품안내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지원기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용어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가 2년간 공제금 적립 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역본부 연락처

구분	문의처	주소	관할지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02-2106-743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02-2023-430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02-769-6428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032-837-7021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032-560-2364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031-260-492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031-760-90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서부지부	031-783-063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안성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031-899-9103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031-920-673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지역본부	033-269-6940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033-649-9373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정선군,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평창군, 영동군
서부권	대전지역본부	042-281-3732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대전시, 노산시, 옥천군, 계룡시, 금산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	044-860-8308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세종시, 보령시, 부여군, 공주시, 당진시, 서천군
	충남지역본부	041-589-4571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세종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공주시
	충북지역본부	043-230-68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청주시, 영동군, 진천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043-841-3612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전북지역본부	063-210-992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장수군,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익산시
	전북서부지부	063-460-9821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군산시, 부안군, 익산시, 고창군, 서천군
	광주지역본부	062-600-3000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광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전남지역본부	061-280-8032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무안군, 강진군, 영암군, 영광군, 영광군, 나주시, 목포시,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함평군,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061-729-1550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보성군, 광양시, 고흥군, 구례군, 장흥군
제주지역본부	064-754-5156	제주 제주시 연산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권	대구지역본부	053-606-8417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대구시, 고령군, 군위군
	경북지역본부	054-440-5922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054-288-7345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홍성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053-603-3332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051-630-7481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051-745-5925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052-703-1124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울산시(외동읍, 경주시,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055-270-9763	경남 창원시성산구원이대로362창 원컨벤션센터3층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055-310-6617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055-751-2903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3층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3. 11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55-751-9280)
	(진로제시컨설팅사업, 회생컨설팅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23. 12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2024년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588)
1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신성장기반자금(용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정책자금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6)
	재도약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3) 재도약성장처 (055-751-9628)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2-3211-5605)
1월	구조혁신지원사업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055-751-9704)
1월 (상시 모집)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1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9677)
1월 (상시 모집)	K-스타트업센터	2024년 K-스타트업센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1)
1월	청년창업사관학교	2024년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835)
1월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	2024년 스타트업 시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02-6735-1343)
1월	연수사업	연수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처 (055-751-9869)
1월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패키지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2)
1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024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2)
1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별도 모집공고 없음 (연중 상시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2)
1월	수출바우처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2-8580)
2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 (055-751-9278)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24)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024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02-6735-1334)
3월	온라인수출플랫폼 지원사업	온라인수출플랫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3월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사업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4)
3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02-6735-1343)
4월	수출바우처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2-858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2024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세부추진계획 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855,9858)
5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 - 기술사관 육성사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2024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모집 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18)
5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024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9,9825)
7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2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2차)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74,9677)

## 제 2 부

# 기술보증기금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2-9 클린플러스 보증	협약채결기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협약채결기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2-10 원클릭 보증	보증대상: -	보증대상: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
	건별지원한도: 최대 1억원	건별지원한도: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억원)
2-13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기후기술보증, 녹색보증,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 등 각각 별도 상품으로 운용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으로 일원화하여 보증지원 효율성 제고
2-15 R&D 보증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대상 중기부 R&D 과제 중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대상 중기부 R&D 과제 중 최근 5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
2-16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2-18 기술평가	-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중 세부평가항목 추가 (팩토링 이용기업 등록을 위한 평가)
2-19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구성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
2-21 지식재산공제	부금납입 방식(매월 납부(적립형))	부금납입 방식(매월 납부(적립형) 또는 일시 납부(예탁형))
	부금을 6회차(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지식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금을 6회차(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즉시 대출 신청 가능



## 기술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 중인 기업
-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 ▶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에 대하여 기술보증 지원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단위 : 조원)	보증잔액(계획)				보증공급(계획)			
	'23년		'24년 (B)	증감 (B-A)	'23년		'24년 (D)	증감 (D-C)
	계획 (A)	실적 (11월)			계획 (C)	실적 (11월)		
총 보증	28.3	28.5	28.8	+0.5	26.0	27.7	27.5	+1.5
신규					5.0	6.2	5.3	+0.3
갱신·만기연장					21.0	21.5	22.2	+1.2
기술보증	28.0	28.1	28.1	+0.1	25.7	27.4	27.0	+1.3
신규					4.8	6.0	4.9	+0.1
갱신·만기연장					20.9	21.4	22.1	+1.2
유동화회사보증	0.3	0.4	0.7	+0.4	0.3	0.3	0.5	+0.2
신규					0.2	0.2	0.4	+0.2
차환					0.1	0.1	0.1	-

\* '24년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화산업완성보증 계정, 신재생에너지보증 계정 및 기후대응보증 계정은 미포함

● 중점지원분야

(단위 : 억원)

구 분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공급	혁신성장산업	80,000	130,875	90,000	+10,000
	수출중소기업	33,000	38,553	35,000	+2,000
신규공급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17,000	18,104	17,000	-
	청년창업기업	4,500	5,308	6,000	+1,500
	스케일업 보증	3,000	3,368	3,000	-

\* '24년도 총보증 공급규모는 27.5조원으로, 신규보증 5.3조원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 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59  
(이메일) [2505@kibo.or.kr](mailto:2505@kibo.or.kr)

용어 설명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 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초일류국가로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전략산업 영위 성장유망기업 및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략적 중점지원이 필수적인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
첨단제조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	△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레드바이오 △그린,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성장유망기업과 경영애로기업 Two-Track으로 금융·비금융 패키지 지원

구분	Track 1 (성장유망기업)	Track 2 (경영애로기업)				
지원 대상	(핵심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일반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기술보증, 기술개발 소요자금 R&amp;D보증</li> <li>•보증연계투자, 예비 유니콘 등 선정사업 우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컨설팅 제공 및 경영개선보증 지원</li> <li>•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저신용기업 특별보증</li> </ul>				
우대 내용	<table border="1"> <tr> <td>핵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30%)</li> <li>•보증료 감면(0.2%p × 3년)</li> <li>•보증비율 상향 (95%)</li> </ul> </td> </tr> <tr> <td>일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li> </ul> </td> </tr> </table>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30%)</li> <li>•보증료 감면(0.2%p × 3년)</li> <li>•보증비율 상향 (95%)</li> </ul>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li> <li>※ 기업경영개선보증, 저신용 특별보증을 지원</li> </ul>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30%)</li> <li>•보증료 감면(0.2%p × 3년)</li> <li>•보증비율 상향 (95%)</li> </ul>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120%)</li> </ul>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http://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75  
(이메일) [2339@kibo.or.kr](mailto:2339@kibo.or.kr)



## Q&A

**Q**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의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5대 분야	18대 세부산업	
		상세 내용
첨단 제조	① 우주항공, 해양	• 우주항공 및 해양(첨단선박, 자원탐사 등) 관련 산업
	② 차세대 반도체	• Si반도체, 전력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 OLED, 마이크로 LED,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④ 차세대 배터리	• 이차전지, 리튬황,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
	⑤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에너지	⑥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산업
	⑦ 수소에너지	•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수소에너지 산업
	⑧ 미래에너지	• 태양광, 풍력, 해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디지털·통신·서비스	⑨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 5G·6G 및 통신인프라, 사물인터넷, 엣지컴퓨팅 등 통신·네트워크 산업
	⑩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보안, 복호화, 동형암호 등 사이버보안 산업
	⑪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
	⑫ 지식서비스	• 영상콘텐츠, 웹툰, 공유경제플랫폼 등 지식서비스 산업
자동화	⑬ AI, 빅데이터	•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관련 산업
	⑭ 차세대 모빌리티	• 자율주행, 스마트카, UAM 등 모빌리티 산업
	⑮ 로봇	• 정밀제어, 지능형 로봇, 스마트공장 등 로봇 관련 산업
바이오	⑯ 레드바이오	• 제약·의료분야 바이오 산업
	⑰ 그린, 화이트바이오	• 농업·식품분야(그린) 및 환경경분야(화이트) 바이오 산업
	⑱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서비스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구분	대상 기업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Industry 4.0 FIRST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DNA+BIG3*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li> <li>•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DNA+BIG3분야</li> <li>•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li> </ul> </li> </ul>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li> <li>-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li> <li>- 기금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li> <li>-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li> </ul> </li> <li>•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li> <li>-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li> </ul> </li> <li>• 스마트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품목을 생산하며 별도 판별표 충족하는 기업</li> </ul> </li> </ul> </li> </ul>

## 지원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 \*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를 적용 가능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http://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687  
(이메일) [2655@kibo.or.kr](mailto:2655@kibo.or.kr)



## Q&A

Q

혁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기업 및 디지털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쉐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 Data, Network, AI

###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
  - (핵심기업) ‘비대면기업’ /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최근 6개월 이내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증지원 한도가산(고용인원 1인당 최대 75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http://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687 (이메일) [2655@kibo.or.kr](mailto:2655@kibo.or.kr)



## Q&A

**Q**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콘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자 (식품 등) 제조판매 ⑨생활증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 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 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 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 굿잡보증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amp; 20% 이상 고용증가</li> </ul>
	쉐어링잡 (Shar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li> <li>(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li> <li>(지방고용) 지방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li> <li>(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li> <li>(특성화고)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li> <li>(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li> <li>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기업 제외)</li> <li>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li> </ul>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li> <li>*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li> </ul>

####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신기술 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신규고용인력별 보증지원 한도가산

## 지원내용

### ● 곳잡보증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고용창출 (Trac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5%)</li> <li>보증료 0.4%p 감면</li> </ul>
고용유지 (Trac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0%)</li> <li>보증료 0.3%p 감면</li> <li>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 자금 3억원까지 지원</li> </ul>

###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한도 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고용인력 1인당 가산 금액은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에 따라 차등 결정

구 분	한도가산금액(1인당)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345 (이메일) 2266@kibo.or.kr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측 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주요 내용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창업멘토링을 통해 창업정보 제공</li> <li>● 창업 즉시 창업자금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 성과와 애로사항 등 점검</li> <li>●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용 우대(전액보증)</li> <li>● 보증료 0.7%p 감면</li> <li>● 1억원 이하 기술평가료 면제</li> </ul>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http://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72  
(이메일) [2211@kibo.or.kr](mailto:2211@kibo.or.kr)



## Q&A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 기반의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마련하여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육성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li> </ul>
청년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li> </ul>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li> <li>•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li> </ul>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별로 구분된 4대 맞춤형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li> <li>*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철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0%~100%)</li> <li>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 이내 1.0% 고정보증료)</li> <li>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 한도가산(2억원 이내)</li> <li>*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li> </ul>					
청년 창업기업 보증	기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5%)</li> <li>* 창업후 1년 또는 1억원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li> <li>보증료 0.3%p 감면</li> </ul>					
	추가 우대	<table border="1"> <tr> <td>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td> <td>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한도 3억원</li> <li>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li> </ul> </td> </tr> <tr> <td>청년 테크스타 보증</td> <td>창업지원사업 참 여기업 중 우수기 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100%)</li> <li>창업후 5년이내 및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li> <li>*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li> </ul> </td> </tr> </table>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한도 3억원</li> <li>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li> </ul>	청년 테크스타 보증	창업지원사업 참 여기업 중 우수기 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한도 3억원</li> <li>창업후 5년 이내 0.3% 고정보증료</li> </ul>					
청년 테크스타 보증	창업지원사업 참 여기업 중 우수기 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100%)</li> <li>창업후 5년이내 및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li> <li>*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li> </ul>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에 대해 우대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비율 우대(95~100%)</li> <li>보증료 최대 0.7%p 감면</li> </ul>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72 (이메일) 2211@kibo.or.kr



## Q&A

Q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형지식서비스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li> </ul>
이공계 챌린저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li> </ul>
기술경력· 부리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가 만40~59세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부리 산업 포함) 영위기업</li> </ul>
첨단·성장 연계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 성장산업 영위기업</li> <li>(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되어 2년 경과 하지 않은 기업</li> </ul>



##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상품으로서 보증우대지원을 통해 ESG 관련 사회문제 해결 및 혁신성장을 견인합니다.

###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충족기업



\*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의 합계가 각각 70점이상인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우 대 사 항
대상자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산정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사회적 및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소셜벤처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소셜벤처 판별 및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소셜벤처 판별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하여 사회적과 혁신성장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성, 기술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승인 후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02-3407-2900), 고객센터(☎ 1544-1120),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 Q&A

**Q**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 보증은 소셜벤처기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소셜벤처(S-Venture)임팩트 보증은 소셜벤처기업 전용 보증 상품이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를 통해 판별 인정받거나, 보증신청 시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인정될 경우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Q** 우리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인지 사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샘플)를 확인하시고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샘플)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자료(예시)이며 선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용어 설명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 소셜벤처기업 판별,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소셜벤처 관련 지원사업소식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소셜벤처 전용 사이트



## 클린플러스 보증

별도의 중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자기반의 간편하고 안정적인 운영 자금 집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고객의 보증부 대출 이용 편의성을 모두 향상한 보증상품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 지원대상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외주비 포함),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결제목적 회전성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근보증)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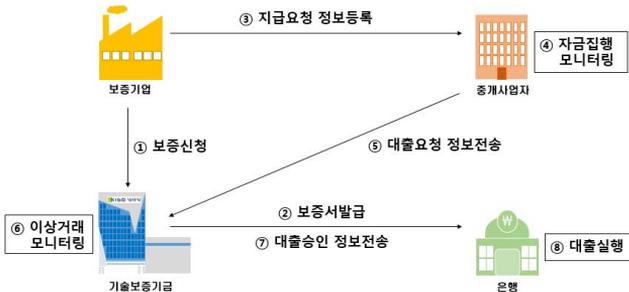
-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근보증 채무에 대해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최초 취급후 5년간)
  - 보증료 0.5%p 감면(최초 취급후 5년간)
  -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 모니터링 실시

- (자금집행 모니터링) 중개사업자는 보증기업이 플랫폼에 입력한 자금용도 정보와 자금용도별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일치여부 등을 검증
-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보는 중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요청 정보에 대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며, 필요할 경우 사전 통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추진절차



- (보증기업)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요청 정보 입력
- (중개사업자) 보증기업이 입력한 정보의 이상여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금 및 은행에 대출요청 정보 전송
- (은행) 대출요청 정보에 따라 지급상대처에 대출실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68  
(이메일) [1986@kibo.or.kr](mailto:1986@kibo.or.kr)

### 용어 설명

**클린플러스보증 플랫폼** : 기업이 대출요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또는 모바일 형식의 시스템



## 원클릭 보증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보증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빅데이터 기반 고객 지향적 보증상품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보증대상 : - 건별지원한도 : 최대 1억원	보증대상 :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 건별지원한도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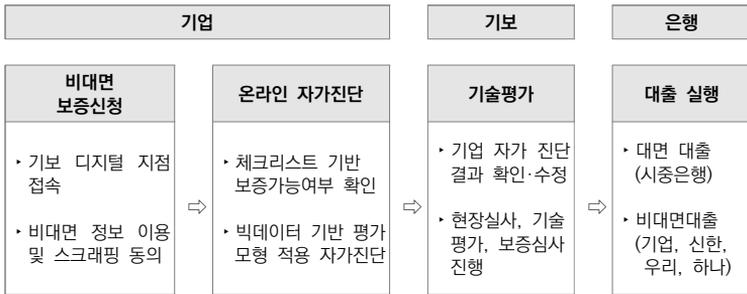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한 보증가능 여부 확인
  - 보증대상 :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
  - 보증비율 : 100%(최초 취급후 3년 초과시 단계적 인하)
  - 보증료 : 0.3%p 감면
- 운영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원클릭보증 외 기금 보증금액 포함)
  - 건별지원한도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및 전국 영업점
- 추진절차



-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기술력 자가 진단을 통해 보증결과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보증신청 진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468  
(이메일) 1986@kibo.or.kr



##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지원조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 차입금 등
- \* 선판매계약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우대사항 :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중복감면 불가)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같은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가산(+20%) : 수출콘텐츠
BBB, BBB+	50% 이내	• 가산(+10%)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융복합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BB, BB+	40% 이내	• 차감(-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B, B+	30% 이내	

-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 수출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 \* 융복합콘텐츠: 기존 콘텐츠 영역에 기술, 타장르, 타산업와의 다각적인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 \*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국내 자본이 50% 이상인 OTT 사업자에 유통하는 문화콘텐츠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콘텐츠
- 지원규모 : 1,680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 ~ '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 상담요청 및 신청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선판매계약서, 문화콘텐츠 제작예산서 등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1, 대전주재팀 ☎ 042-480-1320)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 ☎ 061-900-6264



## Q&A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보증신청 시점에 문화콘텐츠 선판매계약이 없어도 향후 판매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 문화산업완성보증 심사가 가능하며, 선판매계약 체결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선판매계약** : 제작사와 유통사 간 제작 완성 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해 판매조건 등이 합의된 계약으로, 문화콘텐츠의 유형 및 특성, 유통 과정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다름

\* 예시: (방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영화) 배급계약, (공연) 대관계약 및 티켓판매대행계약 등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li> <li>▶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li> <li>▶ 연구개발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li> <li>▶ 교육지원 서비스업</li> <li>▶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li> <li>▶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li> <li>▶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중개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산업/공연산업/광고산업</li> <li>▶ 방송산업</li> <li>▶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li> <li>▶ 정보서비스산업</li> <li>▶ 출판산업/캐릭터산업</li> </ul>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 \* 용역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용역공급계약前 지원		용역공급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BBB		8억원	50% 이내
BB+,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 ~ '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영업점·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 상담요청 및 신청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1, 대전주재팀 ☎ 042-480-1320)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

기후테크 산업성장,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가 및 사회 가치의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제도 개정 및 신설	기후기술보증, 녹색보증,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 등 각각 별도 상품으로 운용	기후테크·환경산업 영위기업 보증으로 일원화하여 보증지원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 지원유형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는 기업
    - (녹색보증) 녹색산업 영위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우수환경기업, 미세먼지저감기업, 물산업 영위기업
  - 지원조건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기후테크보증 판별기준\* 충족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 판별: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온실가스 저감 또는 처리 기술, 기후변화 관측·예측 및 예방 기술 또는 영향 제거 기술, 기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또는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향후 수주전략 수립 여부 등

\* ② 기후테크 산업 유형: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등), 카본테크(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등), 에코테크(자원순환, 폐기물 절감, 업사이클링), 푸드테크(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지오테크(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 (녹색보증)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녹색보증 판별기준에 따라 녹색보증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지원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우수환경기업 판별, 미세민지 대응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업종 영위, 환경산업 특수분류표 중 물산업 관련 업종 영위 또는 혁신형 물기업

#### ● 우대사항

-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 산정 생략

- (녹색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대보증) 90% 부분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24.1.1. ~ '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영업점에 상담 요청 및 신청

## 문의처

---

-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효율 설비도입, 연료전환, 공정전환·개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쏠 분야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평가방법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및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등을 활용하여 환경적 가치를 보증심사에 반영
  - \* 【탄소가치평가모델(KCVM)】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 지원내용

- 저탄소 인프라 확충, 탄소저감기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공정 전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보증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	----------	---	--------

- 탄소감축 기여 수준에 따라 보증료 감면 차등화(0.2~0.4%p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90~95% 부분보증) 적용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R&D 보증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대상 중기부 R&D 과제 중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대상 중기부 R&D 과제 중 최근 5년 이내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

###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분	주요 내용
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과제</b>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li> <li>• <b>대상자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li> <li>-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li> </ul> </li> </ul>

● **사업화단계 자금(기업단위)**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 완료 과제

구분	주요 내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amp;D 과제</li> <li>-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amp;D 과제</li> <li>-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amp;D 과제</li> </ul> </li> <li>• <b>대상자금</b> : R&amp;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li> </ul>

●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분	주요 내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 전담기관의 R&amp;D과제: 중기부 R&amp;D과제(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中 최근 5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li> </ul> </li> <li>• <b>대상자금</b> : 과제단위 사업화 또는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초기)운전자본</li> </ul>

● **지원규모 : 6조 2천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력, 탄소가치,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대출을 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 용어 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대표적인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모형 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핵심역량수준과 지속가능수준(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 : 사업화 주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R&D 과제 자체의 기술성·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유의사항

- ▶ 보증지원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출원 특허에 한하여 운용되며, 여타 지식재산(S/W, 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보증으로 취급 가능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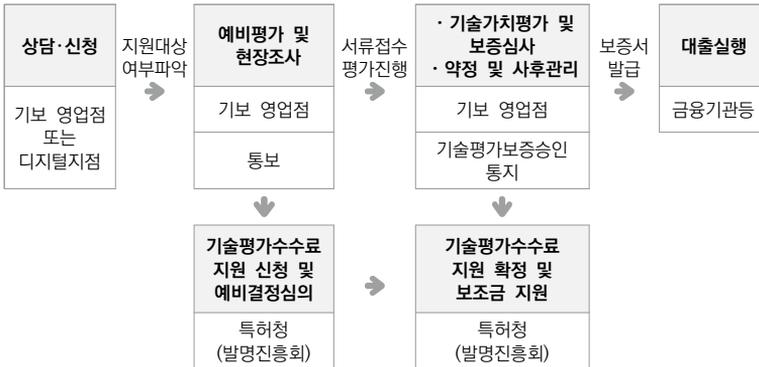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23.10월부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의 대상이 확대되어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S/W,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식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 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 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7%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 지원규모 : 2조 3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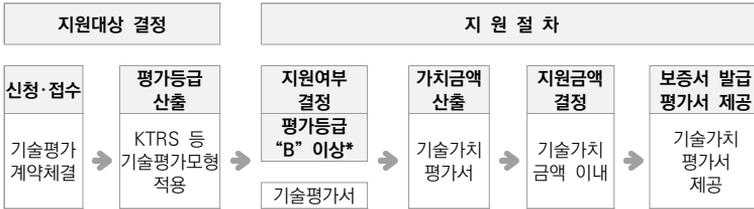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or 마이데이터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등(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방식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지점에서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 용어 설명

###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 기술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중 세부평가항목 추가 (팩토링 이용기업 등록을 위한 평가)

### 지원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 신청제외 대상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li> <li>•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li> <li>•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li> <li>•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li> <li>• 기술 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li> <li>•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li> </ul>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li> <li>• 발명의 사업성 평가</li> <li>• 기술개발관련자금, 창업자금 또는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평가</li> <li>•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li> <li>•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li> <li>• R&amp;D 평가</li> <li>•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li> <li>•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li> <li>• 팩토링 이용기업 등록을 위한 평가</li> </ul>
종합 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li> <li>•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li> <li>• 주식가치평가</li> </ul>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 평가용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 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

### 지원대상

- 실패기업 및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 실패기업 : 기보가 대위변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의무가 남아있는 기업
  - \*\* 재도전 경영자 : 실패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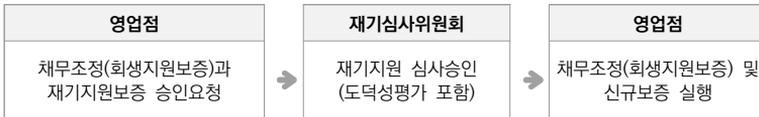
-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자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의무 보유한 경우 (다중채무자)
  -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문의

##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보증한도: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 신규 운전자금보증은 10억원 이내
- 지원금액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지원센터)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 추진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진공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가 단독으로 재기기업인에게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를 정상변제중이면 누구든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 및 채무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 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업체

###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 지원금액 :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범위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 처리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성실경영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 지식재산공제

기업이 공제에 가입하여 적립한 부금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지급사유(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사업화 등)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부금납입 방식(매월 납부(적립형))	부금납입 방식(매월 납부(적립형) 또는 일시 납부(예탁형))
	부금을 6회차(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대출 신청 가능	지식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금을 6회차(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즉시 대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옥탕업 및 마사지업
  - ▶ (대출)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 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하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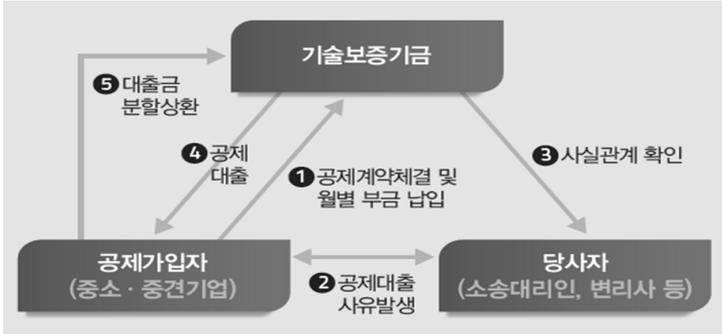
## 지원내용

- 부금 납입
    - 적금(월 30~1,000만원) 또는 예금(최소 1천만원~최대 5억원) 형태로 납입
    - 납부 부금에 대한 이자 지급(단기 이후 우대이자 지급) 및 해지 시 원금 보장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사유 발생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단, 분쟁비용 즉시대출의 경우 납부 부금액의 3배 이내 대출 가능)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 부가서비스
    - 법률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혜택 제공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것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보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http://www.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보 전국 영업점을 통해서도 대면 신청 가능
- 지식재산비용대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 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 02-3484-8900 / www.ipmas.or.kr)

Q&A

**Q**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공제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단, 가입 제한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이자율은 고정금리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公示됩니다. (2023년 12월 현재 연 3.25%)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재산권 등의 정보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 필요자금에 대한 기술금융까지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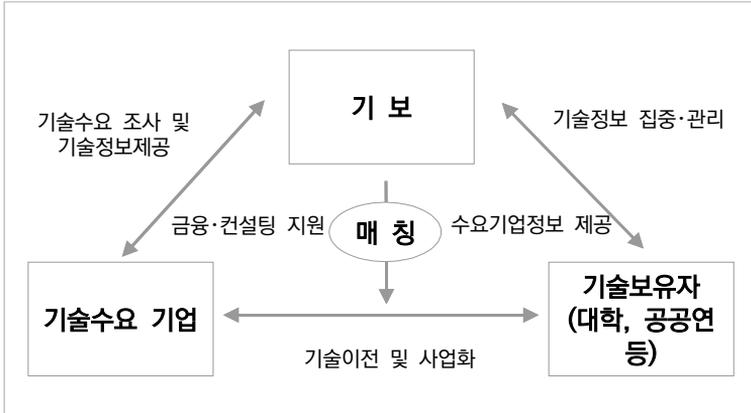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처리절차	기술이전계약 오프라인으로만 체결 가능	스마트 테크브릿지 內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기술이전 전자계약(온라인) 체결가능

### 지원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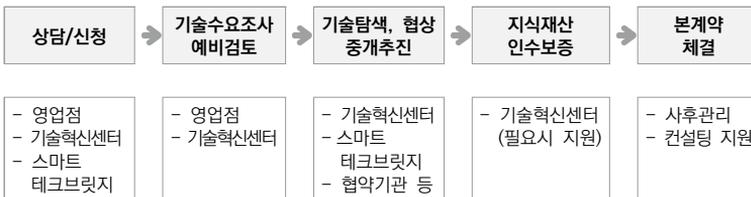
## 지원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 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 지원현황 : 기보는 '14년부터 '23.11월까지 8,574건의 공공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고, IP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인수보증 5,709억원을 지원

구 분	'14~'17	'18	'19	'20	'21	'22	'23	누 적
이전된 기술건수	2,150	737	856	900	1,030	1,276	1,625	8,574
IP인수 신규보증	1,491	593	641	613	712	808	852	5,709

### 추진절차



- ① 상담 및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전국 영업점(기술혁신센터 포함) 또는 스마트 테크브릿지 (tb.kibo.or.kr)를 통해 신청
- ②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 가능성 등 검토
- ③ 기술탐색(스마트 테크브릿지, 기보 기술혁신센터, 대학·공공연 등)
  - 온라인(AI·KTMS 기반 스마트 테크브릿지) 및 오프라인(기술혁신센터)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제공
- ④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대학·공공연 등)
  - 협상전락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스마트 테크브릿지 內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기술이전 전자계약 체결(해당 계약서는 특허권리 이전 신청 시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
- ⑤ 자금지원 (기보 기술혁신센터)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 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⑥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기술혁신센터
- 제출서류 : ① 기술이전 신청서, ② 정보이용동의서, ③ 기술수요조사서, ④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등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용어 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지식재산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식재산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 지원하는 제도



## 기술신탁관리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 관리, 기술이전 증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술신탁 제외대상

-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예정)된 기술
-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 공동명의 기술
- ▶ 기타 위탁자 혹은 신탁대상 기술로 부적합한 경우

### 지원내용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신탁기술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 90%까지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 \*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 추진절차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 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기술신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빅데이터 (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



## 기술임치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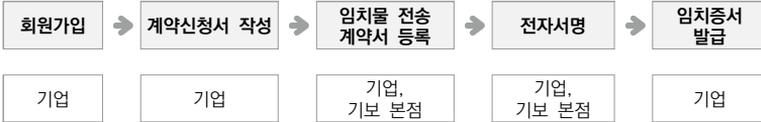
- 핵심기술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 시설·제품의 설계도 및 매뉴얼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및 성분표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 추진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Q&A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에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 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 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TTRS(증거지킴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Q&A

**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약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 제안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인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연계투자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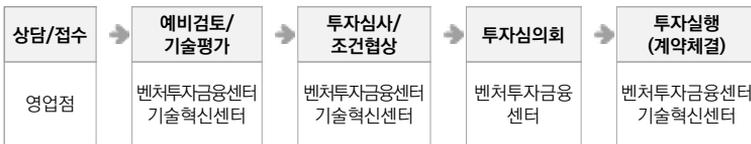
- ▶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 \* 단, R&D기업, 미래전략사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이거나 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 ▶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18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 지원내용

- 투자종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식
  - 주식인수, 전환사채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조건부지분인수 계약(SAFE) 등
- 지원규모 : 750억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억원 (보증금액 포함 200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1. 1~ '24. 12. 31.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추진절차



## 문의처

- ① 관할 지점 또는 ② 신청기업 본사·사업장 인근 지점  
- 고객센터 ☎ 1544-1120, 전국 지점 연락처는 홈페이지([www.kibo.or.kr](http://www.kibo.or.kr)) 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 (경로) 기술보증기금 > 기금소개 > 언론·홍보 > 기보뉴스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벤처투자연계보증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 보증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옵션내용(보증금액의 10%)	옵션내용(보증금액의 20%)
	행사기간(보증일로부터 3년)	행사기간(보증일로부터 5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
  - \*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특례지원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운전자금보증 금액 10억원까지 투자금액과 추정대출액 중 큰 금액의 1/2 지원 가능
  - \* 보증 신청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진행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지방소재기업, 최근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유치기업, 최종 기업가치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0.8% 고정보증료 적용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2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최소 5천만원)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 상환의무 부여
  - 당초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 후속투자\* 유치시 당초 보증금액의 20% 상환 의무 부여
  - \* 보증 취급 이후 투자금액 합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기 기준, 개인투자 및 전환사채 포함)
- '23년 지원현황 : 52개사 총 488억원 지원 ('23.11월말 기준)
- '24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3,500억원
  -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전국 영업점 (관할 영업점 정보 및 연락처는 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 용어 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기관, 외국투자회사 등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기관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 엔젤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보증료 0.3% 감면(투자옵션 부여시 1% 고정)	0.7% (고정보증료율)
	투자옵션부여 대상(보증금액 1억원 초과시)	투자옵션부여 대상(지원기업 전체)
	투자옵션금액(보증금액의 10%)	투자옵션금액(보증금액의 20%)
	행사기간(보증일로부터 3년)	행사기간(보증일로부터 5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 접수일자까지의 기간

\*\* 법인설립일로부터 보증 접수일자까지의 기간

#### 신청제외 대상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특례지원 : 아래 기준 중 선택 적용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
    - \* 단, 엔젤투자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억원까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 범위(최대 5억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 : 0.7%(고정보증료)
-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금액의 20% 이내 (최소 5천만원)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 전환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 \*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최종 투자건의 기업가치 기준)
- '23년 지원현황 : 89개사 총 287억원 지원 ('23.11월말 기준)
- '24년 지원금액 : 투자연계보증\* 총 3,500억원
  -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 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http://www.kibo.or.kr))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추진절차



## 문의처

- 전국 영업점 (관할 영업점 정보 및 연락처는 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http://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 용어 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 VC투자매칭 특별보증

민간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을 레버리지 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투자요건(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 투자 유치)	투자요건(2년 이내 20억원 이상 투자 유치)
	1.0% (고정보증료)	0.7% (고정보증료)
지원내용	투자유선금액(보증금액의 10%)	투자유선금액(보증금액의 20%)
	행사기간(보증일로부터 3년)	행사기간(보증일로부터 5년)

###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등기가 완료된 경우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보증신청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 실시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보증신청일 기준 협약기간 이내)

-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포스트 팀스(Post-TIPS) 참여기업 (보증신청일 기준 협약 기간 이내)

### 신청제외 대상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운전자금보증금액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0.7%(고정보증료)
- 투자우선부보증으로 운용
  - (우선내용) 보증금액의 2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최소 5천만원)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 '23년 지원현황 : 157개사 총 2,607억원 지원 (11월말 기준)
- '24년 지원규모 : 투자연계보증\* 총 3,500억원
  - \* 투자연계보증 : VC투자매칭특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벤처대출연계보증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접속 - 디지털지점 - 회원가입 - 창업·투자 - 복합금융 - 투자연계보증 - 신청하기 - 기업정보, 신청내용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영업점
- 제출서류 : 투자유치내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추진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상담	영업점 담당자	지원대상 확인·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서류 제출	신청기업	투자유치내역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 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문의처

- 전국 영업점 (관할 영업점 정보 및 연락처는 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참조)
- 고객센터 (☎ 1544-1120)



## Q&A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2년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은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받은 투자 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 유치 건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투자옵션** : 기금이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그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를 위해 납입하는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기관, 외국투자회사 등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기관

**기보파트너스** : 벤처·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으로, 기보VC파트너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등) 및 기보엔젤파트너스(창업기획자 등)로 구성



## 벤처확인평가

기술보증기금은 '98년부터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개편 후 '20.12월 벤처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장 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요건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li> <li>▶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li> <li>▶ 사업성 평가 우수</li> </ul>
예비벤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li> <li>▶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ul>

### 신청제외 대상

-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 舊벤처와 달라진 내용

- ▶ 기술평가보증·대출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유형 신설
- ▶ 벤처기업확인업무 이관(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협회)
- ▶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평가기관 지정 (기보 외 9개기관)
- ▶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
- ▶ 벤처확인평가 수수료 변경 (30만원 → 유형별 30~45만원)

## 수수료

- 벤처 신규, 연장 수수료 동일

구 분	벤처확인 수수료1)
혁신성장유형	45만원
이노비즈 연계2)	30만원
연구개발기업	35만원
예비벤처기업	35만원
벤처 재확인3)	30만원

- 1) 부가가치세 별도
- 2) 이노비즈 인증보유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한 경우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 확인 신청)
- 3) 예비벤처확인 이후 1년 이내 벤처재확인 신청한 경우(혁신성장유형 신청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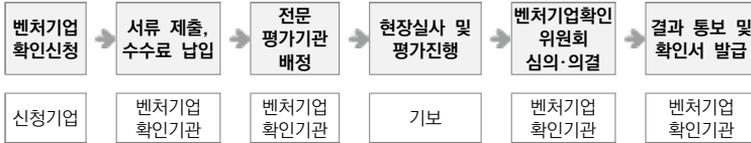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http://www.smes.go.kr/venture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제출서류 목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추진절차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www.kibo.or.kr)
-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



## Q&A

Q

벤처확인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21.2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시행 후 기술보증기금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벤처확인평가만을 전담하고 있고,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이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여부 결정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전문평가기관의 벤처확인평가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합니다.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공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 수납,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



##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수행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및 연장 평가 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및 연장 평가 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li> <li>▶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li> </ul>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li> </ul>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li> <li>▶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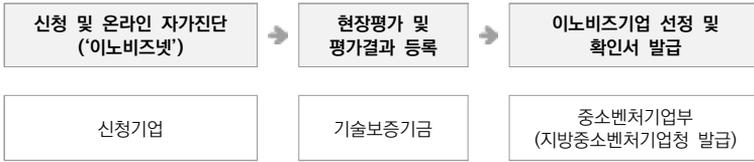
### 신청제외 대상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 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 ▶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평가료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15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60일 이내 보증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료 20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평가 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 \* 이노비즈 연장평가는 이노비즈협회에서 전량 실시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http://www.kibo.or.kr))
- 이노비즈넷 (☎ 031-628-9600 / [www.innobiz.net](http://www.innobiz.net))



Q&A

Q

이노비즈 심사 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

Inno-Biz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심사 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팩토링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단기금융서비스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 * 중소기업, 총자산 5천억원 미만 중견 기업 포함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 등
	-	신청제외 대상기업 추가 ▶ 당기 말 기준 회계기간이 360일 이상인 재무제표를 2기 미만 보유 기업 ▶ 당좌거래기업(가계당좌 제외)
지원내용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의 1/2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지원대상

- (판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전자세금계산서 한정)

### 신청제외 대상

-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통보처분을 받은 기업
-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 ▶ 당기 말 기준 회계기간이 360일 이상인 재무제표를 2기 미만 보유 기업
- ▶ 당좌거래기업(가계당좌 제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한도 부여
- 지원금액 : '24년 1,000억원 규모의 팩토링금융 공급 예정
- 지원효과

구분	매출채권 팩토링 이용효과	
판매 기업	▪ 연쇄부도 방지(상환청구권 無)	▪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 금융비용 절감(낮은 할인율)	▪ 재무건정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구매 기업	▪ 금융비용 절감(보증료 차감 등)	▪ 편리한 대금결제(만기일 자동출금)
	▪ 상생협력·동반성장	▪ 재무건정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팩토링 플랫폼 온라인 신청 및 기술보증기금과 거래 중인 기업은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 및 신청 가능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전담팀(☎ 051-606-7353, 7355, 7654)

# 제 3 부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  
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한도 적용</li> <li>-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li> <li>-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li> <li>•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li> </ul>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li> </ul>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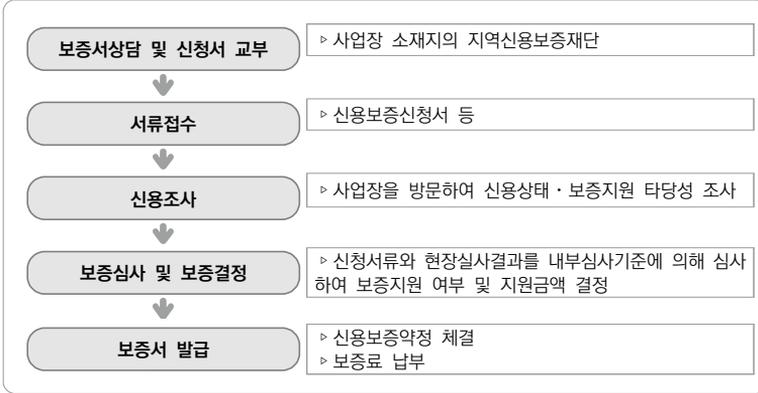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ul>
지역정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후·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24년 보증잔액 43.7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1월
보증 공급	건수	478,419	497,304	570,247	1,102,797	1,000,959	942,652
	금액	116,229	120,743	140,238	285,069	246,341	236,167
보증 잔액	건수	984,378	1,035,658	1,134,637	1,735,669	1,939,361	2,207,839
	금액	191,673	204,606	230,184	394,222	430,769	446,848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일반지원기업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소액지원기업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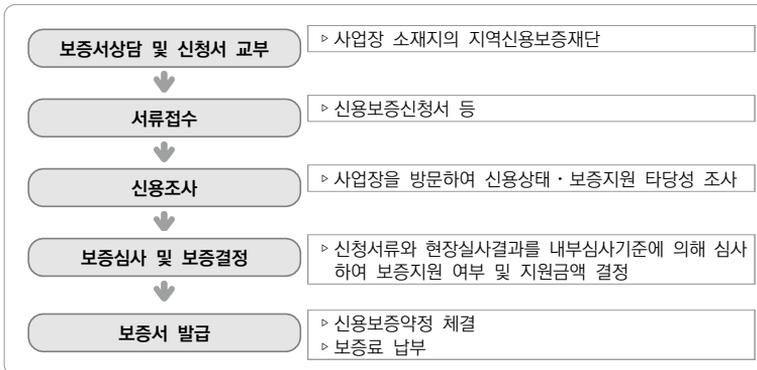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ul>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증규모 : 2,8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Q&A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무엇인가요?

A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용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 \*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li>• 신용보증신청서</li><li>•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li></ul>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li>• 주민등록등본</li><li>• 사업자등록증명원</li><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li>• 국세납세증명서</li><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li>• 휴·폐업증명원</li><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금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 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li>• 신용보증신청서</li><li>• 장애인 확인증</li><li>• 고업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li></ul>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li>• 주민등록등본</li><li>• 사업자등록증명원</li><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li>• 국세납세증명서</li><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li>• 휴·폐업증명원</li><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증규모 : 상시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Q&A

Q

“업력 6개월 이상”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 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li> </ul>				
	<table border="1"> <tr> <td>사회적기업</td> <td>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td> </tr>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td> </tr> </table>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자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table border="1"> <tr> <td>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td> <td>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td> </tr> </table>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사본, 출자지분표 사본				
<table border="1"> <tr> <td>마을기업</td> <td>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td> </tr> </table>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지정서(확인서)				
<table border="1"> <tr> <td>자활기업</td> <td>지자체 인증서 사본</td> </tr> </table>	자활기업	지자체 인증서 사본			
자활기업	지자체 인증서 사본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 보증규모 : 상시지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  
신협·새마을금고·농협·산림조합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성장의지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① 특화지원대상 소공인과 ② 일반 소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공인

- 1) 스마트공방 소공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 2) 판로개척 소공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 3) 백년소공인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4) 집적지구 소공인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

#### ② 일반 소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li>• 신용보증신청서 등</li></ul>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li>• 주민등록등본</li><li>• 사업자등록증명원</li><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li>• 국세납세증명서</li><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li>• 휴·폐업증명원</li><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증규모 : 30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외식업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보증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외식업 전통시장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이며, 음식점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
    -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을 말하며,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제외
  - ② 이태원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 사업장 소재지가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li>● 신용보증신청서 등</li></ul>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li>● 주민등록등본</li><li>● 사업자등록증명원</li><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li>● 국세납세증명서</li><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li>● 휴·폐업증명원</li><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증규모 : 1,050억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온[溫, ON]택트 특례보증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
  -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ul>
은행 직접수집 (스크래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소득금액증명(3개년)</li> <li>• 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li> <li>•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개년)</li> <li>• 국세납세증명원</li> <li>• 지방세납세증명원</li> <li>•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li> <li>• 현금영수증 매출정보</li> <li>•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li> <li>• 카드 매출정보</li> </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 보증규모 : 1조원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

## 문의처

---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5조원('10.7.26 ~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세종제외)		
금융회사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저소득자(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인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 신용보증신청서</li> <li>●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이행)</li> <li>●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li> <li>●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li> </ul>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표준재무제표증명원</li> <li>● 금융거래확인서 등</li> <li>● 국세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li> <li>● 휴·폐업증명원</li>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 처리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li> <li>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li> </ul> </li> </ul>	서민금융사
	↓	
보증심사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서류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신용보증재단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li> </ul> </li> </ul>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li> <li>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li> </ul> </li> <li>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li> </ul>	지역신용 보증재단

## 지원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	누계 (3개년치)
보증 공급	건수	17,081	10,992	10,723	38,796
	금액	1,803	1,237	1,254	4,294
보증 잔액	건수	92,724	75,928	59,795	228,447
	금액	5,530	4,210	3,548	13,288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0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li> <li>-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0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li> </ul> </li> <li>●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li> </ul>	8억원 이내
시설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li> </ul>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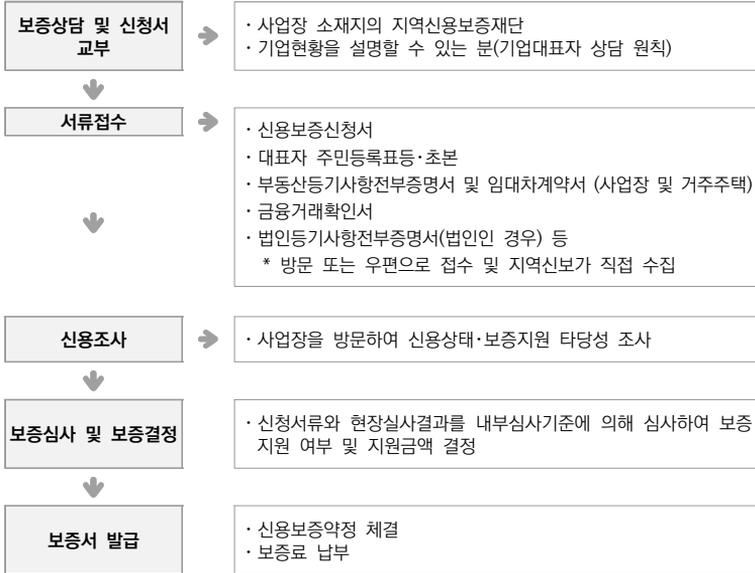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제출서류

-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 재무제표 등</li> <li>● 금융거래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등기소(대법원)</li> <li>●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li> <li>● 국세청 홈택스</li> <li>●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li> <li>● 금융기관 전산연계</li> </ul>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 사본</li> </ul>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2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3.7조원)  
\* 햇살론사업자 별도(공급 0.3조원, 보증잔액 0.5조원)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화) 044-204-7528, 044-204-752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 (전화) 1588-7365  
(이메일) [guarantee@koreg.or.kr](mailto:guarantee@koreg.or.kr)
- 기타 :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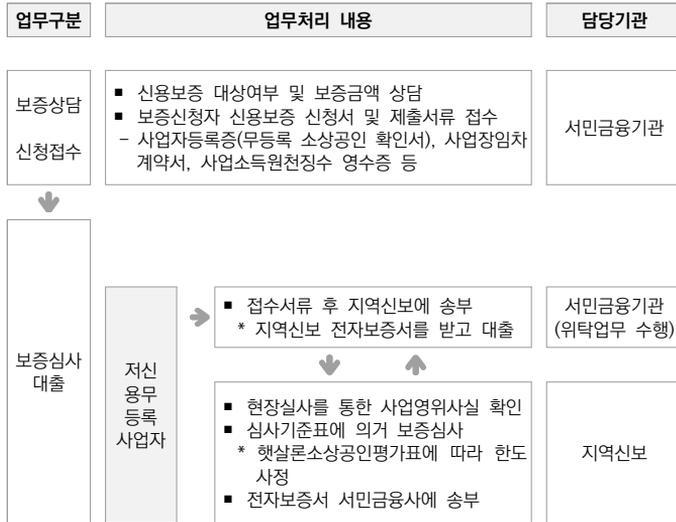


## Q&A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A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gjsinbo.or.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or.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신보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 제 4 부

# 신용보증기금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신용보증	지원내용 : (보증한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150억원까지 가능	지원내용 : (보증한도) 200억원까지 가능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선발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선발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 스타트업 도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지원내용 : 리틀펄린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보증연계투자	지원규모 : ○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지원규모: ○ 7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유동화회사 보증	제도개요 :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기준으로 편입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 설>	제도개요 :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기준으로 편입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규모 : 연 100개 업체 이상	지원규모 : 연 180개 업체
접매칭	문의처 : 기업컨설팅부 컨설팅운영팀 (☎ 053-430-4689)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053-430-4511)

구분	'23년도	'24년도
컨설팅	지원내용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위탁보증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상황에 따른 레벨업(경영개선) ·체인지업(재도전 지원)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등 위탁보증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상황에 따른 레벨업(경영개선)·체인지업(재도전 지원) 컨설팅 제공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688-8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692-93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498-9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512, 451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7(www.mainbiz.go.kr)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053-430-4511)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1666-5001, www.mainbiz.go.kr)
중소기업 팩토링	지원규모 : '23년 6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지원규모 : '24년 1,5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녹색 공정전환 보증	신청접수 : ESG보증팀	신청·접수 : <삭제>
	지원규모 : 연간 5,000억원	지원규모 : '24년도 연간 4,000억원 지원(예정)



## 신용보증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용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보증한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150억원까지 가능	(보증한도) 200억원까지 가능

###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 지원내용

###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2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금종류	보증한도
■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150억원
■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 집 (제 출) 자 료	자 료 수 집 경 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초본</li>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li> <li>• 해외이주신고확인서</li> <li>• 보험료 납부(원납)증명</li> </ul>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과세표준증명</li> <li>•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li> <li>• 재무제표</li> </ul>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확인서</li> </ul>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서</li> <li>• 주주명부</li> <li>• 기업개요표</li> </ul>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 처리절차

단계별	처리내용
신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li> <li>•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li> </ul>
↓	
자료수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li> <li>•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li> </ul>
↓	
보증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li> <li>•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li> </ul>
↓	
약정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li> <li>•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li> </ul>

## 지원규모

- 보증잔액 61.8조원으로 운용예정  
\* '23년 지원현황 (11월말 기준) : 61.9조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겐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프로그램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공동 프로젝트 보증	·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단위 보증 지원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중소·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 타	·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등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보증 등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 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Start-up NEST)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200개사 내외 선발	150개사 내외 선발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역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수료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 탈락·포기자

\* 유사 지원사업 예시: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 신청·접수

- 신보 ON-Biz([www.kodit.co.kr/sut/index.do](http://www.kodit.co.kr/sut/index.do))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지속성장가능성, 사업화가능성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선정절차)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선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스텝업 준비기업 보증	스텝업 보증
	스텝업 도전기업 보증 (업력) 창업 후 5년 이내	리틀펍권 보증 - (업력) 창업 후 7년 이내

###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스텝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의 보증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리틀펭귄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펭귄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3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Pre-ICON 보증
  - 창업 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5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 및 보증발급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 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고객의 자서날인) 신용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053-430-4368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Credit Line** : 운전자금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연차별로 보증을 지원하는 한도거래 방법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우수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공개모집 개시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신보 투자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 운용

구분	세부내용
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모집 개시일 현재 업력 2년 이상 10년 이하</li> </ul>
대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 하나의 대상분야를 영위</li> </ul>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최근 2개년 연평균 매출증가를 10% 이상 또는</li> <li>▪ 기관투자자로부터 유치한 누적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li> </ul>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보증제한 대상기업 및 보증제한 업종 영위기업
- ▶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대상기업
- ▶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증 & 투자 지원 병행 및 기업의 성장단계 및 상황에 맞는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
  - (보 증)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운전자금 보증지원(투자한도 포함)

- (투 자) 최대 30억원의 보증연계투자 지원
- (비금융) 맞춤형 컨설팅, 홍보활동 지원, 해외진출 및 판로지원, 기술·특허 자문 등
- (성과공유) 혁신아이콘 선정기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기업이 선택한 방식으로 성과의 일부를 혁신 생태계 구성원과 공유

성과목표				→	성과공유 방식				
투자 유치	기업 공개	외형 성장	기타		신보 투자	고용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재능 기부	기타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8월 예정 (상·하반기 각 1회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신청기업이 직접 신보ON-Biz ([www.kodit.co.kr/sut/index.do](http://www.kodit.co.kr/sut/index.do))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혁신아이콘 지원서, 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 선정규모

- 연간 10개사 내외 선정

## 선정절차

- '후보기업 모집 → 예비심사 → 본심사 → 최종 확정'의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아이콘 선정심의위원회」가 혁신성, 성장성, 지속가능성, ESG경영, 경영역량 등을 평가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 혁신아이콘팀 : 02-710-4674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64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혁신아이콘 선정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혁신아이콘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제공, ▲최저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0.7%p 추가 금리인하 지원, ▲해외진출, 각종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대상분야와 기업규모의 세부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상분야, 기업규모 등에 대한 세부요건은 공개모집 시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직전 2023년 제10기 혁신아이콘 선정을 위한 공고문 및 지원대상 세부요건은 신보ON-Biz([www.kodit.co.kr/sut/index.do](http://www.kodit.co.kr/sut/index.do))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혁신아이콘으로 선정된 대표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이 있나요?

**A** 혁신아이콘 대표기업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버킷플레이스’를 비롯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루닛’, ‘뷰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퀵리타스반도체’, ‘클라우드웍스’ 등이 있습니다.



##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600억원 이내	7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별로 차등적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등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 이내

##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 지원규모

- 7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 '23년 지원현황 : 673억원 투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상환전환우선주

-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 전환사채

-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프로젝트 투자

- ☞ 중소기업이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발 및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후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 대상은 주로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장르입니다.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기업가치 산정 없이 선투자 후, 기업이 적격 후속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시 후속투자자가 선정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신보에게 신주를 교부(자본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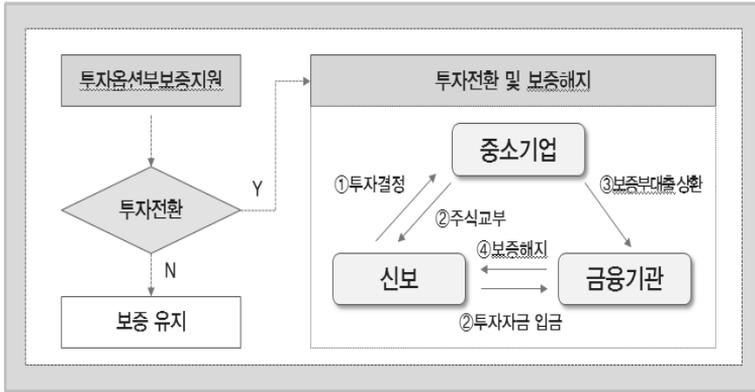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 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처리절차

- 투자옵션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상담·접수

신용조사

심사

보증서 발급

###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3년 지원현황 : 400억원 지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 용어 설명

####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동화회사보증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제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금리</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금리</li> <li>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li> <li>편입기업은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li> </ul>

###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li> <li>■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li> </ul>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li> </ul>

###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li> <li>■ 변제 이행기간 3년 미만 또는 변제이행률 60% 미만 회생 조기종결 기업</li> <li>■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li> </ul>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li> </ul>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영위 기업</li> </ul>

## 지원 유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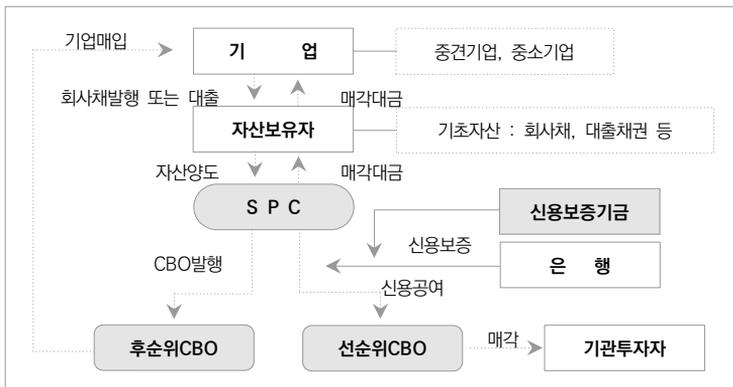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제 이행기간 3년 초과 &amp; 변제이행률 60% 초과 회생 조기종결 기업</li> </ul>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li> <li>■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li> <li>■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li> </ul>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li> </ul>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중견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일반	350			300	250	170	100

- 중소기업

(단위:억원)

미래성장성등급	K3이상	K4	K5	K6	K7	K8	K9	K10
일반	200	170		140	80	50	40	30

(주1) CPA 감사보고서 비보유기업은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주2) 지원 한도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상향 가능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li> <li>●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li> </ul>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li> </ul>

(주)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 발행금리

-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기준으로 편입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기업은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의 이차보전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 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 처리절차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용어 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 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보가 주도적으로 기업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계속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연 100개 업체 이상	연 180개 업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총여신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 (경영상태 취약지표) 2년 연속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부(-), 자본잠식 상태 등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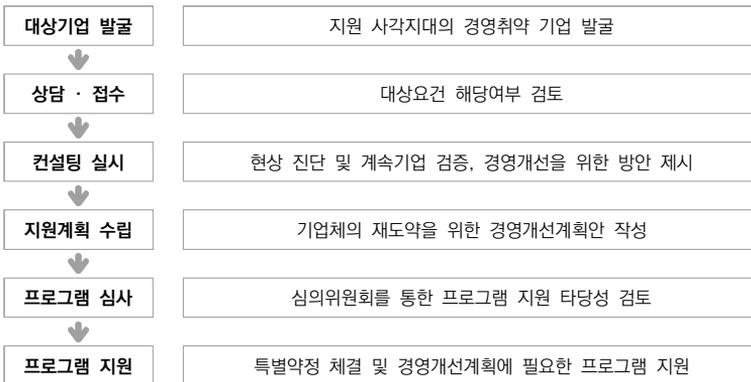
- ▶ 매출 30억원 미만 및 종업원 5인 미만기업, 업력5년이하, 부적합 업종\*
- \* 개인서비스, 농업·육가공, 인력공급, 슈퍼마켓, 의료소매, 음식점, 건설기계 임대 등
- ▶ 직접보증잔액 5억미만, 최근 1년 이내 신규보증보증 취급기업
-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 지원내용

구 분	V(I) 프로그램	V(II) 프로그램
지원방식	신보 단독지원	채권은행과 공동지원
지원기간	3년+1년(연장가능)	좌동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보증(최고 50억원)</li> <li>▶ 컨설팅(외부 경영진단)</li> <li>▶ 보증료 차감</li> <li>▶ 만기연장 보장</li> <li>▶ 보험료 할인(1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 지원</li> <li>▶ 협약은행여신금리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p 금리인하</li> </ul> </li> <li>▶ 만기연장</li> </ul>
협약은행		기업, 하나, 농협, 신한

##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경영개선계획서
- 선정평가 : 단계별 평가 방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컨설팅을 통한 만성적 위기기업 선별, 심사 시 재도약평가표 및 심의위원회(외부전문가) 운용
- 추진절차



## 지원규모

- 연 180개 업체 지원 예정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신용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단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밸류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심사 이전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종류에 따라 1~2개월의 수행기간이 필요하며, 컨설팅 완료 이후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므로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
- 구매자의 폐업, 해산,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온라인보험	실시간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보험은 홈페이지 내 매출채권보험 플랫폼에서 신청·가입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 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온라인보험의 경우 관할점 방문·서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보험인수 21.2조원으로 운용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 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 잡매칭(Job Matching)

구인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고용문제 해결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문의처	기업컨설팅부 컨설팅운영팀 (☎ 053-430-4689)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053-430-4511)

### 지원대상

-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지원내용

- 잡클라우드
  - 신보 홈페이지 내 채용플랫폼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시 구인·구직활동 지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전문 채용플랫폼 연계를 통해 신보 추천기업 전용 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일자리 매칭 지원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유관기관의 고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맞춤형 인재 채용, 인건비 절감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잡클라우드) 홈페이지(www.kodit.co.kr) - 신보On-Biz - 경영지원 - 잡클라우드
  - (그 외) 프로그램별 참여기업 모집 시 신청방법 별도 안내
- 추진절차 :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053-430-4511)



## 컨설팅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영진단과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위탁보증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상황에 따른 레벨업(경영개선)· 체인지업(재도전 지원) 컨설팅제공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688-8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692-93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498-9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512, 4514

### 지원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ESG경영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기업공개(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사업화, 가업승계, 지식재산(IP)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 One-Point 화상컨설팅
  - 중소기업의 단편적 경영 애로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및 자문해주는 비대면 화상 컨설팅 서비스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 소상공인 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등 위탁보증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상황에 따른 레벨업 (경영개선)·체인지업(재도전 지원)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전액 무료

## 신청·접수

- (경영·특화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경영지원플랫폼\* 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컨설팅) 경영지원플랫폼에서 다운받은 컨설팅신청서를 영업점 담당자에게 신청

\* 경영지원플랫폼 주소 : [www.kodit.co.kr/apps/index.do](http://www.kodit.co.kr/apps/index.do)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 처리절차



\* Kick-off 미팅 : 기업, 컨설턴트, PM이 대면하여 컨설팅 방향 및 과업 범위, 진행일정, 컨설팅 비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미팅

## 지원규모

- (경영·특화컨설팅) 年 18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 '23년 지원현황(11월말) : 경영컨설팅 235건, 특화컨설팅 306건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年 42억원 내외 (~'26년도까지 연간 3,500건 지원)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경영·특화컨설팅) 053-430-4498~4499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053-430-4512, 451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 경영지원플랫폼이란?

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비금융종합지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a href="http://www.kodit.co.kr">www.kodit.co.kr</a>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7 ( <a href="http://www.mainbiz.go.kr">www.mainbiz.go.kr</a>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 (☎ 053-430-4511)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1, <a href="http://www.mainbiz.go.kr">www.mainbiz.go.kr</a>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 신청제외 대상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 ▶ 연체, 국제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차감) 0.1%p ~ 0.2%p(우수 경영혁신형 기업)
  - (부분보증비율 우대) 85% ~ 90%(우수 경영혁신형 기업)
  - (보험료율 할인) 매출채권보험료 5% 할인
  - (협약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최대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은행별 지원내용 상이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80% 비용 지원, 4백만원 한도)
    -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메인비즈 홈페이지([www.mainbiz.go.kr](http://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

### 자료 등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메인비즈로 선정
- 평가수수료(기업 부담) : 신규 55만원, 연장 44만원 / 부가세 포함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및 성과를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지원부(☎053-430-4511)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1666-5001, [www.mainbiz.go.kr](http://www.mainbiz.go.kr))

### 용어 설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팩토링

신보가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Factoring)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합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600억원 규모	1,500억원 규모

### 지원대상

구분	대상요건
판매기업	원활한 물품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
구매기업	대기업, 외감법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과세대상 매출채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구매기업과의 거래기간이 6개월 미만인 판매기업
- ▶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 ▶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한도  
(판매기업) 최고한도 100억원, (구매기업) 최고한도 30억원 거래 규모,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고한도 이내에서 기업별 한도 차등 운용
- 지원효과

구분	효과		
구매기업	신규 결제수단	금융비용 無	보증료 차감 등
판매기업	금융비용 절감	신속한 현금화	상환청구권 無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판매기업 팩토링 한도 확대 : (기존) 최고 10억원 → (변경) 최고 100억원

## 신청·접수

- 신규 고객은 팩토링 전담팀을 통한 유선상담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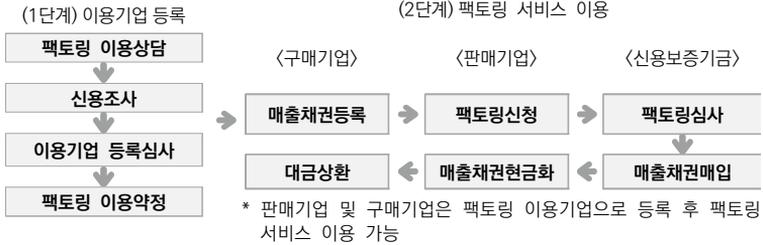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대표자 경영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신용도,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제출서류

- 고객정보활용동의서, 기업 재무자료(재무상태표 등), 주주명부 등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4년 1,500억원 규모의 팩토링 공급 예정
- \* '23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795억원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팩토링 전담팀 (☎ 02-710-4634, 4639)



## Q&A

Q

안심거래플랫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안심거래플랫폼([www.kodit.co.kr/safe](http://www.kodit.co.kr/safe))으로 접속하시면 서류제출부터 약정 및 팩토링 신청까지 비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대표이사 개인용) 필요



## 녹색 공정전환 보증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지원조건 우대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노력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영업점 또는 ESG보증팀	영업점
지원규모	'23년도 연간 5,000억원 지원(예정)	'24년도 연간 4,000억원 지원(예정)

###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저탄소 기술 혁신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 저탄소 설비 도입,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추진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 친환경 분야 제품·기술 생산 또는 개발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무 미상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 중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의 빈번한 연체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 저탄소·친환경 제품 및 기술의 생산확대 등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 보증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 보증비율
  - 95%(전액해지 시설자금은 100%)
- 보증료율
  - 산출보증료에서 0.2~0.3%p 차감 또는 고정요율(0.5%) 적용

##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급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영업점 방문, 유선 신청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http://www.kodit.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 신청기업의 신용평가 외에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를 추가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 \* 생산공정이나 제품·기술의 에너지(전기·연료) 사용량 등의 절감효과

##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사업계획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서 등)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 및 보증발급

## 지원규모

- '24년도 연간 4,000억원 지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http://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예정)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제11기 혁신아이콘 모집	신용보증기금	02-710-4674 053-430-4364
3월 (예정)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Start-up NEST 제15기 모집	신용보증기금	053-430-4370
6월 (예정)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Start-up NEST 제16기 모집	신용보증기금	053-430-4370
8월 (예정)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제12기 혁신아이콘 모집	신용보증기금	02-710-4674 053-430-4364

# 제 5 부

---



# 한국수출입은행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수출입은행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삭 제)
첨단전략산업 우대 프로그램	-	(신 규 추 가)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간 직수출 규모 1백만불 이하	- 연간 직수출 규모 5백만불 이하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자격요건)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 U\$10백만 이상이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 ②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중 고용증가기업(고용자수 증가율 3% 이상)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선정절차)	- 평균 연 1회, 기업신청 접수 이후 1·2차 심사하여 최종 선정	- 연 1회,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해당 여부에 따라 자동 선정



## 2023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 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첨단전략산업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전자·전자(5대 분야, 69개 품목)

### 지원내용

- 첨단전략산업 품목에 대한 맞춤형 우대 지원
  -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Delta$ 1.2%p)
  - 수수료 우대(최대 50%)
  - 금리전환옵션(3년 이상 변동금리 대출  $\rightarrow$  고정금리 전환)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처리절차



## 문의처

---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9 / 02-3779-6256  
중소증권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5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증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도	'24년도
프로그램 명칭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대상	연간 직수출 규모 1백만불 이하	연간 직수출 규모 5백만불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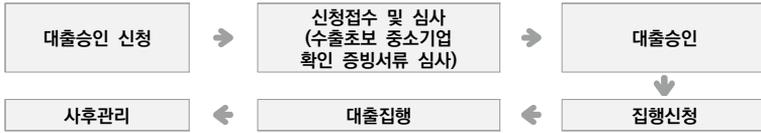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5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
-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4 / 02-3779-6256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수출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정부인증 기업과 각 시도별 선정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선도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사업입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자격 요건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 US\$10백만 이상이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 ②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중 고용증가기업 (고용자수 증가율 3% 이상)
선정 절차	- 평균 연 1회, 기업신청 접수 이후 1·2차 심사하여 최종 선정	- 연 1회,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해당 여부에 따라 자동 선정

### 지원대상

- 수출 중소기업 중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등) 또는 지역선도기업

### 실행절차

- 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업 선정

- \* 자격요건 :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 U\$10백만 이상이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최근 3년 이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사실로 판결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 정부인증기업(월드클래스, 소부장 강소기업 등)
- ②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중 고용증가기업(고용자수 증가율 3% 이상)

- \* 선정절차 : 연 1회,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해당 여부에 따라 선정

- \* 선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 맞춤형 서비스제공

-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설명회,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금융서비스 제공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8 / 02-6252-3429



##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디블 등)
-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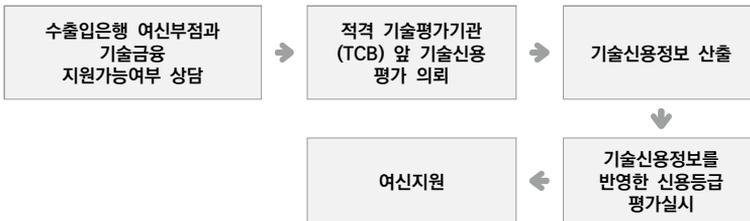
##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지원절차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54 / 02-3779-6256
-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16 / 02-6252-3420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제 6 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중소중견Plus+ 보험	○ 책임한도 - 중소기업 : 최대 100만불 - 중견기업 : 최대 300만불 - 수입자당 한도 : 30만불	○ 책임한도 증액 - 중소기업 : 최대 150만불 - 중견기업 : 최대 450만불 - 수입자당 한도 : 50만불
수입보험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 지원대상 (글로벌공급망)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소재·부품, 장비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글로벌공급망)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 소재·부품, 장비·부리산업·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 제도 개요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보고서 종류	정보제공 내역	목적
요약보고서	재무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등 기업정보, 국가 정보, 신용평가결과(등급) 등	정보 수집 및 무역보험 이용을 위한 등급 책정
Full Report	공사 요약보고서, 해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원본(영문)	상세 정보 수집

### 유의사항

- ☞ 현지 신용조사는 평균 2~3주가 소요되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거절, 불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상 여유 있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는 신청기업이 의뢰한 수입자의 신용도를 조사, 평가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수입자 명의로 체결한 수출입 계약의 진정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이용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 ①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이용기업 → K-SURE)
  - K-SURE DB에 수입자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사이버영업점)
    - ☞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담당자 등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 수수료 납부방법 선택(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등)
- ② 해외 신용조사기관 앞 조사 의뢰 및 조사보고서 접수 (K-SURE ↔ 해외기관)
  - 약 2~3주간 현지 신용조사 후 조사보고서 접수
- ③ 신용평가 실시 및 보고서 발송 (K-SURE → 이용기업)
  - 신용평가 실시
  - 요약보고서(등급 포함) 자동 발송 (신청자 이메일)
    - ☞ Full Report는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조회
- ④ 수수료 납부(후불제) (이용기업 → K-SURE)
  - 신청시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주요 재무정보만 있는 경우도 포함

\*\* 공사는 고객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조사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방법〉

수납 방식	청구방법	납부
가상계좌입금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조사 완료일 익월 첫영업일 ☞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모든 사용자가 사이버영업점에서 조회 가능	일괄 납부 ☞ 조사 완료일 익월 27일
신용카드	조사완료시 건별 납부안내	건별 납부 ☞ 조사 완료일 당월 말일까지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사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통해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시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
  - \*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시 공사가 수출자 앞 가지는 구상 채권은 연계 단기수출보험 지급보험금으로 상계처리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매입)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 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 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  
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  
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단기수출보험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 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 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 지원내용

###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li> <li>☞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li> </ul>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li> <li>☞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li> </ul>

● 보험 조건

구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li> <li>중계무역 : 95% 이내</li> <li>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ul>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 (변경)신청서

###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중견Plus+보험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책임한도	○ 책임한도 - 중소기업 : 최대 100만불 - 중견기업 : 최대 300만불 - 수입자당 한도 : 30만불	○ 책임한도 증액 - 중소기업 : 최대 150만불 - 중견기업 : 최대 450만불 - 수입자당 한도 : 50만불

###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150만불, 중견기업 4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50만 이내 보상)

## 담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 (필수가입)	무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선택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 (필수가입)	중소 최대 150만불 (중견 최대 450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50만 이내 보상]
	선택	클레임 위험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환변동보험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업체도 지원

###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회수 (수출 일반형 기준)

## 〈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환차손을 지급받고, 환율 상승시 환차익을 납부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일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www.ksure.or.kr/rh-fx/index.do](http://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헤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 등 헤지거래기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처리절차



##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중  
(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 청약 및 결제

-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http://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 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해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기간별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 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의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해당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



##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공급망</li> <li>-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li> <li>- 소재·부품, 장비 중소중견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공급망</li> <li>-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li> <li>- 소재·부품, 장비·부리산업·방위 산업 중소중견기업</li> </ul>

### 지원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

####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 지원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 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E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부리산업·방위산업 중소기업 제조기업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http://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 처리절차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채권 회수컨설팅(무료)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채권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R등급\*, 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등 미납 시, 수입관련 선수금, 사인 간 금전거래 채권
-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책정한 불량등급

### 지원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 되는 수출기업에 공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해외채권 회수대행
  -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추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회수 대행
  - \* 40개국 110개기관 해외추심기관과 협약 체결

## 유의사항

-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회수대행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추심기관 수수료 약 25% 및 공사수수료 2% 내외 수준(부가세 별도)
- 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 파산·회생절차 신청이 완료된 건 등
-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 조기 회수상당 권장

##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로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상시 접수 가능)

## 상담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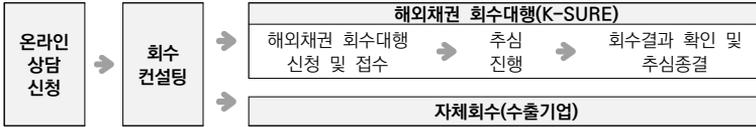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실시 및 해외채권 회수대행 절차 안내
- \* 채무인정자료 확보, 수입자와의 협상, 클레임 대응방법 등 공사의 축척된 채권 회수 노하우를 수출자에게 제공

## 신청서류(회사명, 연도)

- 채권자 관련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 채권관련 서류
  -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서류 등

## 이용절차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Q&A

**Q**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제 7 부



# 기업은행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기업은행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대출금리 연 1.0%p 자동감면	대출금리 연 1.3%p 자동감면 (단, R&D 대표성과 기업의 경우 연 2.0%p 이내 금리감면 가능)



## 2024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주요상품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강소기업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 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IBK문화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당행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IBK시설투자대출	• 경성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협약대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중기부R&D 사업화 자금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



##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이내

### 대출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 담보운용

-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주담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이내 운용

##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333



## IP사업화자금대출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당행 소기업·소액결제성·중기업 신용평가 기업 중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이면서 기술등급 T4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등급이면서 기술등급 T3이상이고 빅데이터등급 4이상 기업 단, 혁신기업\*은 신용평가등급, 기술등급에 불문하고 지원 가능
  -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요,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평가등급' 및 'TCB평가서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 담보운용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 문의처

- IBK기업은행 혁신금융부 : 02-729-3620



## IBK강소기업대출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 IBK문화콘텐츠대출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당행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1. IBK문화콘텐츠대출 특례보증부대출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단, 제 3호의 경우 산업분류코드 검증 배제)

- ① 문화콘텐츠 특별출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② 창업·일자리 창출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③ K콘텐츠 혁신성장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④ 문화산업 정책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⑤ 콘텐츠 크리에이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규모

- 2,5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 판매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 지원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를 추천 받고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 IBK시설투자대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 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 용자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 IBK토지분양협약대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 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90% 이내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기술력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천한 R&D 과제 성공기업 및 수행기업

###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최대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이내,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우대사항

---

- 대출금리 연 1.3%p 자동감면  
(단, R&D 대표성과 기업의 경우 연 2.0%p 이내 금리감면 가능)

## 문의처

---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5205

## 제 8 부

# 한국산업은행





##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 온렌딩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분야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원화일반 온렌딩	• 시설/운영자금 지원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온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운영자금 지원</li> <li>•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육성</li> <li>- 수출기업지원</li> <li>- 소부장 첨단전략산업</li> <li>- 탄소중립 지원</li> <li>- 산업전환 지원</li> <li>- 창업·벤처기업</li> <li>- 일자리 창출기업</li> <li>- 지역경제활성화(지방소재)</li> <li>- 지방은행 우대</li> <li>- 동산담보대출 활성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운영자금 지원</li> <li>•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육성</li> <li>- 수출기업지원</li> <li>- 지역경제활성화(지방소재)</li> </ul> </li> </ul>
리스 자금 온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 방식을 통해 기계 설비 등(리스물건이 승용차인 경우 제외)을 도입할 소요자금 지원</li> </ul>	-
외화자금 온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운영자금 지원</li> <li>•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시설 및 운영자금</li> </ul> </li> </ul>	-

### ● 대출한도

구분	일반온렌딩	특별온렌딩
중소기업	100억원	200억원
중견기업	-	300억원

※ 신산업육성, 창업·벤처기업지원, 수출기업지원 등 상품별 지원 요건은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앞 문의

※ 기업별 총 온렌딩대출한도(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는 초과 불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한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산업은행 방문 없이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점(중개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 '24년도 온렌딩대출 취급 가능 중개금융기관
  - 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커머셜, 우리금융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0
  - 단, 온렌딩대출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은행, 여전사)의 영업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DB 온렌딩금융 플랫폼([onlending.kdb.co.kr](http://onlending.kdb.co.kr))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http://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 · 간접투자 → 온렌딩대출



## Q&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A**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급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출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편

---



#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 제1편

### 유관기관 (금융기관)

- 제1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2부 > 기술보증기금
- 제3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4부 > 신용보증기금
- 제5부 > 한국수출입은행
- 제6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7부 > 기업은행
- 제8부 > 한국산업은행

## 제2편

###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 제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2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3부 > 창업진흥원
- 제4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제5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제6부 > 중소기업중앙회
- 제7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8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제9부 > 한국무역협회
- 제10부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제11부 > 대한상공회의소

# 제 1 부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지원규모) 105개사	(지원규모) 210개사
우리동네 클라우드판당 지원사업	(지원규모) 1,000개사	(지원규모) 1,333개사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창업아카데미, 미니피칭대회 월 1회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창업아카데미 연 5회, 미니피칭대회 연 2회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 교육비 환급금액 50만원 한도	기초과정은 40만원, 심화과정은 60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120개사 내외	220개사 내외
로컬브랜드 창출	4개팀 내외	8개팀 내외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추진	사업폐지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신규지정, 성장지원(시설, 판로)	신규지정, 성장지원(시설, 판로) 폐지(재지정만 운영)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협업추진주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고일) '23.2.24	(공고일) '24.1월중
시장경쟁 패키지지원	선정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선정 등급(가,나,다)에 따라 국비(60,40,30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 45백만원 지원 - 국비 36백만원 이하, 지방비 자부담 9백만원 이상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전기안전 취약등급(D·E)인 개별점포

구분	'23년도	'24년도
<p>공동 우대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li>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1년, '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li> <li>•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li> <li>•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li> <li>•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li> <li>• 풍수해보험(4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1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li>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li> <li>•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50% 이상인 곳</li> <li>•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li> <li>•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li> <li>•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li> </ul>
<p>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p>	<p>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p> <p>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p>	<p>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p> <p>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p>
<p>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li> <li>•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li> <li>•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li> </ul> <p>전통시장 사업관리 플랫폼을 통한 접수</p> <p>①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li> <li>•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li> <li>• 상인회가 사업주체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되, 공단의 별도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li> <li>•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li> </ul> <p>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p> <p>①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50%이상(모두 충족)</p>

구분	'23년도	'24년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사업관리 플랫폼을 통한 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1년차) 국비 50%, 지방비 50% - (2년차)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부담 비용 지자체 대납 가능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1,2년차) 국비 50%, 지방비 50% * 2년차 자부담 폐지
	사업 최종 선정 후 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주체 '협동조합' 미설립 시 사업 자동 취소 등 패널티 부여	1년차 사업종료시까지 운영조직(협동조합) 미설립, 온라인 입점 추진 미흡 시 패널티 부여 예정
청년물 활성화	청년물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물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물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물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① 청년물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② 청년물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③ 청년물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온누리상품권 발행	모바일상품권 구입처 22개 앱	모바일상품권 구입처 2개 앱
일반경영안정 자금	- 지원대상 : 업력3년 미만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업력무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 자금	- 자금명칭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대출금리 : ① 청년고용연계자금 : 2% ② 재도전특별자금 : 3% ③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2%	- 자금명칭 : 경영회복자금 - 대출금리 : ① 청년고용연계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 ② 재도전특별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 + 1.6%p ③ 경영회복자금(現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 + 1.6%p
소공인특화 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부리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 : 대리대출

구분	'23년도	'24년도
혁신성장촉진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li> <li>◦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li> </ul> </li> <li>-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li> <li>- 백년가게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li> <li>-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마트공장 도입·확인 소상공인</li> <li>②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li> <li>③ 2년 연속 매출증가(연 10% 이상) 소상공인(신설)</li> <li>④ 수출 소상공인, ⑤ 사회적 경제기업</li> <li>⑥ 스마트기술·온라인 활용 소상공인</li> <li>⑦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li> <li>⑧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li> </ol> </li> <li>*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이 스마트자금으로 통합됨</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0.4%p</li> </ul>
민간투자연계 형태창업자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0.2%p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0.4%p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미래형(로봇기술) 지원한도 15백만원	미래형(로봇기술) 지원한도 10백만원
경험형 스마트마켓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각 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O2O플랫폼 진출지원 소상공인 14,400개사 지원	O2O플랫폼 진출지원 소상공인 18,000개사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17개교) 2학기 운영 - 각 대학별 연간 2회 교육생 모집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단일학기 운영 - 각 대학별 연간 1회 교육생 모집
희망리턴 패키지	<p>(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예정)자의 업종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p> <p>(점포철거비 지원) 지원금 지급 전 신청 사업장의 현장진단(사전진단) 실시 * (기존 지원절차) 신청→신청서류 검토→사업장 현장방문(사전진단)→정산서류 검토→비용지급</p>	<p>(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예정)자의 업종과 유사한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 지원 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가 부동산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p> <p>(점포철거비 지원) 지원금 先지급 후 신청 사업장의 현장진단(사후점검) 실시 * (변경된 지원절차) 신청→신청서류 검토→정산서류 검토→비용지급→사업장 현장방문(사후점검)</p>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구분	'23년도	'24년도
상권정보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사업자번호 기반 상가DB 개편</li> <li>▶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정에 따른 상가 DB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개편 (기준) 447 → 247개 서비스 업종</li> </ul> </li> <li>▶ 주요상권 서비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동 별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요상권에 대한 상권정보도 함께 제공</li> </ul> </li> <li>▶ 주요상권 영역 재정비 및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활용하여 기존 주요상권 영역(1,166개) 대비 신규 주요상권 영역 도출 완료. 데이터 재집계 후 서비스 예정 (~24년 상반기)</li> </ul> </li> <li>▶ 상권 랭킹서비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분석 이력(로그)를 활용한 지역·업종별 관심상권 순위 제공</li> </ul> </li> </ul>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연결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민간자금 연계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05개사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1,000개사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10개사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1,333개사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수혜업체 우대

####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내용

### 1.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지원 세부내용 : 팀빌딩프로그램 및 사업모델(BM)고도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팀빌딩) 스타트업, 창작자 등 사업 수행 시 협업할 전문 파트너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과 사업 관련 경영, 마케팅 등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신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10개사 지원
- 지원금액 : 19,986백만원

### 2.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 지원 세부내용 : 클라우드펀딩 교육·코칭, 클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지원규모 : 1,333개사 지원
- 지원금액 : 4,00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중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및 매출관련 서류 등
- 선정평가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총 2단계 평가(서류→ 사업성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자격 요건확인,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 등 확인
- 추진절차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축진과 : (전화) 044-204-7854, 7283 (이메일) lcsdoit@korea.kr, kts6294@korea.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6, 7727, 7737 (이메일) strong@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강한 소상공인 모집 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소상공인 모집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작자, 스타트업 등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모델(BM)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Q**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유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교육, 컨설팅 수수료 등 펀딩에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용어 설명

**클라우드펀딩** :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BM(Business Model)**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드립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창업아카데미, 미니피칭대회 월 1회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창업아카데미 연 5회, 미니피칭대회 연 2회
신청접수	23. 3월	24. 2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제외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
  - (창업역량강화)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회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 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 지원)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정책자금)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연계(최대 1억원)
- 지원규모 : 총 500명 내외
- 지원금액 : 196,41억원
  -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온라인작성),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 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등 신청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선정평가 : 사업화지원금 확정 등 서류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지역별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서류심사 시,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성, 발표심사 시, 사업화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
- 추진절차 :

구분	모집 및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사업화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17기	'24.2월		'24.3월		'24.4월		'24.4월 ~11월		'24.4월 ~12월

\* 세부 내용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 044-204-72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전화) 042-363-7722  
(이메일) [bm@semas.or.kr](mailto:bm@sema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인터넷 주소) <http://newbiz.sbiz.or.kr>



## Q&A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전문기술 교육비 환급금액이 50만원 한도	기초과정은 40만원, 심화과정은 60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

####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 “사업참여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교육생
- ▶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적발된 교육생
- ▶ 기타 주관기관이 사업공고를 통해 고지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바우처 형식, 민간 교육기관 등 수행)
    -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최대 6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전용교육장 교육
  - 중장년층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현장교육 등 실습형 교육지원 및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전용교육장 무료 대관 등
- 소상공인 온택트 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성장·성숙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온라인 교육 및 전자도서 대여서비스 제공
- 민·관 협업 교육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민간 기업, 유관기관과협업을 통한 실전 교육과정 지원
- 로컬콘텐츠 증점대혁
  - 청년 로컬창업자가 충분한 준비 후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을 혁신창업기지로 활용하여 현장형 교육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c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 전문기술교육, 전용교육장교육, 온택트 교육에 해당

## 문의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c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민·관 협업교육 온라인셀러 양성과정  
(카카오쇼핑'더하는가치') 참여 소상공인 모집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민·관 협업교육 온라인셀러 양성과정  
(네이버'숏클립화법스쿨') 참여 소상공인 모집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명 : 2024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신규 참여 대학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전문기술교육 교육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기관이 등록한 교육과정 중 업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신 후 교육비 신청을 해주시면 위탁운영기관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교육생 계좌로 교육비의 90%(60만원 한도)를 지원해드립니다.

**Q** 소상공인 전자도서관의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상공인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대여 한도는 월 4권(전자책 3권, 오디오북 1권)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매월 변동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cs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온택트(On-Tact)** :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뜻함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90%(국비), 10%(자부담)
- 우대사항 : 간이과세자 등(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

###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무료법률구조)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특허, 법률 등) 제공
- 지원규모 : 6,500건 내외
- 지원금액 : 95.8억원

## 신청·접수

- 공고 : '24년 3월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예비창업자) 등
- 선정평가 : 선착순 지원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컨설팅 매칭 → 협약체결 → 컨설팅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추진과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042-363-7731~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무료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시행 공고
  - (사업 홈페이지) 소상공인컨설팅-사업공고-경영안정·기업가형 컨설팅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http://www.sbiz.or.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 접수 페이지는 '23년 3월 공고문 확인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중위소득 125% 기준 : (2인가구) 4,320,194원, (4인가구) 6,751,205원 (2023년 기준)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120개사 내외	2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우대사항 : 지역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로컬 브랜드) 등

#### 신청제외 대상

-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중소기업창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개인(최대 4천만원), 협업(최대 7천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인(지역성·성장가능성), 협업 및 브랜드(협업성, 성장가능성)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추진과 (044-204-7854, 7283)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042-363-772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추가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개인·협업팀) 모집공고

- (경로) K-스타트업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로컬크리에이터(개인)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가 다른 데 이런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상 해당 지역자원의 활용 소재지와 다르다면 해당 지역자원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주관기관)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로컬브랜드 창출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등이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4개팀 내외	8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 기업이 되어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팀을 구성
- 우대사항 : 지역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로컬 브랜드) 등

### 신청제외 대상

-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중소기업창업부 등 정부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 기타 중소기업창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기업간 연계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골목상권 BI 제작, 환경개선·디자인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8개팀 내외
- 지원금액 : 사업화자금 최대 2.5억원 내외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서류 등
- 선정평가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계획, 지속 가능성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7283)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042-363-772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추가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 (경로) K-스타트업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골목상권 창출형과 골목산업 창출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골목상권형은 지역로컬크리에이터간의 클러스터화(3개팀 이상 사업아이템 연계)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며, 골목산업형은 전후방 제조업과의 연결을 집중을 위해 참여하는 유형입니다.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150개	신규지정 없음
지원내용	노후시설 개선, 온라인 판로 지원	노후시설 개선, 온라인 판로 지원 폐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
  -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

####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 (중기업)은 신청불가
-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이 있는 업체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정업체에 ‘백년’ 브랜드를 부여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제공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재지정 4~5월(신규지정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biz.or.kr/hdst)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 재지정 공자·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 재지정 여부발표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7885)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042-363-7753~55, 100year@sema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 24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홈페이지)



## Q&A

**Q** 하나의 업체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 시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업승계의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신청제외 대상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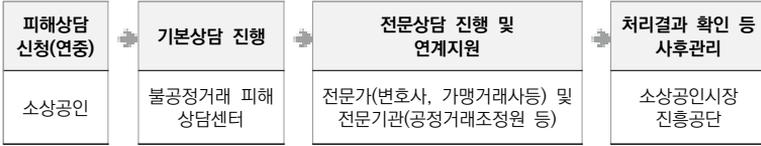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상담지원) 전국 77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 (전문가 상담) 전문가(변호사 등)의 피해구제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

### 신청·접수

- 전국 77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www.sbiz.or.kr/unfair/main.do>) 접수
- 전화상담 접수 (1599-0209)

● 추진절차 :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 042-363-77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협업추진주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 협업 추진주체
- 지원조건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 우대사항 : 청년, 여성 기업 등 정책적 고려대상은 가점우대

### 신청제외 대상

-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반조성, 공동사업, 사후관리
  - (기반조성)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통한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 협업체 초기 정착 및 성장모델 지원
  - (공동사업) 단계별 개발, 마케팅, 장비 등 맞춤형 협업사업 지원
  - (사후관리) 국·내외 온라인(상품개발, 상세페이지, 기획전 등) 및 오프라인 (바이어 상담회, 박람회 등) 판로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 지원규모 : 90개 내외
- 지원금액 : 11,30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1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서류→ 현장평가→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 내역 사업별 선정평가 방식은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수익 또는 고용창출, 조합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업 성과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지역상권과 : (044) 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 363-7922, 792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 공동사업 > 모집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일반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임



##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해 소공인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사업구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복합지원 센터 별도 사업운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복합지원 센터 사업 통합운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화지원센터)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지원제외 대상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특화지원센터)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협업을 통한 공동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
  - (복합지원센터)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 지원규모 : 39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2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신청·접수

-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시기 상이함)
  -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소공인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방법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 제출서류 : 각 지원센터별 제출서류 문의
- 선정평가 : 각 지원센터별 신청방법 문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0, 7918, 7911, 790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사업안내 참고

## 참고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공인 지원 사업 안내 참고



## Q&A

**Q** 지역별 소공인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공인지원센터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과정의 수강 대상은 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근로자, 예비소공인(창업예정자), 소공인 사업장 근로 희망자(취업예정자)입니다.

**Q**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 신청은 지자체만 가능한가요?

**A** 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며, 복합 지원센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공인은 각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집적지** : 일정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이 아래 기준 이상 모여있는 곳

-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집적지구**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항목	판로개척지원 바우처 단일항목	판로개척지원 바우처 항목 세분화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바우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항목을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최대 20백만원, 국비 80%)
- (판로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개최 및 입점, 해외 수출관련 지원, 유통상담회 등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내용
바우처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국내·외 홍보지원	· 국내·외 광고지원 (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등]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특화 해외특화	· 마케팅 비용, e커머스 입점비 및 판촉비, 미디어컨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물류비 등 그 외 수출에 필요한 지원
판로연계	공동기획전	· 온라인유통플랫폼 공동기획전 개최, 마케팅지원 등
	해외수출	· 해외유통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지원, 콘텐츠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 등
	유통상담회	· 국내·외 MD유통상담회 개최로 판로개척 지원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8, 7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바우처지원과 판로연계지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판로연계지원은 '23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사업 공모시 사업신청서 상 판로 연계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Q** 소공인 판로개척 바우처 항목 중 복수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바우처 판로지원항목 중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바우처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바우처 지원항목 중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지원

**판로연계지원** : 바우처 지원 외 판로연계를 희망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기획전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해외수출지원, 유통상담회 등 추가 판로연계지원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위주 작업공정에 IoT, AI등 디지털 기술접목으로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지원내용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S/W개발비 등 지원 (49백만원 이내, 국비 70%)
-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연구장비재료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임차비, 하드웨어 부품재료비
위탁개발비	KPI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정개발 등 용역비

## 〈 세부 지원유형 〉

지원유형	주요내용
설비자동화	수작업공정 개선, 제조·가공·물류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축
공정디지털화	공정의 자동화 연계,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클러스터형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20개사 및 이업종을 연계 집단지원 (상권 운영주체 자율사업으로 지원)하여,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을 통해 협업생태계 구축
작업안전유형	에너지절감·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강화 등 소공인 작업장내 스마트안전설비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안전경영·친환경 경영 등 제조업의 新이슈 대응을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 (신규) 소공인 규모화 경쟁 대응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강화 등 지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2, 78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1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기존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수혜 소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혜자 대상 신청의 제한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Q**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구입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도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협약기간 내 임대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IoT** : ‘사물인터넷’을 칭하며,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함

**KPI** : ‘핵심성과지표’를 말하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함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형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및 부도,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내용

- 소공인 작업장 개선비용 지원 (420만원 내·외, 국비 70%)

지원항목	주요내용
택1 안전환경 조성	(필수)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컨설팅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불침투성 바닥,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 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필수)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존 3가지 유형의 지원항목에서 안전조치,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지원항목 개편

## 신청·접수

- 중소기업처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사업공고 참고



## Q&A

Q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Q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제조 매출 신고액이 도소매업 신고액보다 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탄소중립** :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상인·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 추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	좌동
지원내용	(필수과제) 거버넌스 아카이빙, 전략수립 (선택과제) 크리에이터 발굴, 리빙랩 등	좌동
신청접수	(공고일) '23.2.24	(공고일) '24.1월 예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골목형상점가 등 점포수 30개 이상인 예비자율상권의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로컬크리에이터, 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등)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우대사항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창업진흥원 소관) 참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상권활성화사업(상권르네상스) 진행중인 구역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필수과제(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수립)
  - 선택과제(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동네상권 리빙랩 등)
- 지원규모 : 총 10개소
- 지원금액 : 총 2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월(예정)
- 신청방법 : 전자문서 접수(온나라시스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입지의 적정성,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의 협업성, 동네상권발전소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추진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계획 승인	사업 추진
중기부	▶ 중기부, 공단	▶ 중기부, 공단, 지자체, 주관기관 등	▶ 중기부, 공단	▶ 주관기관
1월	2월	3월	3월	3월~12월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68)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60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지원」모집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로컬크리에이터 현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했던 사업으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내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k-startup.go.kr)

**Q** 사업 신청주체는 누구인가요?

**A**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는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초지자체(시·군·구)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용어 설명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 :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 주관기관(로컬크리에이터 등), 공동참여기관(지자체, 상인·주민 협의체)로 조직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조건	선정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조건 변경 내용 기재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40%미만인 곳
- ▶ '24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동일 인력 중복 불가)
- ▶ 상권활성화사업(舊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선정구역 내 개별시장 포함)
-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패키지 지원 조건)

구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36백만원 이하	9백만원 이상

- 패키지 활용 범위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사업 지원 패키지	공동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li> <li>▶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li> <li>▶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li> <li>▶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li> <li>▶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li> </ul>
	온라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점) 온라인 쇼핑몰·앱 입점 지원 - 제품등록비, 상세페이지 디자인비 등 입점 지원(자체 쇼핑몰, 앱 구축불가)</li> <li>▶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li> <li>▶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li> </ul>

구분	분야	패키지 활용 범위
		*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상인 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 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 지원 패키지	시장 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 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각 분야별 사용 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별도 안내

## 신청·접수

### ● 사업부문별 상이

지원분야	사업부문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국비</th> <th>지방비·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매칭비율</td> <td>36백만원 이하</td> <td>9백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구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매칭비율	36백만원 이하	9백만원 이상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35, 7637~9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통통'을 검색하시고 시장경영패키지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기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 (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전기안전 취약등급(D·E)인 개별점포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전기안전 취약등급(D·E)인 개별점포의 경우 신청조건 없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
  -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
- 우대사항
  -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 등급인 경우 지원조건 완화
  -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 최근 3년 이내 시장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사업공고 별 공통 우대사항

#### 신청제외 대상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
  - (1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 (2순위)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 (3순위) 기타(LED전등기구, 화재예방시설 등)
-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곳 내외
- 지원금액 : 개별점포 국비 기준 125만원 이내 (시장규모 당 최대 5억원 이내)

### 신청·접수

- 공고 : '23년 9월
-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 선정평가
  - ▶ 현장평가(해당 점포의 노후도, 접지여부, 분전반 상태 등)
    -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7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공용구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사업은 개별점포에 한 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개별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A**

단체의 성격을 가진 상인회 등에서 신청하여주시면 됩니다.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0% 이상인 곳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우대사항
  -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소방안전등급 결과 D·E 등급인 경우 우대
  -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 화재공제 및 화재보험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를 반영(동의를 구간별 가점 부여)
  -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사업공고 별 공통 우대사항

### 신청제외 대상

- ▶ 영업점포의 30% 미만이 신청한 시장
- ▶ 민간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 ▶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 된 후 포기한 지 3년 미만인 곳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규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6,800개 점포 내외
  - 지원금액 : 점포당 80만원 한도(국비 56만원, 지방비 24만원)

### 신청·접수

- 공고 : '23년 9월
- 신청방법 : 상인회가 관할 기초지자체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공고문 내 서류 작성
- 선정평가

- ▶ 현장평가(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 \* 지방청, 시도담당자, 전기안전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 서류평가(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 \* 전기안전전문가 등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추진절차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8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공용공간 CCTV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신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한 화재감시용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Q** 점포 별 지원인데, 점포 당 지원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A** 점포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되는 감지기 등의 개수는 변동됩니다.

**Q** 선정 후 폐업 혹은 추가 설치를 원하는 점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점포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시 상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

**B공제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후 사고발생시 보상 받는 금액(보험금)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 지원대상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개별점포

#### 신청제외 대상

- ▶ 전통시장 구획 외 점포
-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점포
- ▶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원내용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료 납입일)로부터 1,2,3년 선택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 3천만원, 동산 3천만원)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 휴업일당 특약
- 납입방법 : 일시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가입기간 1년)〉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B급 101,500원	132,000원 203,000원	198,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임차자 배상책임 - 가입시 건물요율의 10% 할인 적용 음식물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1년다원)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화재벌금 특약 - 추가공제료 :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 보상(형법170조) 1.5천만원 / (형법171조)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추가공제료 :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1년다원)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점포휴업일당 특약 - 추가공제료 : 2,400원 - 1사고당 30일 한도(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 - 점포휴업 일당(3일 초과)=복구기간 내 휴업일수X1일당 가입금액(5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는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 신청·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1 ~ 7614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http://www.fma.semas.or.kr)



## Q&A

**Q**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송부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Q** 화재공제 가입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입신청서와 건물구조급수를 A급으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용어 설명

**공제료**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시 상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

**B공제금**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후 사고발생시 보상 받는 금액(보험금)



##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
  - 지역·규모·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 상설점포 없이 노점으로만 구성 된 시장
- ▶ 영업점포 수가 10개 이하인 시장

### 지원내용

-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 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535곳 내외 시장)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비고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li> <li>(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li> </ul>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li> <li>(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li> </ul>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li> <li>*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li> </ul>	

### 신청·접수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지원실 : 042-363-7612



## Q&A

**Q** 화재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19년2월15일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점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육성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신청자격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모두 충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신청제외 대상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22년도 선정('23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 ▶ '15년 ~ '23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 총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 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 9. 6.(수) ~ 10. 5.(목)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2~5 (이메일) culture@semas.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1)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li> <li>○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li> <li>○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li> <li>○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li> <li>○ 상인회가 사업주체로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되, 공단의 별도 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를 지원</li> <li>○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li> </ul>
신청접수	전통시장 사업관리 플랫폼을 통한 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li> <li>②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li> <li>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인회 가입률 60% 이상</li> <li>② 상인회비 납부율 60% 이상</li> <li>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50%이상 (모두 충족)</li> </ul>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원조건 :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신청제외 대상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등을 지원받은 경우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 관리) 수행 전략 중심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 기반조성(H/W) 지원
  -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
- 지원규모 : 총 21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 당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 9. 6.(수) ~ 10. 5.(목)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2~5 (이메일) culture@semas.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사업 1개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형, 디지털시장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원 이력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장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3년도 문화관광형사업 2년차 시장입니다. '24년도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합니다. 2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장은 '25년에 '26년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장은 '23년에 '24년도 디지털시장 사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공고 지원	선정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사업 추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전통시장 사업관리 플랫폼을 통한 접수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신청자격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모두 충족)
지원조건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1년차) 국비 50%, 지방비 50% - (2년차)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자부담 비용 지자체 대납 가능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1,2년차) 국비 50%, 지방비 50% * 2년차 자부담 폐지
운영조직	사업 최종 선정 후 협약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 운영주체 '협동조합' 미설립 시 사업 자동 취소 등 패널티 부여	1년차 사업종료시까지 운영조직(협동조합) 미설립, 온라인 입점 추진 미흡 시 패널티 부여 예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조건 :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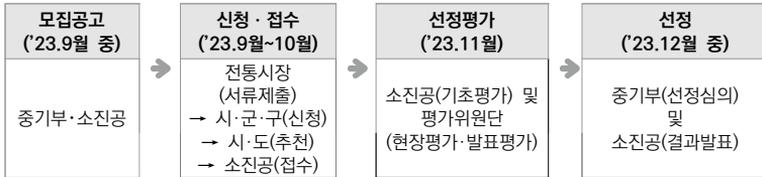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 접수 마감일('23.10.5) 기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
-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4년 지원예정 포함)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관련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사업 운영인력, 배송 픽업 인력 등 인적 기반과 공동 배송 시설 및 장비 임차 등 배송 인프라 구축 위한 물적 기반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판촉 프로모션
  - \*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 오프라인 행사(동행세일 등)는 불가
- 지원규모 : 총 34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 당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 9. 6.(수) ~ 10. 5.(목)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기초→현장→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 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62~4 (이메일) digital2022@semas.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 받은 적 없어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력이 없는 시장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A** 참여시장이며, 실제 업무는 참여시장 상인회가 추진합니다. 단, 시장별로 운영인력 1명을 채용하여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배송형 동시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시지원이 가능하며 2년간 최대 4억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청년몰 활성화지원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既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신청자격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①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② 청년몰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③ 청년몰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신청방법	(청년몰 활성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	(청년몰 활성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접수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청년몰 활성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및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 ① 청년몰 내 영업 중인 청년상인 점포 비율 60% 이상
- ② 청년몰 내 영업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③ 청년몰 내 영업점포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이상

- (청년상인도약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 상인\*

\* 전통시장법은 청년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만 39세에 창업할 경우 1년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사항(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우대사항(개별)

- 청년몰 입점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곳
- \* 점수마감일 기준 법인 설립 및 등기 완료한 곳
-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이상 임대료 동결+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

● 신청제외 대상

**지원제외(청년몰)**

-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최근 1년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지원제외(청년상인)

- ▶ 미성년자
- ▶ '15~'22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 ▶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 지원
- 지원규모
  - (청년몰 활성화) 총 5곳 내외
  - (청년상인 도약지원) 총 200명 내외
- 지원금액
  - (청년몰 활성화) 몰 당 최대 4억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 1명 당 최대 1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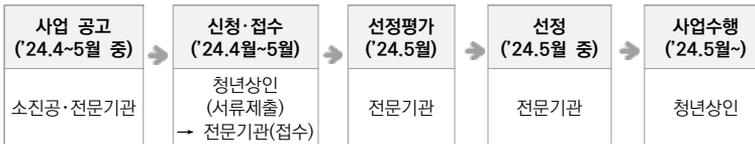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청년몰 활성화) '23. 9. 6.(수) ~ 10. 5.(목)
  - (청년상인 도약지원) '24. 4~5월 중

- 신청방법
  - (청년몰 활성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청년상인 도약지원) 전문기관 통한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 선정평가 : 단계별 평가 방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청년몰 활성화) 청년몰 운영성과, 발전가능성, 지자체·상인회의 지원노력 및 향후 계획, 청년상인 상생지수(협동, 단결력) 등
  - (청년상인 도약지원) 아이템 전문성, 성장가능성, 영업실적, 파급효과 등
- 추진절차
  - (청년몰 활성화)



- (청년상인도약지원)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전화) 042-363-7676~7 (이메일) ymall@semas.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1) 중소기업창업부 홈페이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 Q**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10백만원(자부담 10%)한도 내에서 전문가 컨설팅,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 Q** 지원자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 되나요?
- A** 아니오, 사업단을 통해 집행되거나 용역수행업체에 지급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전국 19.6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상품권구매처

- 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수협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카드형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통합 어플리케이션
  - \* 기업구매는 <https://biz.e-onnurigiftcard.com>에서 구매가능
- 모바일상품권 : 온누리페이, 비플페이 앱(APP)
  - \* 기업구매는 <http://onnuripay-b2b.com>에서 구매가능

### 상품권구매한도

- 개인구매
  - 지류상품권 : 100만원(5%할인)
  - 카드형상품권 : 150만원(10%할인)
  - 모바일상품권 : 150만원(10%할인)

- 기업구매(구매한도없음)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카드형상품권 : 10%할인
  - 모바일상품권 : 10%할인
- \* 개인·기업 할인구매는 예산소진시까지 구매가능

### 상품권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및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카드형·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라인 사용 가능
    - 가맹점 및 온라인 사용처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
- \* <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 상품권종류

- 지류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카드형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발행규모

- '24년 약 4조원 발행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0번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1533-1728
- 온누리페이 고객센터(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 1670-136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실 : 042-363-7641~3, 7651~7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7822



## Q&A

Q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A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여 상품권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전용 상품권입니다.

Q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은 무엇인가요?

A

- ①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고객이 기존 보유한 카드를 등록해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삼성페이, 카드사 앱결제 가능),
- ② 상품권 할인혜택과 카드사용실적 반영 가능,
- ③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소득공제 40% 적용

## 용어 설명

**온라인가맹** : 온라인가맹은 [ongift.or.kr](http://ongift.or.kr)으로 기존 오프라인 가맹신청(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가맹신청 가능한 방법을 말함



## 일반경영안정자금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업력무관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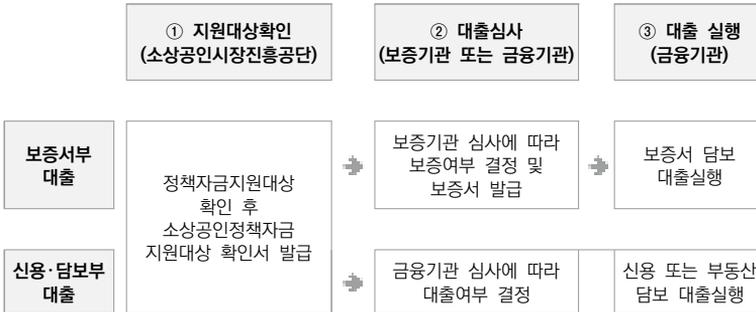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24년 기준 12,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다른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특정 보증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지원 대상 중첩을 피하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대출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자금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경영회복자금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연계자금 : 2%</li> <li>- 재도전특별자금 : 3%</li> <li>-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연계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li> <li>- 재도전특별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 + 1.6%p</li> <li>- 경영회복자금(現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 + 1.6%p</li> </ul>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금리
긴급경영안정 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2.0%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1억원	2.0%	7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 자금	업력 3년미만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 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기준금리 + 1.6%p	5년 (2년 거치)
경영회복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정책자금기준금리 + 1.6%p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7%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원	연 4.6%(잠정)	10년 이내

- 지원방법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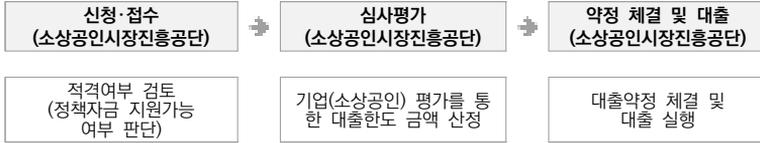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 대리대출



### ● 대환대출



## 지원규모

- 2024년 기준 18,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재외국인, 재외국민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이면 가능합니다.

- 재외국인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15.1.22부터 발급)

## 용어 설명

**대환대출**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 및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뿌리산업법 시행령」에서 '지능화 공정산업'으로 분류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대리대출 취급 금융기관(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은행, 산업,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http://ols.semas.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http://ols.semas.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2024년 기준 5,0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나요?

**A**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매월 3~5일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직접대출 일체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심사역의 사업장 방문 후 사업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고정금리** : 대출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변동금리** : 일정주기(3개월 등)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동



## 혁신성장촉진자금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li> <li>○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li> <li>- 백년가계 : '백년가계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계'로 '백년가계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li> <li>-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형) 수출 소상공인, 2년연속 매출 10%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li> <li>○ (혁신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계) 등 혁신형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li> </ul>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 0.2%p	정책자금기준금리 + 0.4%p

### 지원대상

- (성장형) 수출 소상공인, 2년연속 매출 10%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혁신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계)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성장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혁신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 5년 / 시설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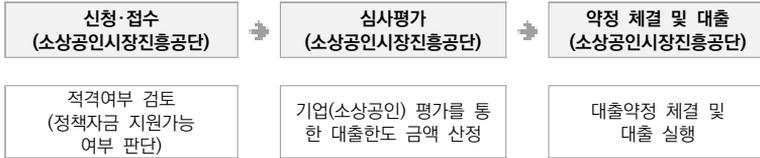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http://ols.semas.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http://ols.semas.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지원규모

- 2024년 기준 2,6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설비 및 장비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 용어 설명

**기준금리** : 변동금리대출의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가산금리** : 대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 0.2%p	정책자금기준금리 + 0.4%p

### 지원대상

-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하는 경우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대출기간 :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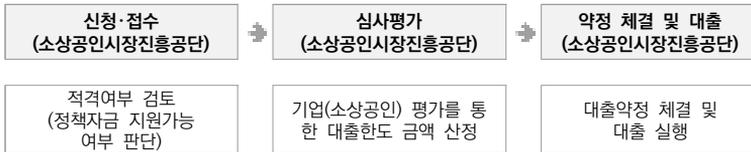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신청기간 별도 공지
  -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접수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청 안내자료 내 공지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신청인의 준비서류 최소화하여 운영 중

## 처리절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을 통해 직접대출 지원

## 지원규모

- 2024년 기준 400억원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정책자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A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 용어 설명

**거치기간** : 대출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후 대출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한도	일반형 5백만원 미래형(로봇기술) 15백만원	일반형 5백만원 미래형(로봇기술) 10백만원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상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사업
- (세금채납) 국세·지방세 채납 중인 경우
- (대리신청)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기업(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한 경우
- (기한 내 완료불가) 공단에서 요청한 기간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에너지절감 기술, 주방자동화 기술(튀김로봇 등),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지원규모 : 2024년 기준, 5,500개 점포 내외 (292.4억원)
  - 국비 70~80%, 최대 지원금액 500~1,000만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공고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sbiz.or.kr/smst/main.do](http://sbiz.or.kr/smst/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 (서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6, 78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 042-363-7812, 7809, 7805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문기관 1600-6185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경로) 소상공인스마트상점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 Q&A

**Q**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스마트기술은 무엇이 있나요?

**A** 친숙한 기술로는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사이니지, 키오스크,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스마트상점 홈페이지([sbiz.or.kr/smst/main.do](http://sbiz.or.kr/smst/main.do))에서 다양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오더) 모바일 등을 이용한 주문예약간편결제	(스마트미러)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	
		
(사이니지) 메뉴 제공, 신제품 홍보, 이벤트 안내	(키오스크) 주문결제 등이 가능한 무인 주문기	(서빙로봇)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 실내에서 서빙 기능 제공
		

## 용어 설명

**스마트 기술** :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원가절감, 노동강도 저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에너지절감 기술, 주방자동화 기술 등을 말함.



## 경험형 스마트마켓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체험과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형태의 상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선정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선정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별 접수·선정
지원한도	국비 2,000만원 한도 (스마트요소 700만원+ 경험요소 1,300만원)	국비 1,800만원 한도 (스마트요소 600만원+ 경험요소 1,200만원)

### 지원대상

- 경험요소 및 스마트요소 구현이 가능한 소상공인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며, 업종 (도소매업) 영위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사업
- (세금채납) 국세·지방세 채납 중인 경우
- (대리신청)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한 경우
- (기한 내 완료불가) 공단에서 요청한 기간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지원내용

- (1)경험요소(온라인 매장과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만의 이색 체험 또는 색다른 경험)와 (2)스마트요소(경험요소 구현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
  - 국비 65%, 최대 지원금액 1,800만원(경험요소 1,200만원, 스마트 요소 600만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접수공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 (서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6, 78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 042-363-7811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문기관 1600-6185



## Q&A

Q

'경험형요소와 스마트요소'가 결합된 상점의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A

단순 판매형 옷가게에서 벗어나 방문자 얼굴 기반 AI가 성별/나이 등 분석하여 고객에게 코디 추천, 소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경험을 통해 구매하는 상점 등의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규모	소상공인 7만명	소상공인 8.1만명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우대사항 : ①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우수 소상공인, ② 온라인 진출 초기 소상공인, ③ 정부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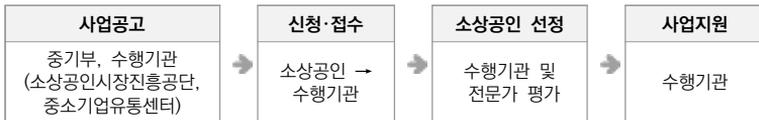
-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체납)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불공정 행위)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 (제외품목)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교육과 상품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상품 등록부터 홍보·판매까지 지원
- (채널 진출지원) TV홈쇼핑·T커머스, 미디어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O2O 플랫폼 활용을 지원
-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제작·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소상공인에게 대여해주는 등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운영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상품 정보, 소상공인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별도 공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세부사업별 별도 공지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284)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디지털혁신팀  
(02-6678-9353, 9361, 9372, 9454, 9462, 9475, 9865, 987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042-363-7835, 7834, 7824)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1) [상세 보기](#) 

- (홈페이지2) [상세 보기](#) 



## Q&A

**Q** 사업 참여 시 선정 우대 조건은?

**A**

- (우수 소상공인) 백년가게, 브랜드K, 로컬크리에이터
- (온라인 초기 소상공인) 자사물 미보유하고 통신판매사업자 미신고
- (교육 수료)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e-러닝 교육 이수자
- (가치샵시다)상품 판매를 위한 입점업체

Q

지원내용 및 규모는?

A

•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역량강화·채널진출·기반조성·패키지 지원 등 15개내외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연간 소상공인 8.1만명 지원 예정

### 용어 설명

**O2O서비스** : O2O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을 의미,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서비스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핑을 하는 '라이브 방송' 서비스

**인플루언서** : SNS 또는 인터넷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예정)자의 업종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예정)자의 업종과 유사한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 지원 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가 부동산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영개선 및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사업별 공고 참고

### 신청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자
- ▶ 임대사업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①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 후 교육 및 경영개선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금 만큼 자부담) 연계지원
  - \* 매출액 감소, 저신용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등 소재 소상공인
  - \*\*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1 경영위기 문제진단
  - \*\*\*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경영교육·컨설팅 및 개선자금 지원
- ② (윈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평)당 13만원/ 최대 총 250만원)
  -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채무조정)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 ③ (재취업지원) 단계별 취업교육, 일자리정보 제공, 전직장려수당 (최대 1백만원) 지급
  - \* (취업교육)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기초-심화-특화)
  - \* (일자리정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기업-인력 맞춤 매칭
  - \* (전직장려수당) 구직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총 100만원
- ④ (재창업지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재창업 교육, 멘토링,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 만큼 자부담)을 통한 일반·업종전환\* 및 미래 성장업종\*\* 중심 재창업 지원
  - \* 생계형 업종 재창업 또는 현재 영위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
  - \*\* 지속성장 또는 비과밀 업종으로 재창업 신청 시 가점 및 사업화 자금 우대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12월(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14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4년 지원시책」 참조

## 참고사항

- 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경로) 희망리턴패키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통합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전직장려수당은 구직활동 및 취업 여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직활동 시 40만원(1차) 지원, 취업 완료 시 60만원(2차)을 나누어 지급하며, 자세한 지원 요건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참고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사업공고 참고

### 신청제외 대상

- ▶ 비영리사업자
- ▶ 그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지원
- 지원규모 : 4만 명
- 지원금액 : 15,008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12월(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http://go.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소상공인 여부 등 사업 공고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http://www.semas.or.kr)) : 042-363-7711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http://go.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http://www.mss.go.kr))「2024년 지원시책」 참조

## 참고사항

-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  
-(경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신청하는 건가요?

**A** 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원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http://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제출로,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열람가능)

**Q**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나요?

**A**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상권정보시스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업종별로 입지평가·수익분석·경쟁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원대상

- 소국민(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도상 위치를 기반으로 매출, 인구, 소득·소비 등 창업·경영관련 다양한 상권정보 제공
  - ① 간단분석 : 행정동 및 업종에 대한 추정매출, 업소 수, 유동인구 등
  - ② 상권분석 : 선택영역에 대한 요약, 업종·매출·인구분석, 지역현황, 변화 추이에 대한 시계열 정보
  - ③ 입지업종 분석
    - 입지현황 : 반경 200m내 입지들의 업소 수, 매출 건수, 증감률 정보
    - 매출예측 : 15개 주요 업종에 대해 유사 입지 기반 매출 예측 정보
    - 입지평가 : 특정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예상 매출액과 평균을 종합평가
    - 업종추천 : 업종·지역별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 ④ 수익분석 : 목표매출 및 고객 수, 유사업자·업종의 수익분석
- ⑤ 경쟁분석 :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 평가
  - \* 안전(초록)-주의(노랑)-위험(주황)-고위험(빨강)
- ⑥ 창업기상도 : 5개 업종에 대해 유동인구·매출액을 기반으로 창업 위험도 예측정보 제공
- ⑦ 점포이력 : 관심 지역 및 입지에 대한 업소 이력(개·폐업 정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국세청 사업자번호 기반 상가DB 개편
-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정에 따른 상가 DB 개편
  - \* 업종개편 (기준) 447 → 247개 서비스 업종
- ▶ 주요상권 서비스 신설
  - \* 행정동 별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요상권에 대한 상권정보도 함께 제공
- ▶ 주요상권 영역 재정비 및 재정립
  - \*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활용하여 기존 주요상권 영역(1,166개) 대비 신규 주요상권 영역 도출 완료, 데이터 재집계 후 서비스 예정 (~24년 상반기)
- ▶ 상권 랭킹서비스 신설
  -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분석 이력(로그)를 활용한 지역·업종별 관심상권 순위 제공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헬프 데스크 : 1644-5302

### 이용방법

- (PC·모바일)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sbiz.or.kr>)
  - 향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후 통합 하여 서비스 예정



## Q&A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수급처와 갱신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기반 데이터는 15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20여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다른데 최소 월 단위에서 최대 반기별로 갱신되며,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빅데이터 플랫폼은 언제부터 서비스 할 예정인가요?

**A** 현행 상권정보시스템은 유지하며,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24년도 시범 서비스 운영 후 정식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2024년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소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19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8, 7914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0
	소상공인지원(응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203
	희망리턴패키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1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07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6, 7727, 7737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2024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2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2024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2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2024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2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2024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6, 7727, 223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O2O 플랫폼 진출 지원)	O2O플랫폼 진출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역량강화)	소상공인 디지털특성화대학 운영기관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24	
3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1-2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11, 790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O2O 플랫폼 진출 지원)	O2O플랫폼 진출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권역별 전문기관	1600-6185
	경험형 스마트마켓	2024년 경험형 스마트마켓 소상공인 모집공고	권역별 전문기관	1600-6185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5월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728
	소상공인 민관협업교육	「소상공인 민·관 협업교육」 온라인셀러 양성과정 (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참여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728
	클린제조환경조성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하반기 모집공고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920
	청년상인 도약지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676-7
6월	소상공인 민관협업교육	「소상공인 민·관 협업교육」 온라인셀러 양성과정 (네이버 '숏클럽화법스쿨') 참여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728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757
8월	소상공인 민관협업교육	「소상공인 민·관 협업교육」 온라인셀러 양성과정(네이버 '숏클럽새싹스쿨') 참여 소상공인 모집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728
9월	특성화시장육성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 광형)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672-5
	특성화시장육성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 기반조성)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672-5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662-4
	청년몰 활성화 사업	청년몰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676-7
12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신규 참여 대학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042-363-7728

## 제 2 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회계구분에 따라 6개 내역사업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li> <li>- (소특)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li> </ul> </li> <li>■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li> <li>*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80%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일반/소특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 3개 내역사업으로 지원</li> <li>- (일반)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li> <li>* 일반회계 내 소부장 분야 추가 지원(소특흡수)</li> <li>■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li> </ul>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전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디딤돌, 전략형</li> <li>■ (지원규모) 1,758개 기업, 1,954억원</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돌 과제는 지역소재기업 및 지역특화산업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을 통해 지원</li> <li>- 전략형 과제는 초격차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디딤돌</li> <li>■ (지원규모) 1,765개 기업, 1,284억원</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돌 과제내 '23년 기준 전략형 지원 분야 및 소부장 분야 신설하여 지원</li> <li>- 전략형 과제 폐지</li> </ul> </li> </ul>
	T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720개 기업, 1,014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900개 기업, 1,201억원</li> </ul>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65%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li> </ul>

구분	'23년도	'24년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기준연봉의 50% 지원 단위: 만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기준연봉</th> <th colspan="3">정부지원금</th> </tr> <tr> <th></th>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r> </thead> <tbody> <tr> <td>학사</td> <td>2,700</td> <td>3,000</td> <td>3,300</td> <td>1,350</td> <td>1,500</td> <td>1,650</td> </tr> <tr> <td>석사</td> <td>3,600</td> <td>4,000</td> <td>4,400</td> <td>1,800</td> <td>2,000</td> <td>2,200</td> </tr> <tr> <td>박사</td> <td>4,500</td> <td>5,000</td> <td>5,500</td> <td>2,250</td> <td>2,500</td> <td>2,750</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사	2,700	3,000	3,300	1,350	1,500	1,650	석사	3,600	4,000	4,400	1,800	2,000	2,200	박사	4,500	5,000	5,500	2,250	2,500	2,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전년 대비 기준연봉 50만원 상향 단위: 만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기준연봉</th> <th colspan="3">정부지원금</th> </tr> <tr> <th></th>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h>1년차</th> <th>2년차</th> <th>3년차</th> </tr> </thead> <tbody> <tr> <td>학사</td> <td>3,200</td> <td>3,500</td> <td>3,800</td> <td>1,600</td> <td>1,750</td> <td>1,900</td> </tr> <tr> <td>석사</td> <td>4,100</td> <td>4,500</td> <td>4,900</td> <td>2,050</td> <td>2,250</td> <td>2,450</td> </tr> <tr> <td>박사</td> <td>5,000</td> <td>5,500</td> <td>6,000</td> <td>2,500</td> <td>2,750</td> <td>3,000</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사	3,200	3,500	3,800	1,600	1,750	1,900	석사	4,100	4,500	4,900	2,050	2,250	2,450	박사	5,000	5,500	6,000	2,500	2,750	3,000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사	2,700	3,000	3,300	1,350	1,500	1,650																																																																		
석사	3,600	4,000	4,400	1,800	2,000	2,200																																																																		
박사	4,500	5,000	5,500	2,250	2,500	2,750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사	3,200	3,500	3,800	1,600	1,750	1,900																																																																		
석사	4,100	4,500	4,900	2,050	2,250	2,450																																																																		
박사	5,000	5,500	6,000	2,500	2,75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항목)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6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항목) 23년 가점 항목에 '중소기업R&amp;D 우수성과 대표기업' 추가</li> </ul>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항목)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6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항목) 23년 가점 항목에 '중소기업R&amp;D 우수성과 대표기업' 추가</li> </ul>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편내용) 연구인력혁신센터 선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공급</li> <li>* 기존 연구인력 양성사업 통합·개편</li> </ul>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 중 선도기술에 해당하는 '첨단제조', '유연생산' 분야 지원</li> <li>■ (지원예산) 330.6억원</li> <li>■ (지원규모) 49개 과제</li> <li>※ '22년 시행계획 공고 기준('23년 공고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 중 중소제조기업의 단위공정별 스마트화를 위한 '현장직용' 분야 지원</li> <li>■ (지원예산) 119.3억원</li> <li>■ (지원규모) 195개 과제</li> </ul>																																																																						
선도형 제조혁신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9개 내역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일반형, 탄소중립형, 부처협업형, 투자연계형, 공급망연계형, 상생형(기초), 상생형(고도화1), K-스마트등대, 디지털클러스터</li> </ul> </li> <li>■ (지원규모) 801개 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7개 내역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형공장, 정부일반형, 탄소중립형, 부처협업형, 상생형(고도화1), K-스마트등대, 디지털클러스터</li> </ul> </li> <li>* (신설) 자율형공장/ (폐지) 투자연계형, 공급망연계형, 상생형(기초)</li> <li>■ (지원규모) 888개 기업 지원</li> </ul>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1,250개 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1,500개 기업 지원</li> </ul>																																																																						
스마트공장 AS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1,000개 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350개 기업 지원</li> </ul>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li> <li>■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등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및 지역 DX 희망기업</li> <li>■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대상 사업기획 및 구축지도 지원</li> </ul>																																																																						

구분	'23년도	'24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중소 제조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li> </ul>
제조데이터 상품구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 연 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 수시모집('24.2 이후 예정)</li> </ul>



## R&D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격요건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세부사업 설명 확인요망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또는 <http://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또는 과제접수  
→ 과제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별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R&D역량 및 연구윤리
  - 파급효과 : R&D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 자금집행계획 : 연구개발 집행계획의 적정성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문의처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1877-2041)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1357)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1357)
  - 사업문의 (☎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 사업별 문의처 세부공고 및 설명자료 참조



## Q&A

**Q** 국가 R&D를 처음 도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신청가능  
한가요?

**A** R&D를 처음하는 경우 대학, 연구기관과 같이 R&D를 수행하는  
산학연Collabo R&D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예비연구 후 2단계  
사업화 R&D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Q** 2023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는데 R&D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전용R&D인 창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내 디딤돌, TIPS로 나누어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이 다르니 세부공고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연구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책임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내용	회계구분에 따라 6개 내역사업으로 구분 * (일반)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특)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일반/소특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지원 * (일반)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 일반회계 내 소부장 분야 추가 지원(소특출수)
지원 조건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80%적용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수출지향형 : 매출액 50~1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직·간접 수출액 100~500만 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 분야 기술 및 민간투자 실적(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 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전략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65%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75%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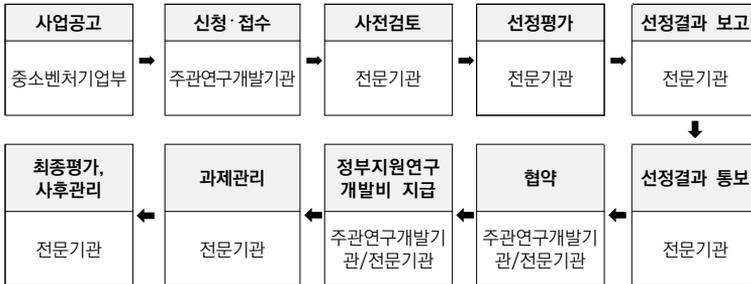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혁신역량 단계별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422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 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920억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중점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459억원)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기술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1,062개 과제 내외
- 지원금액 : 1,801억원(신규)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명시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66  
(이메일) sandoll@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전화) 044-300-0535, 0541~0547 (이메일) 311@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경로) IRIS-사업정보-사업공고-마감-‘기술혁신개발사업’ 검색

\* 세부 지원 내용이 세부사업별 상이하므로 세부사업별 공고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지원 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3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전략분야(품목)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원과제가 해당 사업의 전략분야(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고된 품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전략분야와 과제의 적합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이 평가합니다.



## 창업성장기술개발(R&D)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내용	(내역사업) 디딤돌, 전략형, TIPS (지원규모) 1,758개 기업, 1,954억원 ▶ 디딤돌 과제는 지역소재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을 통해 지원 ▶ 전략형 과제는 초격차 기술, 실험실 창업 기업,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	(내역사업) 디딤돌, TIPS (지원규모) 1,765개 기업, 1,284억원 ▶ 디딤돌 과제내 '23년 기준 전략형 지원 분야 및 소부장 분야 신설하여 지원 ▶ 전략형 과제 폐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7년이하인 창업기업
- 우대사항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 \* 세부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기준은 공고문 참조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1~3년, 1.2~15억원 지원
  - 디딤돌(1,284억원) : 중기부 R&D 첫 수행기업 등 다양한 초기 창업기업의 R&D 수요 충족 및 균형 성장 지원
  - TIPS(1,201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TIPS	일반형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특화형 (딥테크 팀스)	최대 3년, 1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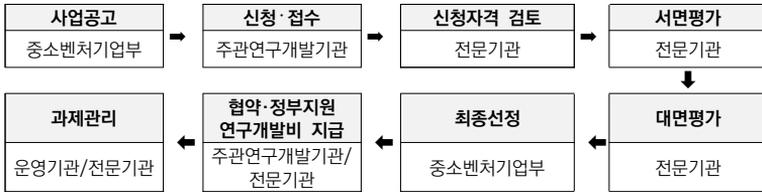
- 지원규모 : 총 2,665개 과제 내외 (신규)
  - (디딤돌) 1,765개 (TIPS) 900개
- 지원금액 : 2,485억원(디딤돌 : 1,284억원 , TIPS : 1,201억원) (신규)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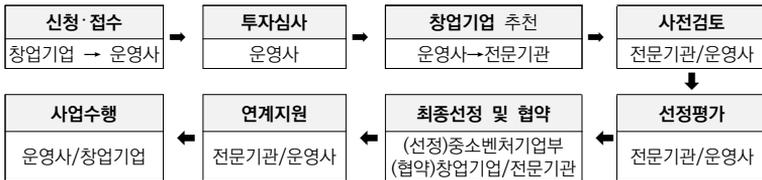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1월, (하반기) 3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창업기업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단계별 평가 방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① 디딤돌(세부추진절차는 각 공고에서 확인)



② TIPS



- \* 통합평가를 미신정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평가를 통해 선발
-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진행 가능하며, 운영기관으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67  
(이메일) neoyume@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디딤돌) 스타트업사업실  
(전화)044-300-0555, (이메일) 331@tipa.or.kr  
(TIPS) 민간투자협력실  
(전화) 02-2280-0421, (이메일) kyj@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경로)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정보  
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b>상세 보기</b>
------------------


  - 공고명 : 2023년 틱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수정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  
공지 → 사업공고  
- (홈페이지) 

<b>상세 보기</b>
------------------





## Q&A

**Q** 창업성장 전략형을 지원받았습니다. 디딤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창업성장 전략형사업은 디딤돌사업보다 상위단계의 사업이므로 전략형 수행기업은 졸업제 역방향지원제외에 해당이 되어 디딤돌 사업을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Q**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A**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므로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이 월 100% 이하의 범위에서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내의 기업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해당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 전문 지원 기관으로 과제 발굴, 접수, 평가, 운영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산학연Collabo R&D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R&D를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조건 : 단계별 지원(1단계 연구과제 완료 후 2단계 수행)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	지원 방식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 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2.6억원	75% 이내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75% 이내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2.6억원	75% 이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3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유의사항 : 1단계(예비연구)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 지원규모 : 총 305개 과제 내외(신규 47개, 계속 258개)
- 지원금액 : 271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 선정평가
  - 1단계(예비연구) : 서면평가→요건검토→대면평가→이의신청 평가  
→선정·협약
  - 2단계(사업화R&D) :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73  
(이메일) bpmt94@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전화) 044-300-0846  
(이메일) jaeyun@tipa.or.kr
- 산학연 매칭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전화) 051-606-7416  
(이메일) 2618@kibo.or.kr
  - 한국산학연합회 연구기반팀 (전화) 044-410-3322  
(이메일) mun@auri.go.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  
사업공지-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1단계(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를 종료한 후, 별도로 2단계(사업화 R&D)의 선정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과제만 2단계(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예비연구) 신청 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2단계(사업화R&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제조 3대 핵심분야 공급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3대 핵심분야 및 지원내용 〉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 연도	지원 한도	'24년 신규과제 지원 여부
첨단 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최대 36억 이내	-
유연 생산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 기술 확보			-
현장 적용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적용기술 개발	'24~'26	최대 4.5억 이내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 기관(공급기업) 주관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지원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한도 및 규모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현장적용	최대 3년('24~'26), 4.5억원 이내	195개	75% 이내	품목지정

- 지원금액 : 119.3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 공장등록증명서(수요기업), 정보이용동의서 및 재무재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면평가→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 및 기술 품목서 상에서 제시한 기술내용·분야와의 부합성, 현장수요 반영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디지털혁신과 : (전화) 044-204-725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3, 0976, 0977 (이메일) smartrnd@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2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24년 신규 모집분야는 전년도('22년) 공고와 기술품목 및 분야가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24년 공고 확인 필수



## Q&A

**Q**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에 등록되어야만 참여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 사업에 주도로 참여하여 지정 품목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반드시 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수요기업은 반드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동 사업은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현장 내 실증까지 추진이 필요하므로 제조현장을 보유한 수요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Q** 기술품목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술품목서는 세부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2월 중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 용어 설명

**품목지정** : 제시된 기술품목의 품목개념, 지원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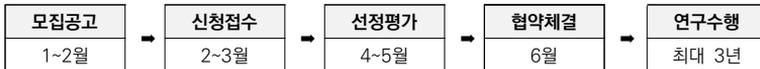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②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50% 이상 선정, 여성 연구인력을 30% 이상 선정,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하고 졸업한 연구인력,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 ▶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신규 165명, 계속 389명
- 지원금액 : 총 12,462백만원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화) 044-204-7792  
(이메일) jhwangnoon@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전화) 044-300-0852, 0854 (이메일) wbslim@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자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50% 이상 선정,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가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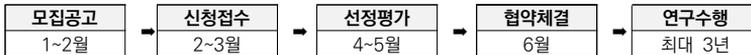
- ▶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지원
  - 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은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신규 102명, 계속 166명
- 지원금액 : 총 10,293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화) 044-204-7792  
(이메일) [jhwangnoon@korea.kr](mailto:jhwangnoon@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전화) 044-300-0852, 0854 (이메일) [wbshim@tipa.or.kr](mailto:wbshim@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 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표기업 (신설) 등 우대가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연구개발 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화) 044-204-7792  
(이메일) jhwangnoon@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전화) 044-300-0852, 0854 (이메일)wbshim@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연의 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수요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지원수요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단, '24년 상반기부터 기업과 연구인력 간 매칭을 웹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

**Q** 파견인력이 파견 중 공공연으로 중도 복귀하는 경우, 파견지원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파견기업은 동사업에 참여(기업지원계약 체결)한 경우,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

#### ※ 연구인력혁신센터 신청자격 범위

- (지역혁신기관) 지역의 산업육성 및 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법, 특례법,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설립된 지역혁신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협·단체) 민법, 공익공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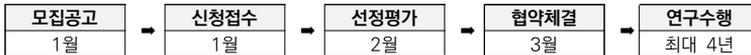
\* 사업 신청은 기관별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구성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전담 인력 필수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4년(2+2년),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4개 센터
- 지원금액 : 총 4,83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4년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화) 044-204-7792  
(이메일) jhwangnoon@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전화) 044-300-0852,  
0854 (이메일)wbshim@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동 사업은 연구인력 양성 관련 2개 내역사업\*의 통합·개편을 통해 '24년 신규 추진되는 사업임.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Q&A

**Q**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 하나요?

**A**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Q**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지원받는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기획연구, 예비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지원 활동) 운영 및 센터 관리·운영 비 등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input type="checkbox"/>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가와 나항까지 항목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나)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추천된 중소기업의 제품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기업 대상이거나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 제품 중 추천제품(2가지 조건 중 택1)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기업 대상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③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제품 대상

-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에 선정 제품 중 혁신제품으로 추천 제품
- 지원조건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 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신청제외 대상**

- ▶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 신청제품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및 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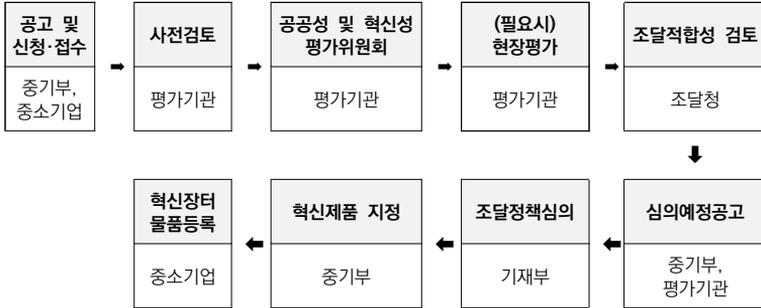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개발시범구매제도 선정 제품 중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 공공구매자와 중소기업 간 매칭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8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제품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 선정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70  
(이메일) ckj5766@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전화) 044-300-0715  
(이메일) innopro@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세부품명을 제조등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제조물품식별번호는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에서 해당 정보를 먼저 발급받은 후,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없이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경우, 사전검토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물품식별번호 부여에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물품분류번호** : 물품의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것

**세부품명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번호를 매긴 것

**물품식별번호** : 물품을 생산자와 모델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긴 것



## 지역특화산업육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지역특화산업(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연고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기업성장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
- 지원조건 :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역별 상이

\* 세부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사항은 시·도 모집공고 참조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 ▶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지역주력산업 :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마케팅, 시험분석, 지적권 확보 등 기업지원
  - 시군구 연고산업 :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 내 중소기업 대상 혁신화, 성장촉진, 인식개선, 사업화 등 기업지원
- 지원규모 :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2,000개사 내외 (24년 사업비 695억원)
- 지원금액 : 기업별 5천만원 이내

### <시·도별 지역주력(주축)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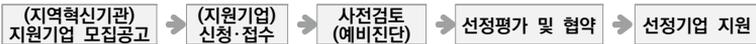
시도	주력(주축)산업	시도	주력(주축)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 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 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 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향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지원내용>

지원분류	지원내용
혁신화&성장촉진	지역의 전통산업 기업군을 ICT·플랫폼 기술 등을 접목하여 고도화하거나 유관 기간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육성타겟 기업군의 혁신역량 제고 및 트렌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화지원	기존 시제품제작, 마케팅 외 연고산업 관련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연계 및 거래처 확장 프로그램 신규 추진
패키지지원	지역 내 유망기업 혹은 유망제품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패키지 기획 및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주관기관(혁신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등, (지원기업)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주관기관 선정 이후, 주관기관별 기업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주관기관 : 지역별 테크노파크 정책지정 또는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를 통한 지역혁신기관 선정
    - \* 사업수행 내용, 추진체계, 기업지원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지원기업 :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 심사·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혁신정책과 (전화) 044-204-7587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전화) 044-300-0825 (이메일) yooym@tipa.or.kr
- 기타 : 사업 및 시스템 문의 (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Q&A

**Q** 지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지역별 기업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 혹은 지역혁신기관이 주관 기관으로 수행하며, 해당 주관기관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합니다. 2월 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 혹은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진행됩니다.

**Q** 지원기업으로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기업의 지원조건은 매출액, 수출액 및 기업규모, 산업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지원조건이 상이하며, 해당 내용은 기업지원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대상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력산업 기업지원의 경우,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등 기술지원프로그램과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선,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사업화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지역혁신기관이란?

지역 내에서 인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등을 지원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이 포함



## 선도형 제조혁신 구축 지원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 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내역	지원기업(개)	내역	지원기업(개)
지원 사업 및 물량	정부일반형	310	자율형공장	20
	탄소중립형	15	정부일반형	550
	부처협업형	35	탄소중립형	15
	투자연계형	18	부처협업형	35
	공급망연계형	신규 10컨소(50)	상생형(고도화1)	200
	상생형(기초)	200	K-스마트등대공장 (계속)	15
	상생형(고도화1)	130	디지털 협업공장	신규6컨소(30) 계속3컨소(23)
	K-스마트등대공장 (계속)	25	소 계	888
	디지털클러스터	계속 3컨소(18)		
	소 계	801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우대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신청제외 대상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유형	지원내용
고도화 <sup>1</sup>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 <sup>1</sup>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 과제 수
정부일반형	385
정부일반형(지역특화프로젝트)	165
자율형공장(2년)	20
선도형 제조혁신(스마트공장)	200
대중소상생형	200
부처협업형	35
탄소중립형	15
디지털협업공장	6컨소

-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2  
(이메일) kim3933@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 (전화) 044-300-0960  
(이메일) ann1892@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① 24년도 통합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2024년 통합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는 도입기업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도입기업 인건비는 도입기업부담금 20% 이내로 현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공장 구축이후에 솔루션 관리에 대한 후속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A

6개월간의 집중 AS기간 도입을 통해 구축 공장의 기능과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집중 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 및 평가위원 평가 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kr](http://www.smart-factor.kr))의 '알림/참여마당'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 공장 내 모든 장치, 원료, 공구 등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제품의 주문을 받고 난후 제품이 완성될때까지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정보를 현장실무자나 관리자에게 보고, 신속한 응답을 통해 생산조건을 변화시키며 가치없는 요소를 감소시켜줌으로써 생산공정과 기능을 개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제어기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람이 지정해둔 대로 로봇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장치, 제어로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서 제어를 위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제품수명주기관리, 제품 설계도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는 것이 목적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고를 줄일 수 있음

**CPS(Cyber-Physical Systems)** : 정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계구성 요소와 결합하여 데이터 전송 및 인프라(인터넷 등)에 의한 모니터링 또는 제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 디지털협업공장

대표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장·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물량	10개 컨소 지원	6개 컨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 우대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컨소시엄당 최소 5개 기업)
- 지원금액 : 6,00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3  
(이메일) jkkorea@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 (전화) 044-300-0954  
(이메일)hishin@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Q&A

Q

꼭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디지털협업공장”사업은 기업간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공장 구축이후에 솔루션 관리에 대한 후속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A

6개월간의 집중 AS기간 도입을 통해 구축 공장의 기능과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집중 AS기간 완료확인서 발급 및 평가위원 평가 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kr](http://www.smart-factor.kr))의 ‘알림/참여마당’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연 3억원, 최대 2년
  - AI·디지털트윈을 적용한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획지원 및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 (구축지원)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규모 : 20개 기업
- 지원금액 : 6,00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획지원 → 기술성(현장심층)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현장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54  
(이메일) chemwizard@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 (전화) 044-300-0960  
(이메일) ann1892@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Q&A

**Q** AI 및 디지털트윈 적용은 필수인가요?

**A** 네, “자율형공장”사업은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 연계·시각화 등을 구축한 공장으로, AI·디지털트윈 적용이 필수입니다.

**Q** 기존의 공급기업 또는 기획기관과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A** 네, 기획기관 pool을 통해 매칭을 하거나, 도입기업에서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컨소시엄 구성 시 공급기업/기획기관의 요건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 기업  
(기획기관) 스마트공장 컨설팅 실적 및 상근컨설턴트 보유 기관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물량	1,250개 지원	1,500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기업 또는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
- 지원조건 :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심사원 1M/D당 500,000원)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 지원규모 : 1,500개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 12월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등
- 추진절차 :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4  
(이메일) jooniry@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 (전화) 044-300-0956  
(이메일) syoon32@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사업신청 후 수준확인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A

사업 신청 후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수준확인서 발급 및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참여한 기업에 한해서 수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법은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사이트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③ (신설)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③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① 긴급AS(고장·결함 수리) ② AS지원(고장·결함 수리, 업그레이드, 사용법 전수 등 활용률 제고 전 분야)	① AS지원(고장·결함 수리, 업그레이드, 사용법 전수 등 활용률 제고 전 분야)
모집 및 평가방식	① 긴급AS(수시모집, 현장평가) ② AS지원(3월, 5월 정기모집, 서면·현장평가)	① AS지원(수시모집, 현장평가)
가점부여	신설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우대가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기업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 단, 중소기업 중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50% 지원(최대 16백만원)
- 우대사항 :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우대 가점 적용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중인 기업
- ▶ 타 공급기업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도입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기능 개선 등 활용도 제고
- 지원규모 : 350개사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6백만원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1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AS 대상 적합성, 적정성, 관리 및 활용, 지원성과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8  
(이메일)pjm923@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 (전화) 044-300-0959  
(이메일)lotandu@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도 AS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스마트공장을 자체 구축한 기업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 확인 기관에서 발급하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Q

현재 스마트공장 사업에 도입기업으로 협약 후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kr)의 ‘알림/참여마당’의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

### 용어 설명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제품의 주문을 받고 난후 제품이 완성될때까지 생산의 최적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정보를 현장실무자나 관리자에게 보고, 신속한 응답을 통해 생산조건을 변화시키며 가치없는 요소를 감소시켜줌으로써 생산공정과 기능을 개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제어기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람이 지정해둔 대로 로봇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장치, 제어로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서 제어를 위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 제품수명주기관리, 제품 설계도로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는 것이 목적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재고를 줄일 수 있음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도록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지원조건 : 역량진단비용 80~100%

구분	기본역량진단	심화역량진단
지원조건	진단비용 100% 전액지원 (기업당 최대 80만원)	진단비용 80% 지원 (기업당 최대 152만원)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 '23년 공급기업 역량진단(기본·심화) 후, 6개월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을 위한 자가 역량진단 및 전문역량진단(기본·심화) 지원

- (자가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제공
- (기본역량진단) 개발된 역량진단모델을 기반으로 전문진단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단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역량진단) 단계별 기본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규모 : 공급기업 300개
- 지원금액 : 3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부터 예산 소진까지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역량진단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공고문 확인 요망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화가능성, 컨소시엄 역량,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전략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471  
(이메일) tpgud637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1  
(이메일) passion@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 (경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기본역량진단 없이, 심화역량진단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심화역량진단은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기본역량진단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대상 또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장 자동화 설비, 정보시스템, 솔루션 개발·운용 등 스마트제조 공정 공급기술을 갖춘 기업

**Q** 신청 후 역량진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역량진단은 신청 후 3~6일 이내, 심화역량진단은 5~10일 이내 역량진단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획·구축지도 컨설팅 및 지역 기업의 제조혁신 관련 컨설팅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및 지역 DX 희망기업
지원내용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등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지도 (지원규모) 1,000개사, 37.8억원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사업기획 및 구축지도 지원 (지원규모) 1,000개사, 37.8억원
신청·접수	(공고) '23. 3. 31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공고) 별도 공고 없음 (접수방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접수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선정된 기업
- 지원조건 : 구축지도 비용 중 90%(기업당 최대 3.4백만원)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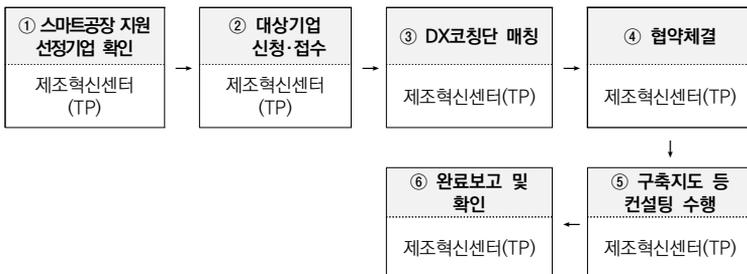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최근 3년 이내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및 지역 DX 희망기업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기업) 정부지원형 고도화, 지자체형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에 구축사업계획서 기획, 구축지도, 제조노하우 전수 등 지원
  - (지역 DX 희망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전략수립, 기술애로 해결 등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000개사
- 지원금액 : 37.8억원(정부보조금 90%)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별도공고 없이 스마트공장 지원 선정완료 기업 대상 신청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



## 문의처

---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486  
(이메일) periomint@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4  
(이메일) hmp@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지원사업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IT서비스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컨소시엄(IT서비스기업 중 중소기업 1개 이상, 컨소시엄 내 클라우드사업자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정부지원, 최대 8억원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최근 3년 이내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업종별 대표 공정에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관련 종합 솔루션(MES, ERP, PLM 등) 개발 지원
  - (종합솔루션 개발) 제조기업 업종별 대표 공정 및 주요제출 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하며, 인공지능(AI) 등이 포함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패키지 형태의 종합솔루션 개발 지원

- (솔루션 실증) 종합솔루션이 목표로하는 업종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실증
- (솔루션 출시) 개발·실증 완료한 솔루션을 공용 클라우드에 구독형으로 출시
- 지원규모 : 1개 컨소시엄
- 지원금액 : 8억원(정부출연금 50%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화가능성, 컨소시엄 역량,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전략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471  
(이메일) tpgud637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DX혁신실 : (전화) 044-300-0974  
(이메일) hmp@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개발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란 무엇인가요?

**A**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하며, 개발 솔루션은 반드시 공용 클라우드(KT, NHN, AWS 등)에서 활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Q**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 참여시 기업 부담금이 있나요?

**A**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사업의 정부지원은 총 사업비의 50%이며 최대 8억원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의 50%와 정부지원금 최대 8억원을 초과한 사업비는 민간 컨소시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선정된 컨소시엄의 민간 부담금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요?

**A** 민간부담금은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자율 배분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AI 분석목적으로 가공하는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중소 제조기업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데이터를 수집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우대사항 : '23년 제조데이터 가공·구매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 실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24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지원
- 지원규모 : 25개 기업 내외(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2.5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 요건검토 → 선정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도입 필요성, 사업수행 방안, 프로젝트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 (전화) 044-300-0944~6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디지털추진본부 : (전화) 031-628-967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제조데이터 상품구매 지원

수요자의 제조데이터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제조데이터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비용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연 2회 모집	수시모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 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제조현장 개선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비영리기관)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
    - ※ 연구기관 증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비영리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비영리기관은 제조기업에서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에 한정하여 구매 인정
- 우대사항 : '23년 제조데이터 가공·구매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 실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24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KAMP(www.kamp-ai.kr) 내 제조데이터 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5개 개업 내외최대 4개월, 0.1억원 이내 지원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80% 이내 지원, 비영리기관은 10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2.5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 → ③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제조데이터 활용성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과 : (전화)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 (전화) 044-300-0944~6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디지털추진본부 : (전화) 031-628-9676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http://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1차 모집공고\_중소  
중견기업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 공고명 :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1차 모집공고\_비영리기관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_중소  
중견기업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_비영리  
기관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3년 12월	선도형 제조혁신 구축 지원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57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60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2024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56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	2024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70, 1231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74
1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30
	창업성장기술개발(R&D)-디딤돌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55
	창업성장기술개발(R&D)-TIPS	2024년도 TIPS(TIPS)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21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산학연Collabo R&D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44, 0846
스마트공장 AS지원	2024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59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973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참여기업 접수용)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842 , 085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참여기업 접수용)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842 , 0852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참여기업 접수용)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842 , 852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연구인력혁신센터접수용)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842 , 0852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혁신제품(상반기) 지정제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715
	디지털협업공장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954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 지원	2024년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 지원 공고	이노비즈협회	031-628-9676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지원	2024년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지원 공고	이노비즈협회	031-628-9676
3월	창업성장기술개발(R&D)-디딤돌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555
7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2024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653
8월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혁신제품(하반기) 지정제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715
9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2024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4-300-0653

\* 별도 공고가 없는 사업 :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 제 3 부

---



# 창업진흥원





##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992명 내외 (모집분야) 일반, 특화(여성, 소셜벤처)	(지원규모) 960명 내외 (모집분야) 일반, 특화(여성, 소셜벤처, 사내벤처)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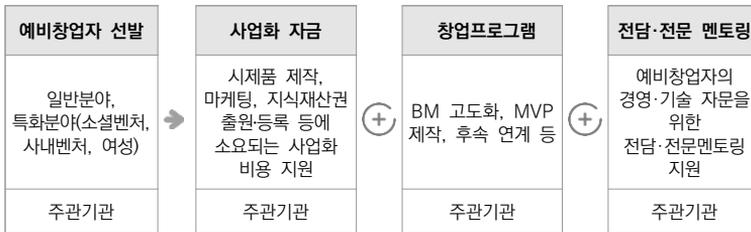
- 신청자격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프로그램)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 (멘토링)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960명 내외
- 지원금액 : 629.77억원(정부안)
- 주요 사업절차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가점 증빙 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 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상담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전화) 044-410-1831, 1832, 1804, 1806, 1807, 1809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자격 모집공고 내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혁신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BM(Business Model)** :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모형

**MVP(Minimum Viable Product)** :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핵심 기능 위주로 구현한 제품



##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지원규모) 595개사 내외	(지원규모) 59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 중소기업창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규모 : 5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548.6억원(정부안)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 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 추진절차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상담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2, 1834, 1838, 1841, 1842, 1845



## 창업도약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및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유형	①일반사업화, ②대기업협업	①일반사업화, ②대기업협업 (신설) ③융자병행, ④투자병행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지원조건 : 4개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우대사항 : 지원유형별 우대사항 상이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일반사업화)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대기업 협업)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
  - (용자·투자 병행) 일반사업화 지원 사항에 추가적으로 용자 또는 투자 병행 지원
- 지원규모 : 373개사 내외(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금액 : 예산 592억원
  - \* '23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406개사, 선정지원기업 394개사, 평균지원금액 1.28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지원유형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지원유형별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기업) 구성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지원유형에 따라 심사·평가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일반사업화 기준)



\* 지원유형(융자병행, 투자병행)에 따라 추진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1~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모집마감) →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검색
  - (홈페이지)





## Q&A

**Q**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님께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Q** 지원유형 4개 중, '일반사업화', '웅자병행' 유형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2개 유형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초격차 5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 지원대상

-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10대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신규 217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연계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 우대
  - \*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개방형혁신	·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투자유치	·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1분기 중(예정)
  - \* 기간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 \* 서면 및 발표평가 : 시장분석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개발역량 및 기술고도화 계획, 비즈니스 성장전략, 기업 건전성 및 핵심기술 인력구성 등 종합 평가

## 처리절차



## 문의처

- 창업진흥원(혁신창업실) : 044-410-1681~7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참조

##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스타트업육성) 창업 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본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 지원이 보장 되나요?

A

▶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3년간 지원이 보장됩니다. 다만, 매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해 당해연도의 정부지원금(최대 2억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예시1) 1차년도 1.7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총 4.7억원

\* (정부지원금 예시2)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1억원, 3차년도 1.5억원 총 4.5억원

Q

본 사업에 선정 시 사업 수행기간인 3년보다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나요?

A

▶ 창업기업이 최소 1차년도의 사업을 수행 완료하고, 3년의 사업화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을 졸업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기업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A, 상장, 매출·투자 특정 정량 성과 달성 등

Q

R&D과제와 동시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

▶ 본 사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서, R&D과제와 동시수행을 신청·수행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팁스(TIPS)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 자금 최대 5억원(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글로벌팁스 지원 트랙 신설

### 지원대상

-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팁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딥테크팁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
- ▶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포스트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 ①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 ②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TIPS) 성공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 |                                     |                       |
|-------------------------------------|-----------------------|
|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
|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
|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                       |
| ⑤ 신규고용 20명 이상                       |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프리팁스('24년 50개사 내외)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10개월)
  -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 팁스('24년 872개사 내외)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10개월)
  -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 딥테크팁스의 경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3억원 이상)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 포스트팁스('24년 83개사 내외) :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 최대 5억원 지원(18개월)

## 신청·접수

- 공고(예정)시기 및 신청방법
  - (팁스) 1월 통합공고 예정이며, 상시 접수 방식으로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2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글로벌팁스) 3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평가 주요 내용 :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

- 추진절차

- (프리팁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발표평가 → 현장실사



- (팁스) 신청·접수 → 운영사 추천 → 요건검토 → 발표평가



- (포스트팁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발표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22 / 02-2039-1308, 1354
- 한국엔젤투자협회(연계사업팀) : 02-3440-7419
- K-Startup([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또는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http://www.jointips.or.kr))  
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틱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등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해외시장검증(GMEP)과 해외실증(PoC)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해외시장검증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여비 등 지원
  - 해외실증지원 :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지원규모 : (해외시장검증) 110개사, (해외실증지원) 30개사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4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영문 사업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발표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창업과 : 044-204-7650, seojinair@korea.kr
-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 02-2039-1629, 1735, dream2@kised.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공고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3년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공고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해외시장검증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최소 1인 이상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반드시 특화 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 해외시장검증(GMEP)과 해외실증(PoC)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당해년도 동시 진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둘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해외실증지원(PoC)** : 해외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정부(창업사업화 지원)와 글로벌 기업(서비스 지원)이 협업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기회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19~'20년 초기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는 창업도약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아이템 개발·고도화, 사업모델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주관기관 특화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글로벌 기업 서비스 : 매칭 글로벌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유 솔루션 지원, 비즈니스 세미나,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해외진출 연계 등 지원(기업별 상이)
  - \* 글로벌 기업 참여 현황 : ('23년)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MS, 다쓰시스템, 엔시스, 지멘스, AWS, 오라클, IBM
-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평균 1.3억원 ('23년 기준)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3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요건 적합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기업 협업 계획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전화)044-204-7651, (이메일)chc12@korea.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전화)044-410-1720, 1726, 1762, (이메일)ggh@kised.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글로벌 기업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솔루션 제공(무상, 할인 등), 기술 전문가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해외 판로개척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글로벌 기업마다 제공 서비스가 상이하니 모집공고를 확인요청드립니다.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기업과 스타트업이 양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폼(Platformer)로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예비) 창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화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선정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 대상 협업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024년 1·2분기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아이디어 혁신성, 계획의 구체성, 사업 이해도, 보유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기술창업과 : 044-204-7671, 7296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15, 1716, 171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참조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ESG분야(환경, 사회), 4차산업 분야(디지털전환, 인공지능) 스타트업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②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자율제안형 프로그램 스타트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공고명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스타트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요기업 별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예선-본선-결선 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하여 협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용어 설명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POC(proof of concept)** :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 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증

**MVP(Minimum Viable Product)** : 최소 기능 제품,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최소한의 기능(features)을 구현한 제품



##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지역 창업 기업과 대학생·교수 등 대학발 창업기업에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수요에 기반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업력별(예비, 초기, 도약) 지원	대학발 창업기업과 지역 산업 기반 창업 기업을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까지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창업중심대학별 상이(모집공고 확인)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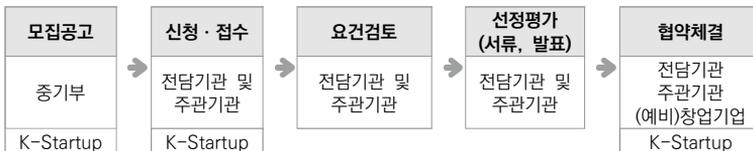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글로벌 진출, 민간협력,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마케팅, 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프로그램 : 창업중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창업중심대학 현황 : 수도권(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
- 지원규모 : (예비)창업기업 75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67,475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2월(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사업 확장 및 출구 전략, 팀(기업 구성원) 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2, 7956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1, 181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초기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모집마감'에서 '창업중심대학'으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창업중심대학 소속의 대학생, 교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부터 스페일업이 필요한 도약기업까지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Q**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일 경우 희망하는 창업중심대학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23.12월 기준) 창업중심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창업중심대학은 6개 권역을 기준으로 총 9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권(강원대학교), 대경권(대구대학교), 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호남권(전북대학교), 충청권(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으로 운영중입니다.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사업 아이템에 적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지원조건 :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팀)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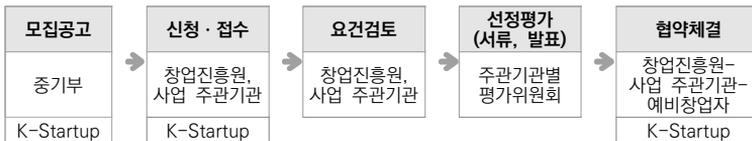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 이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28명(팀)
- 지원금액 : 약 13.4억원(평균 48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공공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 '모집마감'에서 '공공기술'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공공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

공공기술이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말합니다.

Q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권리권, 노하우, 기술자료 등을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도입)받아 활용할 계획을 신청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Q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도입)받아 창업을 실행할 예정인 자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지원조건 : 기업을 창업(법인, 개인)한 이력이 없는 자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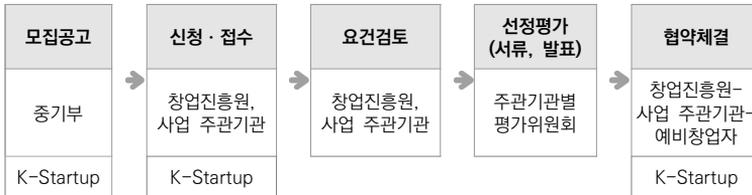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생애최초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별로 상이)

- 지원규모 : 78명(팀)
- 지원금액 : 약 36억원(평균 약 46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모집마감'에서 '생애최초'로 검색하여 확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신청자격 상 기업을 창업(법인, 개인)한 이력이 없는자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만29세 이하 청년으로 생애 단 한번도 사업자를 신고하여 사업을 한 이력(경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대표로 사업을 계획중인데, 복수의 공동대표자 모두 만 29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의 나이조건이 만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자등록(개시) 시 공동대표자 포함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사업 신청시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총 4개기관입니다. 공고문 내 주관기관 소개자료 등을 확인하시어 생애최초 창업 과정에서 함께할 주관기관 파트너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경험과 우수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 발굴 및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구분	- 일반형, IP전략형, 기업발굴형	- 일반형, IP전략형
신청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 <삭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 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IP전략형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일반형”과 같음 -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전용실시권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 ④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 중소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既)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 세부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형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50백만원, 협약기간 약 8개월 내외
IP전략형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외 추가로 지식재산컨설팅 제공 * (지식재산컨설팅) IP전략수립, 기술적 문제해결등을 통한 IP 기술 제품화, 특허 권리확보 등 지원

- 지원규모 : 282명 (일반형 262명, IP전략형 20명)
- 지원금액 : 최대 15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평균 6천만원 내외)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1~2월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폐업사실증명원,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구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등

사업공고 ( '24.2월 )	신청·접수 ( '24.2월~3월 )	선정평가 및 협약 ( '24.6월~6월 )	사업비 지원 ( '24.6월말 )
--------------------	------------------------	----------------------------	-----------------------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창업정책과 : 044-204-7625~6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1, 63, 66, 69
- 중소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신청기업 외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력 기준을 어떻게 판단 하나요?

**A**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개인기업의 폐업도 폐업이력으로 인정되나요?

**A**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어 설명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의 6에 따름

**성실경영평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3조에 따름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업종 확인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창업해야 함(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예비)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개인데스크, 편의시설 등) 제공
전문가 자문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워킹	●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 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 신청·접수

- K-스타트업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접수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

- \*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 확인된 정회원에 한해 입주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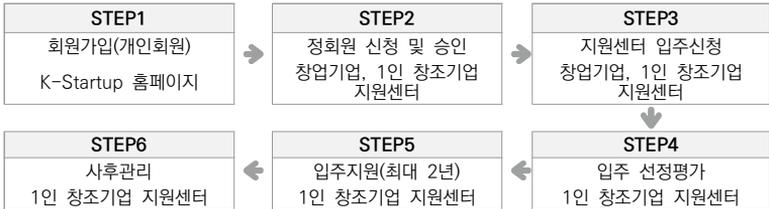
###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 정회원 신청(창업기업) → 정회원 자격요건 검토(지원센터) → 정회원 승인(지원센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신청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4개소 내외(45.98억원)

### 문의처

- 전화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 1930, 1925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Q&A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K-startup 홈페이지 정회원 신청시에 선택하신 센터에서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Q**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모집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지원센터별 모집시기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원센터에 모집일정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되는걸까요?

**A**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은 '1인창조기업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입주 신청은 센터별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후,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신청제외 대상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지원내용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 창업 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	내용
발굴	●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 기술·경험·직무 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창업교육	●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 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역량강화
공간 지원	●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보육 지원	●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 신청·접수

- '24년 연중 수시\*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

## 문의처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925, 1921
-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현황

권역	지역	연락처	권역	지역	연락처
서울	마포구	070-7727-4100	대구·경북	달서구(계명대)	053-643-7994
	성북구	02-941-7257		수성구	053-784-8261
	경기	성남시		031-782-3018	달서구(계명문화대)
고양시		031-936-7485		칠곡군	054-973-9604
안양시		031-8045-6715		경산시	053-856-3840
				충북	청주시(상당구)
인천	남동구	032-726-3883	청주시(서원구)	043-217-1312	
강원	춘천시	033-244-2255	충남	당진시(읍내동)	041-356-8748
	원주시	033-769-1903-4		서산시, 서천군	041-660-1327 041-951-1326
	울산	동구	052-209-1510	전북	익산시
울주군		052-277-1996	전주시		063-711-2153
경남		진주시	055-772-3610		광주·전남
	양산시	055-380-9656	전남 목포시	061-280-7499	
	김해시	055-310-9260-1			
제주	서귀포시	070-7732-0202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IR, 창업경진대회, 창업 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 연계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 상이

### 신청·접수

- '24년 연중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로 신청 방식 상이)
  - \*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문의 가능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881, 1882, 1893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강원	033-248-7900	세종	044-999-0003
경기	031-8016-1102	울산	052-222-9120
경남	055-256-2700	인천	032-458-5000
경북	054-470-2614	전남	061-661-2002
광주	062-974-9361	전북	063-220-8900
대구	053-759-6380	제주	064-710-1900
대전	042-385-0666	충남	041-536-7888
부산	051-749-8900	충북	043-710-5900
서울	02-723-9100		

-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홈페이지 : [ccei.creativekorea.or.kr](http://ccei.creativekorea.or.kr)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지역	센터별 홈페이지
강원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angwon">ccei.creativekorea.or.kr/gangwon</a>	세종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sejong">ccei.creativekorea.or.kr/sejong</a>
경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gi">ccei.creativekorea.or.kr/gyeonggi</a>	울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ulsan">ccei.creativekorea.or.kr/ulsan</a>
경남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ccei.creativekorea.or.kr/gyeongnam</a>	인천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incheon">ccei.creativekorea.or.kr/incheon</a>
경북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a>	전남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jeonnam">ccei.creativekorea.or.kr/jeonnam</a>
광주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gwangju">ccei.creativekorea.or.kr/gwangju</a>	전북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jeonbuk">ccei.creativekorea.or.kr/jeonbuk</a>
대구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daegu">ccei.creativekorea.or.kr/daegu</a>	제주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jeju">ccei.creativekorea.or.kr/jeju</a>
대전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daejeon">ccei.creativekorea.or.kr/daejeon</a>	충남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chungnam">ccei.creativekorea.or.kr/chungnam</a>
부산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busan">ccei.creativekorea.or.kr/busan</a>	충북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chungbuk">ccei.creativekorea.or.kr/chungbuk</a>
서울	<a href="http://ccei.creativekorea.or.kr/seoul">ccei.creativekorea.or.kr/seoul</a>		



## 판교 창업존 운영

미래 신사업 분야 유망(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규모 : 110개사 내외
- 신청제외 대상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 판교 창업존에 입주한 이력이 있거나, 선정 후 포기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창업진흥원장 및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내용

- 보육공간 제공 :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및 규모별 회의실, 행사 공간 등
  - \* 보육공간 위치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8층

- 보육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지원, 멘토링 등

구분	주요 내용
교육	●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
네트워킹	●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
마케팅	●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
글로벌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멘토링	● 소그룹 기술·비즈니스 멘토링, 1:1멘토링 등

- 인프라 지원 :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분	주요 내용
통·번역센터	● 美, 中, 日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3D제작보육실	●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글로벌 테스트베드	●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 제공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공실 발생 시(연간 2~3회)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가점 증빙서류 등 공고문에 명시된 제반 서류
- 추진절차 : ①공고 → ②신청·접수 → ③요건검토 → ④서면평가 → ⑤발표평가 → ⑥호실배정
- 서면평가 항목 : ①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환경 이해도 ②임직원 보유 역량 ③아이템의 기술성 ④BM ⑤시장성
- 발표평가 항목 : ①창업자 역량 및 의지 ②기술성 ③시장성 ④사업성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지역창업실) : 044-410-1924, 1888
- 판교 창업존 : 031-780-9062, 9063
-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 : <http://www.pangyozone.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참조

- 공고명 : 2023「판교 창업존」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 - 모집마감 공고 내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창업존 입주기간과 임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기간은 2+1년으로, 기본 입주 2년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여부(1년)를 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관리비는 창업기업 업력 및 공간유형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전용면적 3.3㎡당 평균 50,000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Q

창업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A

창업존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 이외에도 미팅룸, 수면실, 샤워실 및 공용OA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세미나, 대내·외 네트워킹, 외국어 통번역 지원, 시제품 제작 및 해외 통신망 테스트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인프라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메이커 활성화 지원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캐주얼 창업중심의 메이커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19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 지원조건
  - ① (공간확보)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일 것
    -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 제출 필수

② (대응자금 투자)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 우대사항 : 동일 권역 내 컨소시엄 구성
- 신청제외 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6억원
  -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 구성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 예산조정 가능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①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②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누리집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Q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무엇인가요?

A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이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컨소시엄(대표 1개+협업 2개 이상)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및 컨설팅, 창업사업화 지원 등 고도화된 제조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제조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 용어 설명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 청소년 비즈쿨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
- 사업주체 :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 창업진흥원, (운영) 학교 및 학교 밖 센터
- 사업예산 : 63.95억원
- 사업기간 : '24. 3월 ~ 12월, 약 10개월 (운영기관당 최대 3년 까지 운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방법 :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비즈쿨 캠프 및 솔루션,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운영기관 규모		• 423개 (운영형 338개 + 체험형 85개)	• 423개 내외 (운영형 212개 + 체험형 211개)
운영기관 협약기간		• 2021~2023년	• 2024~2026년
운영기관 예산규모		• 일반기관 평균 9.9백만원 • 거점기관 평균 60백만원	• 일반기관 평균 14백만원 • 거점기관 평균 91백만원
지원 내용	연합 프로그램	• 거점기관이 연 3회 이상 주최하며, 일반기관은 자율적으로 참여	• 거점기관이 연 3회 이상 주최하며, 일반기관은 1회 이상 의무 참여
	비즈쿨 솔루션	• 5개 대기업, 1개 부처, 1개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운영	• 3개 내외의 대기업, 9개 내외 유관 기관 등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운영
	비즈쿨 페스티벌	• 운영기관, 대기업, 유관기관이 협업 하여 개최	• 운영기관, 대기업, 유관기관이 협업 하여 개최하며,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메이커데이'와 공동 개최
고교학점제 인정도서 개발		• 고교학점제 TF를 구성하여 인정도서 개발 추진	• 교육부 '협업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인정도서 개발 및 추진

## 운영기관

- 모집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모집규모 : 총 212개 내외 (모집 시 '일반기관'과 '거점기관'으로 구분하여 모집)

구분	역할	규모	예산
일반 기관	• 교재활용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운영기관 공동업무 및 거점기관 추가업무 수행 시 학생 동원 등의 협조	197개 내외	평균 14백만원
거점 기관	• 운영기관 공동업무 및 지역 캠프·IR 개최, 일반기관과의 연합프 로그램 운영, 일반기관 담당자에 대한 멘토링 등 추가업무	15개 내외	평균 91백만원

- 모집기간 : '24.1월 중순 ~ 1월 말 (약 2주)
- 모집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운영 계획서 1부, 모집대상 자격 충족 증빙서류 각 1부
- 선정절차 : 일반기관은 서면평가, 거점기관은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항목 : 사업 의지, 인프라 구축 적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정량·정성으로 평가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953)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51~4)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21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1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 (경로) 사업공고 > 모집마감 > 2021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도전! K-스타트업

범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출신과 산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과 창업 후속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저변을 확대

\* '24년 참여부처 :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방사청, 특허청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자(팀)
  - ※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 이력은 창업 업력에 기산하지 않음

### 신청제외 대상

-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특별상·입상 제외)
- ▶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지원내용

- 상금 (총 14.1억원, 20팀(최대 3억원))

- 상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20점)
-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부처 통합공고 후 부처별 예선리그 개별 공고 → 예선리그별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예선리그별 제출서류
- 추진절차 : 부처별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결정



## < '24년도 대회 운영 내용 >

구분	'24년
예선리그	혁신창업리그(일반, 클럽), 학생리그(도약, 유학생), 연구자리그, 국방리그, 스포츠리그, 관광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신산업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	210팀 * 각 예선리그별 통합본선 진출 TO 상이
왕중왕전 진출	3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5팀) ※ 최종 수상 2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0팀)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1, 1717, challengeK@kised.or.kr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참고사항

---

### ① 전년도 사업광고

#### ● 공고명 :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광고 → 모집마감 → ‘도전! K-스타트업’ 검색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전시회 수	전시회 3개	전시회 4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초과 창업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전시 준비 사전 교육 : 전시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선배기업, 마케터 등과 전시 준비 노하우 전수 등
  - 전시회 별 피칭 고도화 : 피칭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서면 피칭 자료 검토, 예선 제출용 영상 촬영 및 리허설 진행 등
  -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 현지 투자자, 바이어와의 매칭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 등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전시별로 상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전시별로 상이(모집공고 확인)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http://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 문의처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글로벌창업협력실) : 044-410-1719. 1712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참조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지원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 지원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

### 신청·접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향보고서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등록세납부	지자체(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향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처리절차



##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 044-410-1653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참조([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



## Q&A

Q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합니까?

A

네. 현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법인설립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24. 3. 15.-)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의신청심사	창업진흥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서류)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
-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폐업·휴업 사실증명) 간소화
- (신청 및 처리기간) 상시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내 처리
-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 확인서 신청 불가

##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공공구매팀) : 044-410-1774~82
-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http://www.cert.k-startup.go.kr)) 참조



## Q&A

Q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Q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순 없나요?

A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진단이 무엇인가요?

A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 창업지원포털(K-Startup)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 지원내용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 단계별로 정보 제공
  - ① 창업준비(대국민)
  - ② 예비창업(예비창업자)
  - ③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④ 창업도약(3~7년 기업)
  - ⑤ 재창업(재창업자) 등 사용자 정보 기반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등) 제공
-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제공

##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대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 044-410-1652~9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 참조(www.k-startup.go.kr)



## Q&A

Q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K-Startup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K-Startup을 통해 사업공고 및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K-Startup 회원가입이 필요하오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Q

K-Startup 정보 및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가이드가 있나요?

A

K-Startup은 창업사업, 교육, 입주공간, 멘토링·컨설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며, 그 외 연계 서비스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가이드도 제공중입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K-Startup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K-Startup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K-Startup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일반 매뉴얼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창업진흥원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202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681~7
	팁스(TIPS)	2024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22, 02-2039-1308, 1354
	창업중심대학	2024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812-9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20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816, 1814
	생애최초 청년창업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816, 1814
	메이커 활성화 지원	2024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960-4
	청소년비즈쿨	2024년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센터)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951-4
	도전! K-스타트업	도전! K-스타트업 2024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11, 1717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예비창업패키지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801
	초기창업패키지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845
	창업도약패키지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대기업협업)	창업진흥원	044-410-1861~3
	창업도약패키지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일반사업화, 융자병행, 투자병행)	창업진흥원	044-410-1861~3
	팁스(TIPS)	2024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22, 02-2039-1308, 1354
	재도전성공패키지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61,6 3,66,69
3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20/1 726/1762
	팁스(TIPS)	2024년 글로벌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2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15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20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2-2039-1629, 1657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2024년 해외실증(PoC)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2-2039-1598, 1735
6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044-410-1715
연중 상시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창업진흥원	044-410-1653,1 656
	창업기업 확인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창업진흥원	044-410-1774,1 777
	창업지원포털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	창업진흥원	044-410-1652-9

# 제 4 부

---



# 중소기업유통센터





## 동반성장몰 운영 사업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소상공인·납세자 등이 복지포인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된 상생형 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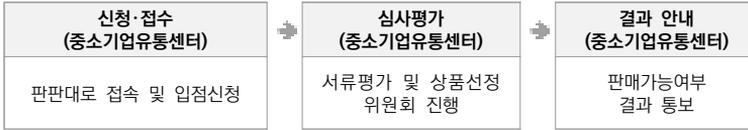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
- 우대사항 : 공공구매 선정제품(시범구매, 상생협력 등)
-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해외브랜드 등

###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 신청·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사업단 : 02-6678-9821~9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or.kr) 및 판판대로  
(www.fanfandaero.kr) 사업공고 참고



## Q&A

**Q** 동반성장물에 입점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필수로 필요하며, 이외 필요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상이하게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전 품목의 경우 KC 인증정보, 식품 품목은 PL보험증서, 식품품질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중소기업유통센터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상시	동반성장물 운영사업	동반성장물 운영 사업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821

## 제 5 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시기 변경 -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6월~7월	지원시기 변경 -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5월~6월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 아이템 기술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및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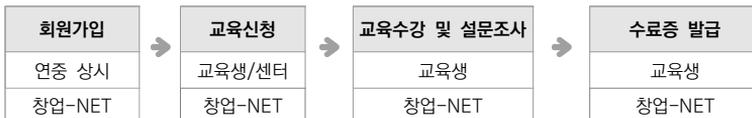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온라인 창업교육, 특화 아이템 기술교육, 1:1 창업 컨설팅 지원
  - (온라인교육) 장애인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창업-NET)을 통한 창업 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교육 및 유관기관 강의 콘텐츠 제공
  - (특화교육)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기술 교육 제공
  - (컨설팅)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1:1을 통해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 총 1,500명 내외(온라인교육 1,150명, 특화교육 100명, 컨설팅 250명)
- 지원금액 : 6.74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① 온라인교육 : 연중수시 ② 특화교육 : 4월  
③ 컨설팅 : 2월, 6월
- 신청방법 : ① 온라인교육, ② 특화교육: 창업-NET  
(<https://start.debc.or.kr/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③ 컨설팅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① 온라인교육 : 없음 ② 특화교육 :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등 ③ 컨설팅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접수절차 : 필수 제출 서류의 누락·미비 여부 확인을 통한 선착순  
모집
- 추진절차 :

### ① 온라인교육



### ② 특화교육



### ③ 컨설팅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 사업공고

- 공고명 : 장애인 창업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예전에 창업넷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았는데 수수료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네, 당해연도 온라인 창업교육 수수료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2023년도 온라인 창업교육 이수 시 가능합니다.

Q

전문가에게 창업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서류의 미비나 누락 확인을 통해 1:1 매칭을 진행합니다.

###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개인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창업-NET**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센터 주관의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과 유관기관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6월~7월	(상반기) 2월~3월 (하반기) 5월~6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지원조건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우대사항 : 중증, 여성, 저소득, 청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구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li> <li>○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li> <li>○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li> <li>○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li> <li>○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li> <li>○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li> <li>○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li> <li>○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li> <li>○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li> <li>○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li> <li>○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li> </ul>

##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매장 인테리어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기구입비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 지원규모 : 총 6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2월~3월, (하반기)5월~6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34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사업공고

- 공고명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알림마당 > 사업공고 내 게재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매장 인테리어,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집기구입, 폐업지원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Q** 초기 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창업자와 재기창업자가 대상이라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보유한 사업자를 업종을 전환하여 재창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7년 이내에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 우대사항 : 중증/저소득/청년/여성장애인, 아이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대표자, 센터 주관의 창업교육 수료생 등

### 신청제외 대상

-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최대 1,000만원) 지급
- 지원규모 : 총 11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6)

- 지원금액 : 총 3,200만원(대상 1,00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7월~8월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참가자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과 사업전략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사업공고
  - 공고명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경진대회 가점부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A**

가점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중증, 저소득, 청년, 여성,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생, 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항목 당 2점씩 최대 10점을 부여합니다.

**Q**

1차 서류심사의 선발기준이 뭔가요?

**A**

참가자의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 및 차별성과 사업전략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자 11명의 2배수, 즉 22명을 선발합니다.

**Q**

2차 발표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5~10분 내외의 PT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
- 지원조건 :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해당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발달장애인 및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 (1년), 최대 2년간 창업활동 지원(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활용)
- 지원규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8개소 운영(1개소당 교육생 평균 20팀)
- 지원금액 : 24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

### 신청·접수

- 공고시기 : 연중 수시(결원 발생 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선정평가 : 서류평가 → 면접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사업에 대한 요건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특화사업부 02-2181-6571,6572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광주)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광고명**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진주)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특화사업장 운영 및 구축현황

지역	아이템	구축경과	문의처
경북 안동시	표고버섯 활용한 식품제조	운영중	054-900-1258
광주 광산구	친환경 채소 스마트팜	운영중	062-456-1136
충남 태안군	곤충사육 및 건조 스마트팜	운영중	041-674-0031
제주 제주시	표고버섯 재배 스마트팜	운영중	064-901-1580
충남 공주시	공주밤, 논산딸기 등 가공식품	운영중	042-932-9077
경남 진주시	새싹삼 재배 스마트팜	운영중	055-924-1017
충남 아산시	아산맑은쌀 가공품	구축중	041-911-6446
전북 익산시	딸기 재배 스마트팜	구축중	063-237-5354



**Q&A**

**Q**

**발달장애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보호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가족(보호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767조 근거한 친족(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혈족·인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Q** 장애 등급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

**Q** 특화사업장에 입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지역별 특화사업장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특화사업장** : 창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장비,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부스임차료, 홍보비 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 지원제외 대상

-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참가불가
- ▶ 휴·폐업중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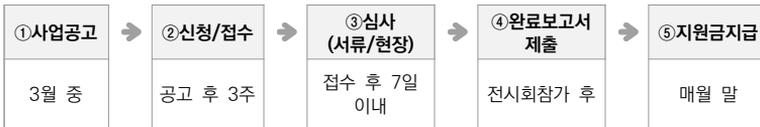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 지원 세부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2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전시회)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지원불가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학술세미나) 역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용어 설명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 교육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지원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 지원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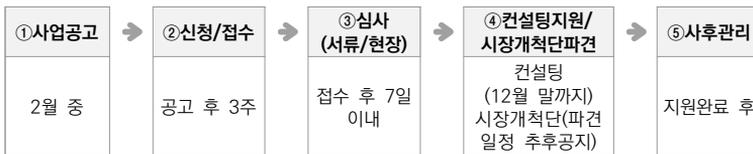
- 지원규모 : 총 70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해외온라인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 지원

지원구분	인증마크명
① 타겟국가 온라인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키워드검색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관 해외 방문자 유입 지원</li> <li>셀링오피 &amp; 인콰이어리 수신지원</li> </ul>
② 타겟 바이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별 타겟 관심국가 내 현지어 버전 구글 마케팅</li> <li>관심 바이어 상세정보/컨택 보고서 제공</li> <li>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li> </ul>
③ 맞춤형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전시회 참가 시 바이어 정보 제공</li> <li>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지원</li> <li>글로벌 SNS 게재</li> </ul>

- 시장개척단파견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 제공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2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제목 검색(수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시장개척단파견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 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 용어 설명

**해외온라인마케팅** : 해외 바이어에게 실시간 노출되는 온라인 홍보판 구축, 글로벌 B2B 플랫폼 내 키워드 상위 노출 광고 지원

**시장개척단** :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 바이어 발굴·매칭 후 현지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유망 아이디어의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 신청조건 : ①참여기업-②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① 참여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 ② 제작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
- 우대사항 :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 지원제외 대상

-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분야별 상이
  -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공급가액의 10~30% 현금 부담과 부가세 및 관세)
- 지원 세부내용

단계	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 목업	시제품 금형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결과물	최종보고서,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지급 방식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 ※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출 필수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협약 기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단계	선정 기준	평가 기준
1차 서류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2배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
2차 발표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내에서 고득점자순 선정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기대효과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5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시제품)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Q&A**

- Q** 제품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 A**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은 제품디자인이 아니므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가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업비는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확정(조정)되며, 기업 규모(중기업/소기업/예비창업자)에 따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 잔여 개발비용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 용어 설명

**제품디자인제작지원** :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제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지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제작지원** : 제품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의 형태 설계 및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부품들을 Mock-up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토하고,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 목적의 금형 제작 전 단계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금형** : 디자인 도안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위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시제품 금형(부분품 포함)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장애인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비용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지원조건 : 당해연도 1.1.~ 사업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최종결과물 제출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 우대사항 : 주관기관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 등

###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기업) 등

## 지원내용

### ● 지원 세부내용

지원영역	지원항목
인증획득 (건설팅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규격인증: CE, UL, CSA 등</li> <li>▪ ISO인증: ISO9001, ISO14001, ISO22000, ISO45001, ISO13485, ISO37001</li> <li>▪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 우수 조달제품 등</li> <li>▪ 조달가점, 법정 의무인증: KS, 환경표지,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등</li> <li>▪ 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li> <li>▪ 지식재산: 국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li> <li>▪ 시험비: KOLAS 인증기관 등(시험성적서)</li> </ul>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TV, 신문지, 지하철 옥외광고 등</li> <li>▪ 브랜드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CI 등 제작</li> <li>▪ 홍보 동영상: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영상 제작</li> <li>▪ SNS 마케팅: SNS채널(블로그/인스타/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마케팅</li> <li>▪ 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홈페이지</li> </ul>

●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인증획득분야 10개사, 마케팅분야 1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 3건 지원

\* 해외규격인증만 3,000만원 한도 내 1건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제품)사업화 전략, 기업(제품) 경쟁력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5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 제목 검색(인증)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인증획득 비용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A

인증획득 비용이란 선정기업에서 지출하신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이며,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이며, 컨설팅비란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Q

선정기업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업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 후보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선정기업은 인증획득 및 마케팅 활동 후 15일 이내 또는 사업 마감 기한까지 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를 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기업규모(중기업/소기업)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용어 설명

**해외규격인증**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인증(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센터 참고)

**현장실사** : 선정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지원조건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장애인기업확인서 유지
- 우대사항 : 여성장애인,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센터 주관 창업 교육 수료

### 신청제외 대상

- ▶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 휴·폐업 기업
-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지원
  -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자부담 :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사업주 선 구매, 지원금 후 지급)
- 지원규모 : 총 30개사 내외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2~3월, 6월 등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선정평가 및 통지



④ 보조공학기기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1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 제목 검색(보조공학)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지원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선정자가 자비로 기기를 구입하고, 증빙내역을 센터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신청 금액을 지급해 드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여러 개의 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

**Q** 부가세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센터는 기기 공급가액의 90%(한도 5백만원)만을 지원하며, 5백만원의 초과분과 부가세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용어 설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인 사업주** : 모집공고 전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1인 사업주



## MAS 컨설팅 및 등록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등록 및 공공입찰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우대사항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

### 지원제외 대상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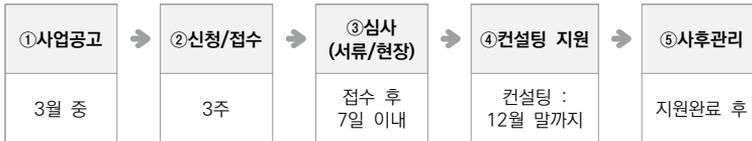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6개사 내외
- 지원 세부내용
  - MAS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 \* 기업별 1세부품명 20품목 이내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입찰컨설팅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 지원
- \* 공공조달 시장 진입방법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컨설팅
- \* 전자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 관련 컨설팅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
- 선정평가 : 서류평가(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0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s://www.debc.or.kr/>) > 사업공고 > 제목 검색(공공판로)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입찰컨설팅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에 대해 지원해드립니다.

## 용어 설명

**MAS(Multiple Award Schedule)** : 일정 자격 및 조건(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이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장애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 지원조건 : (모범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이상 영위한 대표 (유공자)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개인

### 신청제외 대상

- ▶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6.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7.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중소기업창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 1. 징계위원회에 징계결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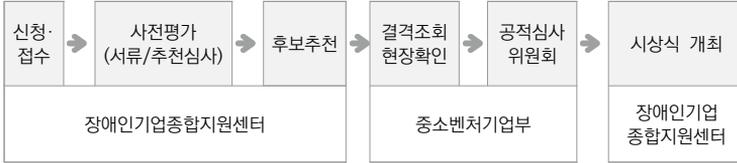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모범장애경제인) 중소기업창업부 장관, 특허청장 표창 (유공자 부문) 중소기업창업부 장관 표창
- 지원규모 : 중소기업창업부 장관 표창 17점, 특허청장 표창 5점
- 지원금액 : 해당없음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6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선정평가 : 자격검토 → 후보추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 :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

- 유공자 부문 :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 (전화) 054-842-3773  
(이메일) jjh@debc.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추가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제18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포상 신청 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A**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부대행사(벤처투자상담회, 장애인기업 간담회 등)를 통해 장애인 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투자 촉진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를 확산하는 행사입니다.

**Q**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인가요?

**A** 전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대표,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경제인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 공공구매제도 운영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가능 대상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제외 대상

구분	유형
민법상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병원, 학교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타법인	영농조합법인,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연합회

●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 제출서류 :

- (공동)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협동조합 추가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제도)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함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시,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함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 필요(단, 입찰과 비교하여 적격심사 생략, 기초단위까지 지역제한 가능)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 (전화) 02-2181-6542  
(메일) jhe@debc.or.kr
- 기타 :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1551-2181)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 Q&A

**Q**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단, '23년 10월 19일 이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2호 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중소기업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확인서를 신청할 시, 과세·면세에 따른 기업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는 어떤 문서로 제출하면 되나요?

**A** 과세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면세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일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이 힘들 경우, 확인서 신청은 전국 16개 단위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최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 기업
- 지원조건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기업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교육 수료자,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아이템, 창업아이템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 여부

### 신청제외 대상

- ▶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입주기업 맞춤형 직접지원(멘토링, 세무지원, 홍보마케팅),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제공
- 지원규모 : 16개 지역센터 124개 보육실 운영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접수(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 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
- 선정평가 : 지원신청-입주심사-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
- 추진절차 :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해당 지역 확인하여 문의

지역	담당센터 번호
서울	02-2181-6500
경기	032-322-1940
인천	032-817-1364
대전	042-362-9077
강원	033-747-6823
충북	043-238-8243
충남	041-331-0505

광주	062-511-8330
전북	063-237-5354
전남	061-285-7867
제주	064-749-8234
부산	051-329-8230
대구	053-600-8070
울산	052-294-7230
경북	054-842-3773
경남	055-763-3556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서울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대전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신청자격 제한이 되는 업종이 궁금합니다.

**A**

업종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변호사, 의사, 변리사, 회계사, 부동산업 등), 여행업, 학원,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 아닌 업종)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공고문의 별첨을 확인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는 제한됩니다.

**Q** 창업보육실 공간 외 어떤 지원이 있나요?

- A**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판로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입찰 정보, 자금조달 지원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이 있습니다.

**Q** 선정되면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A** 사무편의를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센터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용어 설명

**이행보증보험** :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볼 때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4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상반기 창업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21
3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2024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2024년 장애인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2024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2024년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5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2024년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MAS 컨설팅 및 등록	2024년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0
4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 특화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21
5월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34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6월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하반기 창업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21
	제19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제19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54-842-3773
7월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21
상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71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588-6072

## 제 6 부

# 중소기업중앙회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주식가치 평가 자문</li> <li>*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외감 법인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주식가치 평가 자문</li> <li>*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li> </ul>
수출컨소시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 사업단계별 공동비용의 70~100%</li> <li>○ 신청접수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li> <li>○ 지원규모 : 약 78개 컨소시엄 내외, 141.12 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 사업단계별 공동비용의 70% 이내</li> <li>○ 신청접수 : 온라인</li> <li>○ 지원규모 : 약 75개 컨소시엄 내외, 158억원</li> </ul>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li> </ul> </li> <li>* 우대사항 : 위기관리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부리기업,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코로나 19 대응기업</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1-S</li> <li>- 유형 1-A 지원금액 최대 1억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은 공장별로 가능</li> </ul> </li> <li>* 우대사항 : 취약지역·계층, 장애인기업, 부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FEMS·ESCO 도입기업, 글로벌 강소기업</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1-S 삭제</li> <li>- 유형 1-A 지원금액 최대 1.5억원</li> </ul> </li> </ul>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포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li> </ul> </li> <li>* 우대사항 : 부리기업,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코로나 19 관련기업 및 피해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1-기초 지원금액 최대 8천 4백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은 공장별로 가능</li> </ul> </li> <li>* 코로나 19 유관기업 및 피해기업 우대사항 삭제</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1-기초 지원금액 최대 6천만원</li> </ul> </li> </ul>

구분	'23년도	'24년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p>아래 ①, ②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p> <p>① 기본요건 : 모두 해당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li> <li>-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li> <li>-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li> </ul> <p>② 공급원가 신청요건 : 하나 이상 충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재료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li> <li>-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li> <li>-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li> <li>-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li> <li>-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li> </ul>	<p>아래 기본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li> <li>-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li> <li>-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li> </ul>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총 12만명	○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총 16.5만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퇴임, 노령)</li> </ul> </li> <li>○ 부금 내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출/ 의료, 재해(무이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6월부터 4개 공제사유 추가 예정</li> <li>- 8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li> <li>·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li> </ul> </li> <li>○ 중간정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 파산 시 중간정산 가능 예정</li> </ul> </li> <li>○ 부금 내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출/ 의료, 재해, 희생, 파산대출(무이자)</li> </ul> </li> <li>○ 가입자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가입자 혜택 추가</li> <li>- 재가입장려금 지급(24.4월부터 지급)</li> <li>- 정책보험바우처 지급</li> </ul> </li> <li>○ 재취업, 재창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기지원패스트트랙 신설</li> <li>·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한 재취업, 재창업 교육 지원</li> </ul> </li> </ul> <p>*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p>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원부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단, 신용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제도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지역신보재단 : 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경남·충남·제주
  - 전용보증 차별성
    - 5년간 보증발급 수수료 0.5%p 인하
    - 금융기관 할인수수료(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최대 1/2), 신용평가, 보증비율 (95%) 등 우대 적용
- \* (참고) 국내 구매만 이용 가능(해외구매는 사용 안됨)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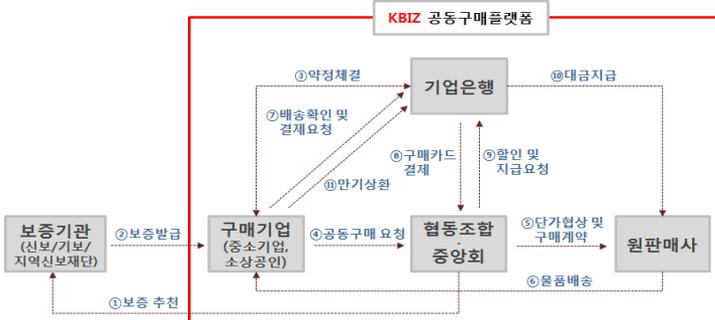
- 참여 신청서를 조합 포털(johap.kbiz.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 \* 자세한 신청서류는 조합 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전용 보증' 검색)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 Tel. 02-2124-3221~3223,  
Fax. 02-780-9785, 이메일 : hy6114@kbiz.or.kr

## 참고사항

- 처리절차 : 참여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 참여기업 추천(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관) ⇒ 참여기업 보증심사 및 발급 ⇒ 기업은행 약정 ⇒ 원부자재 구매 ⇒ 기업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 결제일에 기업은행 상환





## Q&A

**Q** 대상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소상공인(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Q** 어떻게 운영되나요?

**A** 1. 구매기업 추천(협동조합, 보증기관, 중소기업중앙회) 2. 보증 발급(구매기업↔보증기관) 3. 은행약정(구매기업 원판매사↔은행)  
4. 플랫폼 회원가입(구매기업, 원판매사, 협동조합)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어떤 우대사항이 있나요?

**A** 보증기관 :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5년간 0.5%p 우대, 보증비용 95% 적용  
IBK기업은행 : 할인수수료 1.0%p 자동감면, B2B결제수수료 면제,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 용어 설명

**공동구매 전용보증** : 원부자재 구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출보증 상품

**보증비용** : 빌린 돈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ex) 보증비용이 100%라면, 빌린 돈의 100%만큼 보증금을 제공



## 사업조정제도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 지원조건
  - 1) 형식적 요건
    - (신청인)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 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피신청인)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 2) 실질적 요건
    -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업종의 ③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함

### 신청제외 대상

- ▶ 방위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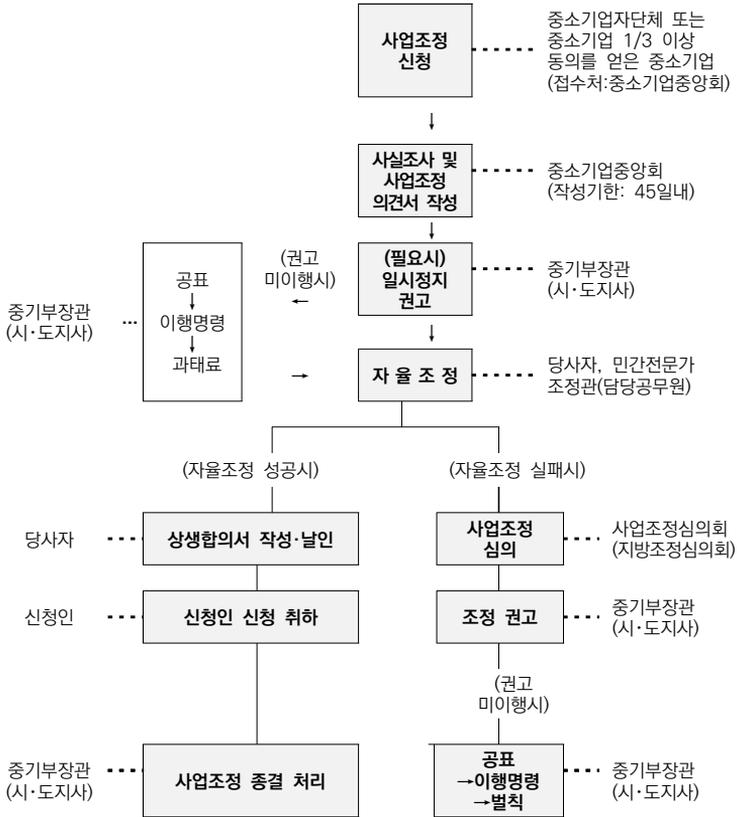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업조정 신청요건 검토 및 접수
  - (신청요건 검토) 사업조정 신청 요건 확인,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사업조정 접수) 완비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도에 송부

### 신청·접수

- 신청시기 : 해당업종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 조정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접수
  -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우 07242)
- 제출서류 :
  - (단체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 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등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전화) 044-204-7938  
(이메일)jm6676@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 (전화) 02-2124-3173~4  
(이메일) eh123456@kbiz.or.kr
- 기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참고사항

### ●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사업조정신청>접수현황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 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개점비용 :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권고 미이행 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일시정지 권고**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선정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제외 업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지원혜택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 선정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선정기준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 제출처
    -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3층)
    -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5층)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 서류는 공고문 참조

## 선정규모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 \* 선정현황 : '17년부터 '22년까지 총 37개사 선정(중소기업 29개사, 중견기업 8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문의처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증양회 기업성장실(02-2124-3146, 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02-3275-3093, 2106)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044-204-7432, 7449)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 [www.time-honored.or.kr](http://www.time-honored.or.kr)



## Q&A

Q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등과 기업을 매칭하여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주식가치 평가 자문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외감 법인 제외	주식가치 평가 자문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 지원대상

- 기업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내용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설명
  - 가업승계 세제 기본요건 충족여부 진단 및 세액 추정 등
  - 주식가치평가 및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세부담액 추정 등
- 상담방법
  - (일반상담) 온라인·전화·현장 상담
  - (주식가치평가) 현장 상담
  - \* 비상장 중소기업만 대상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전화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신청 → 자문위원 매칭
  - 전화 : 기업 기본정보 및 자문요청 내용 확인 후 자문위원 매칭 (☎ 02-2124-3165, 3146~7)

## 자문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65, 3146~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으로 인한 대리인 선임비용이 발생한 건
- 우대사항 : 없음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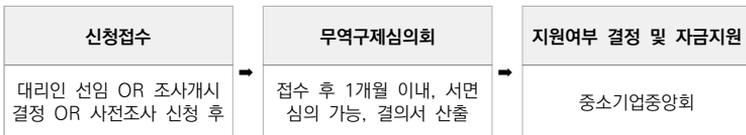
- ▶ 규정된 사항 없음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 및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신청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액 : 당해 선임계약서에 의한 비용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천만 원 미만, 동일 사안 재심사 요청 시 지원 한도 내에서 2회 추가 지원 가능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 ①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②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③ 대리인 수입비용 지출 증명서류(예:무통자입금증, 입금표 등)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약정서/신청서/지원신청현황/사용인감제)  
 ⑦ 계좌통장사본(비용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등의 통장 사본)
- 선정평가 : 무역구제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무역구제 지원예산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심의회가 심사 및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ybh311@kbiz.or.kr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hnyoung8@korea.kr

## 참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무역구제’ 페이지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무역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며,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른 성공보수는 제외됩니다.

**Q** 비용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정확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일까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비용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이뤄지나요?

**A**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또는 허위사실 제출에 의한 자금수령이 드러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 환수조치됩니다.

## 용어 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국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 우대사항 : 없음

### 신청제외 대상

- ▶ 중재절차에서 중소기업이 중재원에 납부할 비용
- ▶ 중재 판정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부담 비용
- ▶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등이 중재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며, 성공보수 등 기타 비용은 제외
-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 사안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제출서류 : ① 원신청서 및 서약서
  - ② 재신청 접수일 전후 30일 이내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③ 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 ④ 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⑤ 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 ⑥ 근 3개월이내 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⑦ 인 또는 법인인감증명
  - ⑧ 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⑨ 계좌통장 사본
  - ⑩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선정평가 : 상사중재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심의회가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심사 및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ybh311@kbiz.or.kr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hnyoung8@korea.kr

## 참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상사중재' 페이지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무역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며,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른 성공 보수는 제외됩니다.

**Q**

비용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정확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일까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어 설명

**중재제도란?**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중소기업이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정보력·행정력 미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중재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 우대사항 : 없음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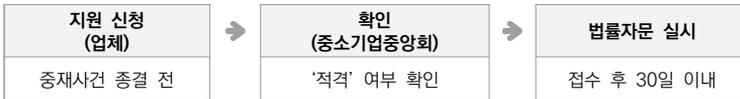
- ▶ 규정된 사항 없음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상사중재를 신청한 중소기업 등이 국제중재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2시간 기준)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앞으로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 선정평가 :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으로 '적격' 여부 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무역구제 지원예산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심의회가 심사 및 평가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ybh311@kbiz.or.kr

## 참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상사중재' 페이지 중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창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수출컨소시엄 사업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마케팅 전문 기업 및 해외 민간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수출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사전준비, 단체전시회 참가 또는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현지 활동, 사후관리 등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100%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이내
신청접수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온라인
지원규모	약 78개 컨소시엄 내외, 141.12 억원	약 75개 컨소시엄 내외, 158 억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 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수출 유관기관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없음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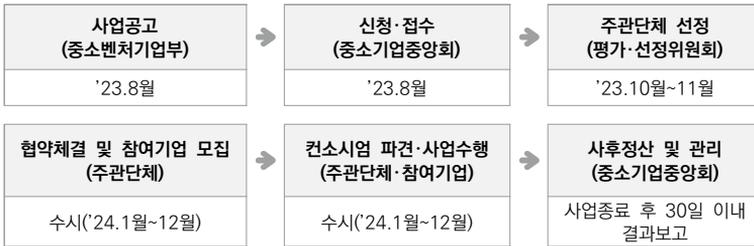
-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본 신용정보 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기업 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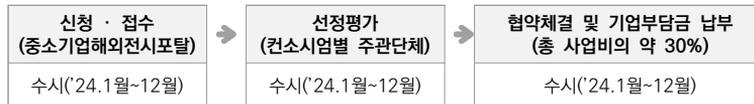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 되는 공통비용의 일부지원
- 지원비율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시기



- 참여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http://www.smes.go.kr/sme-expo/))을 통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메뉴 중 “사업신청→주관단체 사업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메뉴 중 “사업신청→수출컨소시엄(전시회)/(상담회)”
- 제출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하단 평가표 참조(수출컨소시엄사업 평가표)

구 분	하위항목	배점 (점수 차)	평가구분					비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계획 (45)	○[1단계] 사전 준비/교육 - 목표시장 진출전략(경쟁요소 분석 등) - 기업모집, 교육전략(부스연출, 상담기법 등) - 바이어 발굴, 매칭 계획 - 현지 사전마케팅 계획	15 (3)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전문가평가	
	○[2단계] 현지파견/온라인 전시 - 한국관 위치, 디자인, 현지화전략 - 상담장 운영계획 - 세부 파견일정 - 업체수요 반영 계획	15 (3)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3단계] 후속상담 및 사후관리 - 바이어 초청상담회 계획 - 기업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계획 -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	15 (3)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전략성 (10)	○(전시회) - 유망성 - 품목 전략성 - 신시장신품목 개척 노력	10 (2)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 (상담회) - 현지수행사 역량 - 품목 전략성 - 신시장신품목 개척 노력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주관단체 운영능력 (45)	○ 예산 및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등 운영능력의 적절성	5 (1)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정량 평가	
	○정부, 지자체 해외마케팅 사업실적(최근 3년)	5 (1)	5회 이상 5	3회 이상 4	1회 이상 3	없음 2			
	○해외마케팅 전담 인력 (검칙 제외)	전담인원수	2.5 (0.5)	5명 이상 2.5	4명 2.0	3명 1.5	2명 1.0		1명 0.5
		경력기간 최장 1인 기간	2.5 (0.5)	10년 이상 2.5	7~9 년 2.0	5~6 년 1.5	3~4 년 1.0		3년 미만 0.5
○주관단체 성과평가 결과*	30 (3)	상위 10% 이내 30	상위 30% 이내 27	상위 50% 이내 24	상위 60% 이내 21	상위 60% 초과 18	외부 기관		
가감점 (±10)	○ 가점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 참가전시회 정보(Review) 작성여부(+1점) - FTA 체결국 개최 사업 여부(+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의 발생 시) (+2점)	±10	*감점제외 천재지변, 해당국가 소요 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취소, 중도포기한 사례 로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 우 감점 제외						
	○ 감점 - 사업취소, 중도포기(각 -3점) - 참여기업 민원 접수(각 -2점)								
합계		100							

\* 신규단체는 직전년도 수출컨소시엄 참여 주관단체의 성과평가 평균점수를 적용

\* 사업 공고문에 따라 향후 세부내용 변경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무역촉진팀 : 02-2124-3291~6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go.kr](http://www.smes.go.kr/sme-expo.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공고명 : 202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
  - (경로)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go.kr](http://www.smes.go.kr/sme-expo.go.kr))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ESG경영 툴킷 마련 지원사업

ESG경영 패러다임 확산에 중소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선도기업 컨설팅 및 업종 맞춤형 ESG경영 안내서 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협회·단체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업종별 중소기업 5개사 내외 ESG수준진단 및 개선 컨설팅
  - 업종 특화 중소기업 ESG경영 이행지표 개발 및 실천 매뉴얼 제작
- 지원규모 : 협동조합·단체 5개 내외(중소기업 2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총 3억원 규모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3월 ('23년도 5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회원기업 수요조사 결과 등

- 선정평가 :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업종별 이행지표 개발 및 실천 매뉴얼 제작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ESG팀 02-2124-3158

### 용어 설명

**ESG경영 툴킷(Toolkit)** : 기업의 ESG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 (진단지표, 정책문서, 보고서 작성양식 등) 일체를 의미



## 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 확산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의 ESG경영 인식제고 및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 제공, 중소기업 ESG경영 툴킷(업종별 가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매뉴얼) 등 정보제공 및 ESG경영 관련 애로신고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없음(온라인 무료 교육 및 자료제공)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과정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 공급망 ESG 대응 위한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 (총 8강)

구분	차시명	교육내용
1	기후변화와 ESG 공시	ESG 규제동향·정보공개와 중소·중견 기업 대응
2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분쟁광물 대응방안
3	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환경목표 수립운영·환경정보공개
4	탄소중립	탄소중립동향·온실가스관리·E 효율화 방안
5	인권중심	공급망 인권·노동 평가지표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6	안전중심	산업안전보건 평가지표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7	윤리경영	윤리경영 이슈, 평가지표 및 관리방안
8	중소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중소 ESG경영·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 실무과정” 등 집체 교육 실시
  - ESG 경영의 이해 및 이슈, 공급망 실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실무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 방안 등
-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툴킷(Toolkit) 배포
  - ESG경영 업종별 가이드 : 업종별 ESG 현황, 관리지표,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
    - \* 해당업종 : 주택가구, 섬유·염색, 전기공업, 플랜트 건설·유지·보수, 조명
  -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안내, 작성양식, 참고사례 등
  - 중소기업 ESG경영 우수사례집 : 중소기업 주요업종별 ESG 현황, 중소기업 우수사례, ESG 요소별 우수사례 및 실천방안 등
  - ESG 경영 실천 규정례 : ESG 평가 대응을 위한 기본 규정 참고(안) 제시
- ESG 애로신고센터 운영
  -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청취 및 개선 위해 온라인 상담센터 설치·운영
  - 상담분야 : 대기업 요구, 평가비용 과다, 교육안내 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 활용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ESG 지원 홈페이지(esg.kbiz.or.kr)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ESG팀 02-2124-3158

### 용어 설명

**ESG경영 툴킷(Toolkit)** : 기업의 ESG경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진단지표, 정책문서, 보고서 작성양식 등) 일체를 의미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삼성전자)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사업신청은 공장별로 가능
	* 우대사항 : 위기관리지역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코로나 19 대응기업	* 우대사항 : 취약지역·계층,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FEMS·ESCO 도입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내용	유형 1-S	유형 1-S 삭제
	유형 1-A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유형 1-A 지원금액 최대 1.5억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신청은 공장별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우대사항 : 취약지역·계층,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FEMS·ESCO 도입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
- ▶ (도입기업) 동일 사업기간 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 단, 지원 사업이 집중AS 기간 중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 지원규모 : 약 200억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A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중간기 수준 이상	최대 1.5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B	스마트공장 구축목표 기초 수준 이상	최대 6천만원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분기 중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견) 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현장실사 → 선정평가위원회 → 원가계산 → 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현장실사) 사업계획서와 도입기업 현장의 연계성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현장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도입기업 선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 4373)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182번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경우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3정5S, 품질/생산성 향상 등)와 물류/자재관리 등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맞춤형 공급기업 검색'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기업 중에서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공급기업의 구축 전문 분야와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고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검토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원규모(1-A 최대 1.5억 / 1-B 최대 6천만)은 총 사업비 인가요, 지원 금액인가요?

**A** 공고에 명시된 지원 규모는 지원 금액을 뜻합니다. 예컨대 1-B 유형의 경우 총사업비가 1억일 때 최대 6천만원까지 구축 비용이 지원됩니다.

**Q** 본 사업은 삼성전자(삼성전기, 삼성SDI) 유관 기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삼성과 유관 기업이 아니어도 본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용어 설명

**3정5S** : 3정(정위치, 정량, 정품),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사업장 관리의 기본 요소가 됨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포스코)

Industry 4.0 시대, 미래형 제조공장 기반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 사업신청은 공장별(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	* 사업 신청은 공장별로 가능
	* 우대사항 : 뿌리기업,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코로나 19 유관기업 및 피해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코로나 19 유관기업 및 피해기업 우대 사항 삭제
지원내용	유형 1-기초 지원금액 최대 8천 4백만원	유형 1-기초 지원금액 최대 6천만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 신청은 공장별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우대사항 : 뿌리기업,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입기업)동일 사업기간내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기 신청한 기업. 단, 지원 사업이 집중AS 기간 중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 지원 규모 : 약 30억원

유형		지원대상	기업당 지원금액	비고
유형1	고도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구축 목표 수준 중간1 이상	최대 2.4억원	정부·대기업 : 참여기업 6 : 4 매칭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구축 목표 수준 기초 이상	최대 6천만원	
유형2	기초	국내 중소 제조기업 중 구축 목표 수준 기초 이상	최대 2천만원	정부·대기업 100%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분기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행사·이벤트 페이지 활용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우대사항 증명서류 등
-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 인터뷰 - 3차 최종심사 등
  - \* 포스코 스마트공장 추진지원단 위원 공동 심사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4371)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1 문의)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 공고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181번
  - (홈페이지)





## Q&A

**Q**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사업 참여 기업들이 QSS 컨설팅과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 지도 활동 등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공급기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맞춤형 공급기업 검색'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기업 중에서 도입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공급기업 선택에 대한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공급기업의 구축 전문 분야와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고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검토한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원규모(1-고도화 최대 2.4억 / 1-기초 최대 6천만)은 총 사업비 인가요, 지원 금액인가요?

**A** 공고에 명시된 지원 규모는 지원 금액을 뜻합니다. 예컨대 1-기초 유형의 경우 총사업비가 1억일 때 최대 6천만원까지 구축 비용이 지원됩니다.

**Q** 본 사업은 포스코 유관 기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포스코와 유관 기업이 아니어도 본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용어 설명

**QSS 컨설팅** : 포스코 생산 현장 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를 적용한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상승 시 영세한 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요건	아래 ①, ②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기본요건 : 모두 해당해야 함 -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 ② 공급원가 신청요건 : 하나 이상 충족 필요 -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 -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최저임금 인상율이 3년 평균 이상	※ 공급원가 변동요건 삭제 아래 기본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

### 지원대상

- 신청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
- 협의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공기관(자체계약) 등
- 신청요건 : 아래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모두 해당해야 함)
  -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

- 중앙회(협동조합)를 경유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 진행 시 별도 요건 및 절차 불필요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을 경우
-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

**지원내용**

- 납품대금(공급원가) 상승분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신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를 진행
  - 위탁기업과 협의가 결렬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진행
- 진행 협의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로 서류검토
  - 그 후 위탁기업과 30일 내 협의. 다만 위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단축



※ 합의 불성립시, 분쟁조정 신청(수탁, 위탁기업/조합/중앙회→중기부)

**신청·접수**

-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 (수·위탁거래 계약기간 내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 02-2124-3206, 3207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상담센터-납품대금조정협의
-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kbiz.webcost.co.kr)



## Q&A

**Q**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실제 지출과 관련한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세금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공급원가 변동 확인을 위한 기준서류인 수·위탁계약서 사본, 경쟁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와 낙찰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위탁기업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요청 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정협의 거부 → 분쟁조정 → (시정 필요성 인정될 시)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공표 → 공표 후 1달 내 시정명령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

### 용어 설명

**수탁 · 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이하 “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 개요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조달계약 체결
- 신청자격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② 신청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 지정요건 :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 수 10개 이상 등

#### 신청제외 대상

- ▶ 지정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 ▶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의 과반수가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경우
- ▶ 중견기업, 대기업 및 수입품이 없는 세부품목. 다만 중견·대기업의사업 진출 또는 수입품 유입 가능성 등 지정 필요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 ▶ 최근 5년간(추천년도포함) 3회 이상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에해당되는 경우 등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개요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 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
  - 구매기관 :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추천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中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나의업무-소액수의계약추천-대상제품 현황에서 확인
  - 추천금액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요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 구매기관 :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추천대상 :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 물품 및 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2억원 미만)

####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적격조합 확인제도

- 개요 :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청요건**

- ▶ 조합원의 1/2 이상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 정관 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허용 명시
-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 ▶ 상근인직원 2명 이상 공공구매 교육 이수
- ▶ 조합의 해당 경쟁제품 시장점유율 100분의 50 이하(레미콘 및 아스콘은 100분의 45 이하)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유효기간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22~'24년 적용)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中企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2인 견적 수의계약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 협동조합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 적격조합 확인제도 운영
  - 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조사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서류 접수(2~3월중)
- 신청방법 : 추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각 증빙자료, 신청제품의 특성 및 지정 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문기관(전문가) 작성 보고서 등
- 추진절차 : 신청서류 접수(2~3월)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4~5월) → 신청품목 공개(5월) → 반대의견 접수 및 검토(5~7월) → 추천제품 예고(7월(10일간)) → 제품 추천(7월말)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 02-2124-3241~4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g.go.kr](http://www.smpg.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참고사항

- ① 이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품목 신청 및 설명회 개최안내

- (경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언제 하나요?

**A**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3년마다 공청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정됩니다. 현재 지정된 중기간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22.1.1~24.12.31이며, 이후 '25년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경쟁제품은 '24년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Q** 적격조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발급희망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메일(009mae@kbiz.or.kr)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요건 및 신청양식 목록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자료실에 있습니다.

**Q**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판로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1개월 이내 입찰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이행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 ① ‘행복한 중기씨’ 대학생 서포터즈 통한 블로그 운영
    - (서포터즈 운영) 연간 30여명의 대학생 서포터즈 통해 카드 뉴스, 영상 등 콘텐츠 제작
    - (블로그) 누적 방문자 700만명, 누적 콘텐츠 2,400여개에 달하는 파워블로그
  - ②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 전국민 대상 중소기업 관련 동영상, 포스터 등 부문별 콘텐츠 접수 및 수상
- 대상별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교육 통한 인식개선
  - (내용) 직업계고 학생 및 교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 제공 및 중소기업 취업 관련 정보 전달
- 서울경제신문 공동 행복한 중기 일자리 대상 시상
  - (목적) 법인/개인 부문 연간 우수 중소기업 포상(고용안정·창출, 성장성, 복리후생, 연구개발 등)

## 신청·접수

‘행복한 중기 일자리대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매년 10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적조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선정평가 : 기업경영기간, 고용안정성 등 정량 평가 및 고용안정 제도 운영 등 정성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고용안정, 인식개선 등 중점으로 심사
- 선정규모 : 13개 社 시상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2, 3275 smsfes@kbiz.or.kr

##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 공고

- 공고명 : 2023 행복한 중기 일자리 대상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행사·이벤트 - 포상신청접수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행복한 중기 일자리대상 수상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나요?

A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 노력을 중점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육아기휴직제도 권장 등 고용 유지 관련 지원정책 참여 내용과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인증 취득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유도

### 사업내용

- 정부·지자체에서 인증·포상 받은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 발굴
  - 재무성과, 신용등급, 영업이익, 낮은 퇴사율, 종사자수 10인 이상 등 기준
- 위치 기반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소재와 채용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구직자 주변에 있는 우수기업 지도상 확인, 지역·업종·복지 등 중소기업 맞춤형 검색 가능
- 우수 중소기업 및 우량 일자리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인증내역·재직자 평가/리뷰·임금·복지·재무·채용공고 등
  - 정보제공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통한 일자리정보 상시 업데이트

### 지원대상

- 선정조건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단체에서 일자리·R&D·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우수성·발전가능성을 인증·인정받은 중소기업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 하는 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선정

- ▶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단,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난 경우 BB 이상 기업만 해당)
- ▶ 최근 2년간 영업이익 창출기업
- ▶ 최근 1년 퇴사율 평균 15%미만 기업
- ▶ 최근 3년간 체불·체납·산업재해 명단공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단, 건설업 30인, 스타트업 5인 이상 기업)

● 선정 제외 대상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 선정 당시의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각종 언론보도 또는 소송 제기 등으로 참가기업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소개 및 우량 채용공고 선별 통한 일자리 매칭지원
  - 타 기관 플랫폼과의 연계 통해 “신입/정규직/연봉 3,000만원 이상”의 우수공고 전용채용관 구축하여 채용 정보 홍보, 인재 추천 등 매칭 지원
  - 플랫폼 선정 기업 대상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통한 구직자-구인기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신청·접수

- 선정 시기 : 매년 8월 당해 기업 선정
- 등재 시기 : 매년 11월 중순

##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8, codms9745@korea.kr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5, kby0612@kbiz.or.kr
- 문의 이메일 : kbiz\_job@kbiz.or.kr

## 참고사항

- 참 괜찮은 중소기업 사이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참 괜찮은 중소기업’ 선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전체 32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3만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서 신청과 관계없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우선 정부유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이노비즈 등 인증을 받으셔야 선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신용등급 등 재무지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니 기업 재무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고용신청 대행, 입국 후 교육,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제도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총 12만명	총 16.5만명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뿌리·지방·중견기업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 외국인력 관련 제도 개선
  - 수시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 국회,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건의
  - 정책토론회, 제도 설명회를 통한 사업주 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본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 지원규모

- 2024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5,000명

구분	총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23년 대비)	(+45,000)	(+16,000)	(+2,600)	(+1,050)	(+2,380)	(+2,700)	(+1,113)	(+9,500)
신규입국	143,530	77,440	5,000	14,030	8,650	5,440	12,970	20,000
재입국	21,470	17,560	-	1,970	1,350	560	30	-

※ 제조업 : 광업 포함, 농축산업 : 임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필요시 업종 간, 신규·재입국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사업장별 고용한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일반	택배
1명 ~ 10명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	4명	12명
11명 ~ 50명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6명 ~ 10명	6명	18명
51명 ~ 100명	35명	11명 ~ 15명	10명	30명
101명 ~ 150명	40명	16명 ~ 20명	14명	42명
151명 ~ 200명	50명	21명 ~ 100명	20명	60명
201명 ~ 300명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301명 이상	80명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점수제

점 수 제

□ 기본항목

- ①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 비율(30점, 22.4점~30점, 편차 0.4점)
- ③ 신규고용 신청인원(20점, 19점~20점, 편차 0.2점)
-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20점, 14점~20점, 편차 2점)

□ 가점항목

- 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사업장(+5점, 인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 ② 사업주 교육이수 사업장(+2점)
- ③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각 +3점)

□ 감점항목

- 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성폭행·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②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각 -3점
- ③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10점(2년간)
- ④ 출국만기보험 체납사업장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 미납 횟수		
	2회	3회	4회 이상
연체 1인당	1	2	3
감점 상한	5		

⑤ 가족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업장

처리결과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		
		3회	2회	1회
감점	5점	5점	2점	1점

### 점 수 제

-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점)
- ⑦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각 -5점
-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5점

□ 동점 사업장시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① 내국인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 ⑤ 전산 추첨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및 건축물 대장 등 증빙서류
- 사업장 및 기숙사 내/외부 사진 총 14가지(전경, 난방시설, 잠금장치 등)
-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http://fes.kbiz.or.kr/> → FAQ →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한 서류 양식은 어디 있나요?’ 클릭)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02-2124-3282, 3285, 4390~3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 (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3년 동안 고용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재입국특례자(舊 성실근로자)도입 등으로 최장 9년 8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되나요?

A

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건 >

조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 부족 업종	(10)식품 제조업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부리 산업	(31)선박 및 보트 건조업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 신규 한도 1인 상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부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41-589-8114	
특정 지역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용어 설명**

**재입국특례자 제도(舊 성실외국인근로자) :** 중소기업의 숙련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재부여하는 제도

**방문취업제(H-2) :** 중국, 구소련 국적의 무연고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취업 업종을 확대하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 제도입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공제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li> <li>- 폐업, 사망, 퇴임, 노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6월부터 4개 공제사유 추가 예정</li> <li>8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li> <li>-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li> </ul>
중간정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시 중간정산 가능 예정</li> </ul>
부금내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대출/ 의료, 재해(무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대출/ 의료, 재해, 화생, 파산대출(무이자)</li> </ul>
가입자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가입자 혜택 추가</li> <li>재가입장려금 지급(24.4월부터 지급)</li> <li>정책보험바우처 지급</li> </ul>
재취업, 재창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기지원패스트트랙 신설</li> <li>-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한 재취업, 재창업 교육 지원</li> <li>*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li> </ul>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li> <li>전기·가스·수도사업</li> </ul>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li> <li>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li> </ul>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영상·정보서비스</li> <li>도·소매업</li> </ul>	매출액 5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li> <li>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li> </ul>	매출액 3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사회복지서비스</li> <li>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li> </ul>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li> </ul>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li> </ul>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신청제외 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지원내용

- 8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희생파산\*
  -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 예정
  -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지급조건) 노령의 경우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시 지급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 무관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실효세율 약 3%내외)로 저율과세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이하 *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5,675만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 × 6.6% =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 × 16.5% =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 × 26.4% =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 × 38.5% =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200만원 × 41.8% = 836,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200만원 × 44.0% = 880,000원
5억원 초과	46.2	200만원 × 46.2% =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 개정 시 변경 가능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회생, 파산대출(무이자)

● **상해보험 가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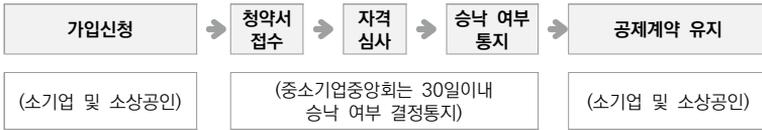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1년간)
-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역량강화 · 힐링캠프 · 현장강의 등 교육 지원, 심리상담 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노무·회계 등 8개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몰, 건강검진, 장례식장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 중간정산 가능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희생파산 4개 공제 사유에 대해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예정
- 장기가입 혜택
  -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신청 및 추천 절차 후 혜택 제공
- 재가입 장려금 지원
  - 재가입 후 6개월 경과시 5만원 지원('24.4부터 지급)
-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 3대 정책보험(풍수해보험·자영업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 재기지원패스트트랙 구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폐업공제금 수령자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 가입

- 가입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월 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 가입방법 :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 서류제출 : 노란우산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가입절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 문의처

- 노란우산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제도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신청제외 대상

- ▶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육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지원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규모

대출종류	대출 사유	지원 규모 (연간)
부도매출채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외상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5억원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32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	•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6,075억원

● 대출조건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구분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 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4.25~9.15%	신용등급별로 연4.25%~9.99%
대출기간	3년(6개월거치)	180일 이내	1~3년
지원한도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담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연대 입보</li> <li>• 부동산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 대출한도상향 및 이자율 인하</li> </ul>		

●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연1.0~3.0% 감면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거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 부금납부

● 부금종류 (총 납부액 1억원 한도)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 지급이자 등

- 장려금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지급
- 만기후 해지시 만기이자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 가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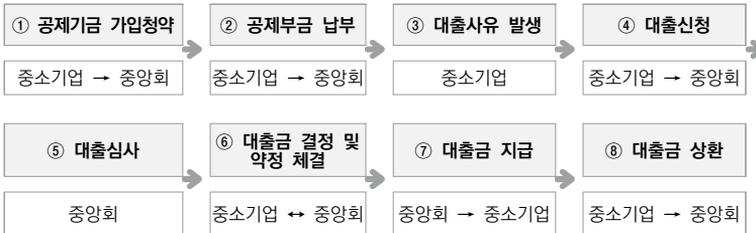
● 가입 : (인터넷, 방문, 팩스)

● 제출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실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부금잔액의 1.5배 이내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 대출 가능)  
단,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금잔액내 대출만 가능)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

## 처리절차



##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ARS 2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Q&A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부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매출채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부도매출채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 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대출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자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이차보전** : 특정부문에 저금리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가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



##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 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일반보험사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조건 : 공장, 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등 시설소유자 및 임차자 등의 배상책임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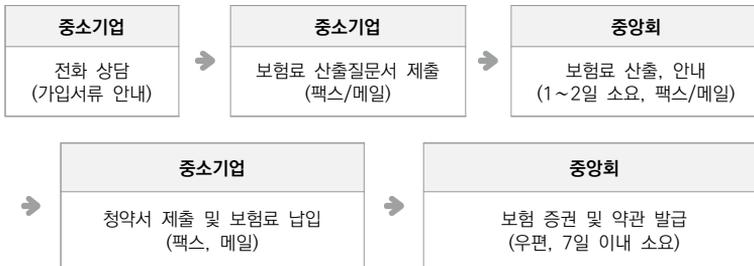
구 분	보장내용
화재공제	공장 및 일반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기업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를 포함,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재산종합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내 모든 위험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 (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
근로자재해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
소상공인간편실손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을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구 분	보장내용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실손비용을 보장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 위해 시장진출의 기회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

- 일반보험사 대비 2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 확대
  - 도금, 비발포 플라스틱, 창고, 목재가공 등

## 신청·접수

- 사업시기 : 연중 사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공제상품별 설문서, 건축물 대장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일반적인 업종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요율 및 협정요율 등 적용
- 추진절차 :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 문의처

---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전화. 02-2124-4357~8, 팩스. 0502-397-0050, 이메일 : insbiz@kbiz.or.kr
-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www.insbiz.or.kr](http://www.insbiz.or.kr))



##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조건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보증에 한함
- 우대사항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 신청제외 대상 : 민간계약은 보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금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금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지원규모 : 동일기업 보증한도 없음
- 지원금액 : 보증한도범위내 보증 (\*보증한도범위 산출은 Q&A)

## 신청·접수

- 사업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에서 상담 및 신청
- 제출서류 : 한도거래보증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 한도 약정 부금액
- 추진절차 :
  - 약정 신청



- 보증서 발급(청약)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 : 02-2424-4341~2, 팩스 : 0502-397-00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보증공제(www.gbiz.or.kr)



## Q&A

Q

###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교육청 학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 완화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업상 필요, 거래처 요구 등 PL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 우대사항 :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 PL보험지원사업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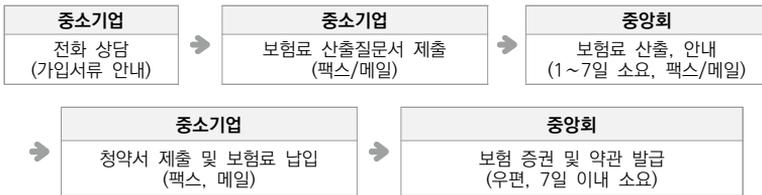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일반보험사 대비 20%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 제공
  -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 지원규모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파주, 포천 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업체당 최대 100~20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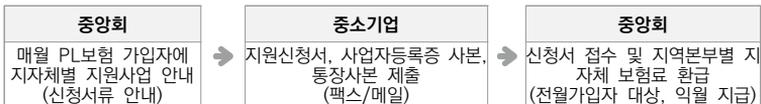
## 신청·접수

- 사업시기 : PL보험사업은 년중 접수 (지자체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상이)
- 신청방법 : 중소기업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질문서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일반적인 업종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
- 추진절차
  - PL보험 가입



\* 참여보험사(6개사) : 삼성화재(주간사), 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 지자체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전화 : 02-2424-4351~4, 팩스 : 0502-397-0200
- 홈페이지 : 중소기업PL단체보험(www.plkorea.com)

## 참고사항

- ①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집행시기 및 예산이 상이
- ② 당월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익월 문자, 팩스, 이메일 신청 안내



## Q&A

Q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가입품목 : 여러 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전체품목/일부품목)으로 가입
-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
-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 제품 등

→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임)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	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 확산 지원	별도 공고 없음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158
2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접수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244
3월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ESG경영 톨킷 마련 지원사업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ESG경영 톨킷 마련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단체 모집 안내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158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교육 참여학교 모집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275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275
4월	재기지원패스트트랙	노란우산-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357
5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포스코)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392
6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2024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4313
11월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2024 행복한 중기 일자리 대상	중소기업 중앙회	02-2124-3272
예정	2024 홍공 원구 및 게임용품 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원구 공업협동조합	02-795-9505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024 일본 도쿄 스마트팩토리 엑스포 수출컨소시엄	동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5
	202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의료기기 아랍헬스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070-8892-3726
	2024 미국 뉴욕 섬유 텍스월드 총계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02-528-4054
	2024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계 소비재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02-2278-7891
	2024 프랑스 파리 총계 섬유 프레미에르비종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섬유수출입협회	02-6284-5002
	2024 일본 도쿄 식품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070-4048-1380
	2024 홍콩 총계 보석 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47-0802
	2024 중국 광저우 치과의료기기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02-754-5921
	2024 중국 광저우 총계 화장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미용산업협회	02-765-7068
	2024 중국 상하이 총계 패션소재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패션소재협회	02-576-7248
	2024 베트남 호치민 섬유 사이공텍스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02-528-4054
	2024 일본 오사카 금형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2024 홍콩 총계 전자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정보기술연구원	070-7093-9888
	2024 독일 쾰른 의료기기, 미용, 스포츠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무역협회	02-6000-5575
	2024 중국 광저우 수출입 상품교역회 총계 수출컨소시엄	동일	(재)전라북도경제동성진흥원	063-711-2044
	2024 미국 휴스턴 해양플랜트 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972-6477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024 중국 상하이 화장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대한화장품협회	02-785-3898
	2024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주)글로벌에프엠	02-6933-7237
	2024 중국 상하이 정수기 정수 및 수처리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02-594-1100
	2024 미국 솔트레이크 섬유패션 하계 아웃도어용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02-3454-1611
	2024 중국 광저우 세라믹스 수출컨소시엄	동일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02-363-0361
	2024 태국 방콕 금형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2024 베트남 호치민 건축건설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건축공업협동조합	02-780-4411
	2024 프랑스 파리 추계 섬유 프래미에르비종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섬유수출협회	02-6284-5002
	2024 미국 라스베이가스 코스모프르프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070-4327-5366
	2024 일본 도쿄 라이프스타일 위크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주)글로벌에프엠	02-6933-7237
	2024 일본 도쿄 문구 및 사무용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02-2278-7891
	2024 중국 상하이 추계 패션소재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패션소재협회	02-576-7248
	2024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065
	2024 중국 광저우 화장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대한화장품협회	02-785-3898
	2024 이태리 베로나 석재전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2024 일본 치바 농자재&기술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32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024 홍콩 글로벌서비스 모바일전자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4
	2024 독일 쾰른 가구 수출컨소시엄	동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070-5088-1806
	2024 중국 상하이 소비전자기술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02-2658-0958
	202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화장품 뷰티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5
	2024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석유 및 가스산업전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032-234-3131
	2024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메디카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070-8892-3726
	2024 중국 광저우 국제 애완동물 및 관상어 용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펫산업수출협회	02-359-3853
	2024 독일 뮌헨 섬유패션 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02-3454-1611
	2024 인도 뭄바이 금형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2024 중국 상하이 국제 환경보호 박람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환경보전협회	02-3407-1542
	2024 호주 시드니 건축 시드니빌드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	02-6203-7753
	2024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호스피탈라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070-8892-3726
	202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라이빗 라벨(PLMA)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14
	2024 미국 라스베이가스 디지털 사이니지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02-3014-5721
	2024 홍콩 주얼리&젬아시아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47-0802
	20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전기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1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2024 태국 방콕 펌프 및 밸브 산업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펌프공업협회 조합	031-957-5850
	2024 베트남 호치민 의료기기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코엑스	02-6000-8003
	202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실험장비 아랍랩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과학기술기공업협동조합	02-725-4492
	20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석유 및 가스산업전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032-234-3131
	2024 프랑스 파리 화장품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동일	(주)글로벌에프앤	02-2042-3030
	2024 중국 광저우 소비자재 추계 캠페어(3기) 수출컨소시엄	동일	사단법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02-2138-7997
	2024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에너지 효율화 기술 수출컨소시엄	동일	한국EMS협회	02-6092-1117
상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21
	사업조정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73-4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46-7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61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61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6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07
	「참 관참은 중소기업」 플랫폼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75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1666-591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ARS 2번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124-4357-8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424-4341-2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동일	중소기업중앙회	02-2424-4351-4

## 제7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비용제도) 신청인(중소기업)만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신청접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술보호율타라 내 온라인 접수 기능 신설 (비용제도) 조정 성립 시 피신청기업(중소기업)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법무지원단	(지원기간) 최대 30시간 이내(최대 6개월)	(지원기간) 최대 60시간 이내(최대 3개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국내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	일부 해외국가까지 지원 확대
중소기업 선도기업 육성	기본역량 강화 지원 중 법무지원단 최대 30시간 무료	기본역량 강화 지원 중 법무지원단 최대 60시간 무료
상생결제제도	민간(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공(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기업간 거래공정화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

### 지원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 :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회가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 지원
- 지원조건 : 공정거래교육 :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법률상담·자문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 제시

- \* 협력재단 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 소송비용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 불성립 및 중단되어 민사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지원(소송비용의 50%, 최대 8백만원)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 공정거래교육 :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 지원

## 신청·접수

- 법률상담 :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357+내선9) 또는 전국 신고센터\*
    -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주요연락처 참조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유 선 : 대표번호 135+내선9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공정거래교육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메일 : med@win-win.or.kr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유 선 : 02-368-8949/ 이메일 : med@win-win.or.kr



## Q&A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공정신고센터 주요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18	기계산업동반성장 진흥재단	032-680-3903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표번호 1357+내선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33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한국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3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6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6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87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5	한국전기공사협회	02-3219-0516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50	한국의류산업협회	02-528-0111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대한건설기계협회	02-2055-3606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3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 조합연합회	02-2280-8220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6381
전북지방중소 벤처기업청	063-210-6446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2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02-783-695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02-783-1711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2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02-813-1735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6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연합회	02-3481-9906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	한국금속열처리공업 협동조합	02-712-1072
벤처기업협회	02-6331-7002	한국골판지산업협동조합	02-3474-712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02-3432-5301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02-3488-6182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02-710-0832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02-830-0233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2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02-780-2611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02-556-0301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02-536-2141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070-5029-3714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02-786-8291	(사)한국제화산업협회	02-2234-9131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02-711-098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6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02-716-1611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02-454-5114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51	(사)서울의류협회	02-865-9213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02-782-5611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2-855-5871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051-264-0197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031-431-7629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02-2025-3100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0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053-756-6681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331	(사)IT여성기업인협회	02-6956-9952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협동조합	02-3431-3001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02-597-9411	(주)전국기아오뚜기연합회	02-2239-0700
(사)한국모장기계협회	02-6123-3051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연합회	02-2038-2558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032-423-9305	한국베어링산업협회	02-784-1705



## 성과공유제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

###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사업내용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http://www.benis.or.kr))을 통해 확인
  - 성과공유제 핵심 요건
    - ① 협력활동 목표 합의
      - \* (제안방식)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
      - \*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
    - ② 사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시기)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공유계약 체결
      -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1)성과공유과제의 목표, 2)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사항, 3)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③ 성과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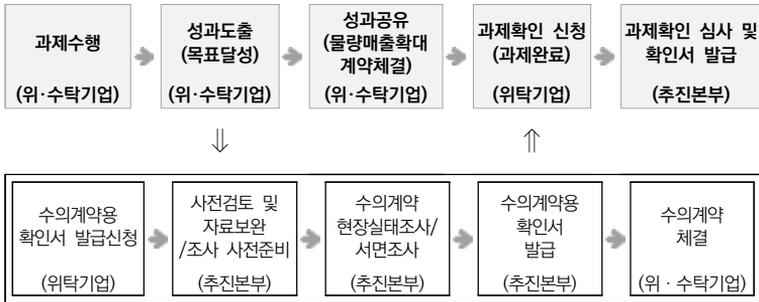
- \* (성과공유 방법) 성과공유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성과를 공유
- \* (성과공유 방식) 현금보상, 물량·매출확대

● 참여절차 : “등록 → 확인” 2단계 절차

① 성과공유과제 등록 :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 :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 공유 실적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 044-204-7924  
(이메일) hongyeol@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성과확산부) : (전화) 02-368-8793  
(이메일) benis@win-win.or.kr
-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ww.benis.or.kr



## Q&A

**Q**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 제도가 2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성과공유제는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과 기업간' 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와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www.benis.or.kr](http://www.benis.or.kr) (문의처) 02-368-8793

②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홈페이지) [sanhakin.mss.go.kr](http://sanhakin.mss.go.kr) (문의처) 055-751-9035

### 용어 설명

**등록과제** : 성과공유과제 등록신청 과제 중 성과공유 핵심요건을 갖춘 성과공유계획을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부터 승인받은 과제

**확인과제** :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중 목표달성, 공동노력 및 성과공유 실적을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부터 확인받은 과제



##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 (winwinnuri.or.k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사업매칭 게시판)〉

구분	'23년	'24년
배경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간 사업 매칭 게시판을 통해 양방향의 지식과 정보 교류	중소기업이 역량 교류를 원하는 사업, 아이디어, 아이템 등을 게시
매칭대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운영방식	중소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에게 매칭 희망 사업 등 게시	중소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에게 매칭 희망 사업 등 게시

### 지원대상

- 국내 모든 중소기업 대상
  - 단, 프로그램 운영은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지원범위

- ▶ 협력사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 계열사 오픈 :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부분 오픈 :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
- ▶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
- [상생누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분야]



## 이용절차

- 상생누리(<https://www.wininnuri.or.kr>)를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 단계별 세부사항

- ▶ 회원가입
  - \*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 필요
- ▶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 \*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 ▶ 선정결과 확인
  - \*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하고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 중 신청 및 참여이력을 통해 선정 결과 확인
- ▶ 프로그램 참여
  - \*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 지원규모

- 제한없음

- \* '23년 지원현황 : 304개 대기업 공공기관 17,718개 프로그램 등록운영(11월 말 기준)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2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 02-368-8487
- 홈페이지 : 상생누리(<https://www.winwinnuri.or.kr>)



## Q&A

**Q**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업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업명 혹은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업 회원가입 시 주거래기업 신청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예비 창업자 및 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한 기업 당 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생누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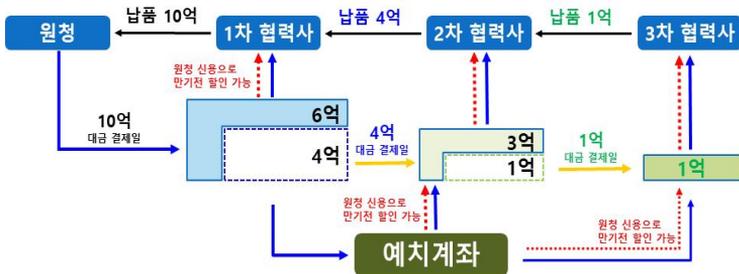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원청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입니다.

원청이 상생결제 시 ①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약정계좌에 이체하면 ②결제일에 1차 협력사 및 예치계좌(대·중소협력재단 명의)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③2차 이하 기업은 각각의 결제일에 예치계좌에서 대금지급



\* 원청이 정부·지자체(교육청 포함)인 경우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 금지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원청범위	민간(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공(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제도내용

-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 원청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
- 자금 유동성 개선
  -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 지급 가능
- 세액공제 혜택 및 금융수익 발생
  -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이자 수익 발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지급 보증의무 면제
    -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 이용절차

-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원청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 \* 원청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 사전에 확인 필요
    - \* (도입 금융기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 총 13개 금융기관 운영 중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 \*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 참고

## 문의처

-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Q&A

**Q** 원청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위 거래처에 구매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거래처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화 규정을 준수 바랍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Q** 상생결제로 하도급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 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장려금** : 하위 거래처에 대금을 보관하는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분기별로 지급

**환출이자**: 하위 거래처가 조기 현금화 시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상생결제 이용기업에 지급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주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산업내 선도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 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제한된 기업 등

### 신청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 선도기업 :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 주관기업 제한 요건

- ▶ 업종별 협·단체(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신청 대상)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

\* 신청자격의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소비재 :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콘텐츠와 해외 방송 채널, 미디어, 온·오프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에서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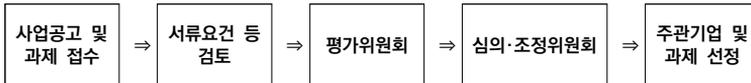
〈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

사업 유형	세부내용	지원규모
소 비 재	○ (K콘텐츠)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유통망)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방송 채널 및 SNS,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개척 지원	
산 업 재	○ (인프라)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 지원	* 산업재 프로젝트유형은 1억원 한도
	○ (프로젝트)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현지수주 교섭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050사 내외
- 지원금액 : 150억원 내외

## 신청·접수

- 공고시기(예정) : 1월, 4월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 내 사업공고 참고  
gw@win-win.or.kr 이메일 접수
- 선정평가 : (1차) 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조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주관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 내 선도기업)의 운영계획 타당성,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9, 750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473, 764, 758
- 기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 홈페이지

## 참고사항

< 전년도 사업공고 >

- 공고명 : 2023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1차)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http://www.win-win.or.kr)) 홈페이지 재단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사업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본 사업을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참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의 선도기업일 경우 가능하며,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 참여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지원 활동이 동반 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기초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3일, 무료)
    - 보안전략 :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

- 법률자문 :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진출 기술보호 :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
  - 인적보호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경업금지약정 계약 작성 지원
- ② (심화자문)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1, kim2006@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18, consulting@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전문가 현장자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Q** 자문신청 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 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지원기간) 최대 30시간 이내(최대 6개월)	▶(지원기간) 최대 60시간 이내(최대 3개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투자기업
- ▶ 휴·폐업기업
- ▶ 기타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 컨설팅

- 지원시간 : 지원 세부내용에 따라 1개 기업당 1회에 걸쳐 최대 60시간 이내 법률지원(단, 일반 자문은 최대 10시간 이내)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내 '법무지원단'을 통한 신청 방법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6, shcha79@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02-368-8706, law@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올타리-법무지원단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기술보호지원반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대응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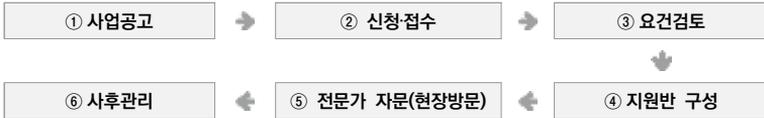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자문 최대 2일(무료)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상시 접수(support@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1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신청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술보호울타리 내 온라인 접수 기능 신설
비용제도	신청인(중소기업)만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조정 성립 시 피신청기업(중소기업)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올타리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4-204-7786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 02-368-8768, 8769  
(solomon@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Q&A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기업
- ▶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76, yis0321@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02-368-8714, forensic@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올타리-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디지털포렌식이란 무엇인가요?

**A**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 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기술 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 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기기가 많아 사업에서 정하는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듯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분석을 의뢰하는 기기가 지원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사업의 지원내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사업에서 최대 지원하는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유희·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기본역량강화(관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조직·교육·인력관리에 대한 자문비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및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 지원
  -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의 일부 지원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 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 기술자료임치(최대3건, 90만원 한도) ③ 법무지원단(최대 60시간 무료) ④ 기술보호 정책보험(보험료 70% 지원에 3% 추가지원)	⑤ 기술지킴서비스(5년 무료) 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이내, 4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간접지원(전문가 또는 전문공급기업을 통한 자문·서비스 지원)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ltp300@win-win.or.kr)(’24년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국내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	▶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련 법률비용 지원 (일부 해외국가로 지원범위 확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기업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 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등 특정된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어 등과 같은 사업의 지원과 무관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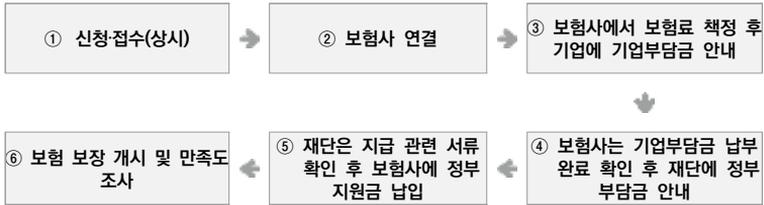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 선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li> </ul>
보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또는 3년 중 선택</li> </ul>	
보험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입 즉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li> </ul>
보상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중 선택 (해외 1억원)</li> </ul>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율 30%)</li> <li>* 산업별·매출별·보상금액별 상이</li> </ul>	
보험료 할증·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5년간 기술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li> <li>3년 계약 시 연 비율의 250% 적용</li> </ul>	

- 지원금액 : 보험료의 70% 정부 지원
  - \*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율에 최대 10% 추가 지원
- 보장하지 않는 내용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과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상불가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지원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서류, 보험료 추가지원 관련 서류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2, lgwlgw@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 02-368-8714, insurance@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지원내용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 방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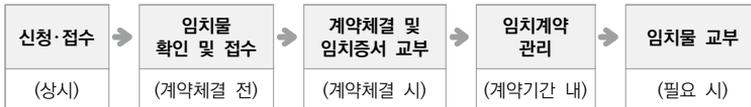
##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차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차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차수수료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신청·접수

-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http://www.kescrow.or.kr)) 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 처리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보호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http://www.kescrow.or.kr)



##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말간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 (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 기타 참여제한 상태인 기업

###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보유 기술 유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 신청·접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별도 공고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 등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및 신청양식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 공지사항 게시판 內 제출서류 양식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일반·해외연계) 최대 4천만원, (고도화) 최대 2천만원
  - \* '23년 지원현황: 35개사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02-368-8930, 8726
- 기술보호 울타리 : [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1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 재단	02-368-8473
4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2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 재단	02-368-8473
	중소기업 선도기업 육성	2024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 재단	02-368-8787

# 제 8 부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신규) 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C 수출 지원사업	-	신규 작성
클라우드편딩/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지원사업	사업내용 있으나 연중 사업 폐지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내용 : 한류박람회, 글로벌미디어커머스	사업내용 : 한류박람회, K-Lifestyle, 대한민국브랜드엑스포
이동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수출 및 수출 준비 단계에서 애로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
-	지원내용: '코로나19 대응 바이어 방한 대행 지원' 부분 삭제, 'KOTRA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기업 대상 사후지원 컨설팅' 부분 추가	
무역사절단	종합·전문품목의 단독·통합사절단 병행	지역네트워크 활용, 전문품목 중심의 통합사절단으로 대형화하여 성과지향적 사업고도화 (단독·종합품목사절단 지양)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가점대상: 혁신조달제품(5점)	가점대상: 혁신조달제품 가점(5점), 통합기술마켓 중소기업(1점)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현지센터현황) 10개국 15개도시에 센터 위치	(현지센터현황) 11개국 16개도시에 센터 위치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	홈페이지 : <a href="https://contactkorea.kotra.or.kr/index.do">https://contactkorea.kotra.or.kr/index.do</a>	홈페이지 : <a href="http://www.kotra.or.kr/ck_kor">www.kotra.or.kr/ck_kor</a>

구분	'23년도	'24년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지원내용) 글로벌 기업 수요를 전 지역, 연중 상시 발굴	(지원내용) Vivatech, TechCrunch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사업과 연계하여 발굴 지역, 대상, 시기 등을 타깃팅 지원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신청방법) www.kotra.or.kr/biz 또는 www.buykorea.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문의처) KOTRA 스타트업지원(02-3460-7394)	(문의처)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69)
CES 혁신상 수상 지원	(신청대상)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신청대상) CES혁신상에 출품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기업
CES 혁신상 수상 지원	(문의처)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6)	(문의처)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69)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지역	지사화사업 애틀랜타 무역관 지원 개시	지사화사업 리스본 무역관 지원 개시
해외지사화 사업지원금액	-	지사화 서비스 수수료 변경
해외지사화 사업지원한도	-	◦ 진입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지원사업명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마케팅 사업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와 국내 업체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상담회별 상이 (타겟 산업군·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

### 선정기준

- 해외기업이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바이어와 온/오프라인상 1:1 매칭

### 진행절차

-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추진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24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① 수출상담회 대표 자료로서 전년도 Boom-Up Korea 홈페이지 참조
- 공고명 : '23년도 하반기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 (경로) 별도 URL 참조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수출상담회 참가비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출상담회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쇼케이스 등의 운영에 따라 별도의 행사장 내 국내기업의 전시공간이 제공 될 경우,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바이어와 상담 매칭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외 바이어와 품목 연관 여부, 바이어의 관심도, 산업군/세부 품목군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종합 선정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지원사업정보 업데이트 예시)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도전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기술기반 창업)	지원대상 변경내용 기재
지원내용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지원규모) 992명 내외, 650.5억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변경내용 기재
신청접수	(공고예정시기) 3월	공고예정시기 변경내용 기재
...		
...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우선 선정)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 제공
  - (멘토링) 창업 경영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하여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 총 992명 내외(일반분야 792명, 특화분야 200명 내외)
- 지원금액 : 650.5억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
- 추진절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전화) 044-204-7641, 044-204-7666  
(이메일) abcd@korea.kr
- 창업진흥원(예비초기창업실) : (전화) 044-410-1801, 1803~1810  
(이메일) abcd@korea.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A**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Q**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할 문서가 있을까요?

**A** 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샘플)를 확인하시고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샘플)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자료(예시)이며 선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용어 설명

**예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개인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BM(Business Model)** :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MVP(최소기능제품, Minimum Viable Product)** : 제품을 최종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핵심 기능으로 경된 샘플 형태의 고객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KOTRA와 유관단체가 연간 100회 내외에 걸쳐 국제 유명 전시회 및 신흥 유망 전시회에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 세부내용
  -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의 70% 이내 국고지원
  - 운송비 1CBM 편도 100% 지원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지원
  - 한국관 부스 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 제출 등 행정지원
  -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여행사)
  -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 사전 통역원 섭외, 현지 한국관 홍보 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전시회 개최일 4-6개월 전 공고 게재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gep.or.kr)
- 선정평가 : 'KOTRA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또는 내수·수출 초보 기업, 전문무역상사, 정부 지정 수출 유망품목 등
- 추진절차 : 모집 완료 후 21일 이내 평가 및 선정 후 선정 결과 통보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KOTRA 해외전시팀
  - Email : rlaaja5h@kotra.or.kr
  - Tel : 02-3460-3332 / 7288



## Q&A

- Q**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한국관 참가 신청서, 전시품목 상세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카탈로그 및 브로셔,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Q** 전시회 선정 리스트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A** 글로벌전시포털(GEP) → 지원안내 → KOTRA 단체참가 접속 후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할 시, KOTRA에서 전시회 참가 비용(직접비용,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 등)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기업 당 500만원 한도 내 사후 실비 지원	기업당 600만원 한도 내 사후 실비 지원
지원내용	-	(신규) 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2024년 해외 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이내로 선정 및 지원
- 지원조건 : 민간 협·단체를 통해 전시회 신청 및 참가 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의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청제외 대상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에 속하는 기업
-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다른 사업으로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의 중복 수혜기업
- ▶ 관련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및 해외마케팅 서비스
  - (참가비용 지원)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60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내수·수출초보기업 대상 해외무역관의 마케팅 서비스 지원
- \* 유망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여부는 해외무역관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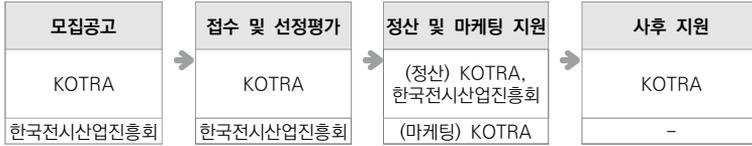
구분	지원 유형	지원 내용
1	바이어 발굴방법 안내	▶ (사전) 트라이빅(TriBIG) 활용 유망바이어 발굴방법 안내 - 고객이 직접 검색을 통해 해당 바이어 발굴
2	현장 컨설팅	▶ (사전 또는 현장) 바이어 발굴 및 현지진출 등 주제 관련, 현장 또는 별도 온·오프라인 상담

- 지원규모 : 1,2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600만원 한도내에서 사후 실비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3.12.28. ~ '24년 12월 (연중사업)
- 신청방법 : 무역투자24 또는 글로벌전시포털(GEP)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신청각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 사본 등
- 선정평가 : (심사를 통한 선정절차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 수출실적, 진출지역 유망성, 기업경쟁력, 전시참가 기대성과, 수혜 실적, 정책호응도, 정부정책 우대에 따른 기타 가산점 항목 존재

● 주요절차 :



##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 (전화) 02-3460-7285  
(이메일) jwjeong@kotra.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화) 02-420-2042  
(이메일) ex@akei.or.kr

## 참고사항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경로) 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하여 선택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경로) 글로벌전시플랫폼(GEP) > 참가신청 > KOTRA 개별참가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선정 기준점수가 몇 점인가요?

**A** 매 모집마다 신청기업 수, 신청가능 기업 수, 신청 기업의 기준 등이 다르므로 선정 기준점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은 사전에 안내가 어려우며, 모집공고문 상 기업 선정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 정산절차는 어떻게 되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 기업 사후정산 자료 제출 → 운영기관 자료 검토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료 제출 후 입금까지는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 용어 설명

**트라이빅(TriBIG)** : 무역투자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유망시장, 바이어, 품목)를 즉시 제공하는 플랫폼

- 사이트 주소: [www.kotra.or.kr/bigdata](http://www.kotra.or.kr/bigdata)



## 해외유통망 연계 소비재 B2C 수출 지원사업

- 지원체계 : 글로벌 유통망과 해외 로컬유통망 입점·판촉 지원

타깃 플랫폼	세부사업
한국에서 해외 직접 입점·판촉 가능	<b>① (글로벌 오픈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b> - 입점초보 기업부터 최상위 셀러까지 단계별 직접 입점·판촉 지원 * Amazon(US·JP) / Shopee(동남아) / Qoo10(JP)
해외 현지에서만 입점· 판촉 가능	<b>② (해외 로컬유통망)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연중, 전주기)</b> - 코트라 무역관별 최소 1~2개의 유망 로컬유통망과의 중장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입점·판촉 지원 유통망 확대

- 지원기간/장소 : 연중 / 온·오프라인
- 사업규모 : 4,800개사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4대 소비재(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 등) 브랜드 보유 또는 리셀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파워셀러 육성사업)
  - (시기/장소) 연중('24.2~11월) / 온라인
  - (사업규모) 국내기업 1,600개사, 글로벌유통망 3개사
  - \* 입점·마케팅교육 웨бина, 인증·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기획마케팅 등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 (시기/장소) 연중('24.2~11월) / 온·오프라인(해외)
  - (사업규모) 국내기업 3,200개사, 유통망 125개사
  - (타깃고객) 4대 소비재(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 중소중견기업
  - (사업방식) ❶ 주요 국가별 해외 유통망 MAP 구축을 통한 “물류·인증·입점” 지원 ❷ 기업 성숙도별 지원사업(입점·판촉) ❸ 수출 유통 소비재 품목 시장 진출 지원사업(입점·판촉)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중
- 신청방법 :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업, 품목 정보
- 선정평가 : 시장성 평가

## 문의처

- 코트라 소비재팀 : 02-3460-7745, 7738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 한류박람회 등 한류 활용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제고를 선도적으로 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한류 기반 소비재 수출기업

### 지원내용

-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 한류 홍보대사를 지정, 한류 공연과 연계한 B2B, B2C 마케팅
- K-Lifestyle : 해외 지역별 한류 트렌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 대한민국브랜드엑스포 : K-POP 커버댄스, 쿠킹쇼 등 한류 문화 체험 행사와 연계한 B2B, B2C 마케팅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중
- 신청방법 :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기업, 품목 정보
- 선정평가 : 시장성 평가

## 문의처

---

- 코트라 소비재팀 : 02-3460-7747, 7739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변동 없음
지원내용	해외 프로젝트 정보 및 발주처 상담 및 애로상담	변동 없음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	변동 없음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지원이 필요한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제공, 해외 발주처 상담
  - (애로상담) : 신청시 내용 검토 후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정보) : KOTRA 해외 조직망을 통해 발굴된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정보 온라인 조회
  - 조회 방법: <https://dream.kotra.or.kr> → 해외경제정보 → 산업·품목정보 → 입찰·조달정보 → 유망프로젝트
  - 프로젝트 뉴스레터 발송 : 신규 등재 해외 프로젝트 정보 메일 알림

- (해외 발주처 상담)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MDB 프로젝트 플라자 등 발주처 유치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를 통한 발주처 초청 및 1:1 상담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 (애로상담)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 상담 메뉴 중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 (프로젝트 정보)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 (<https://dream.kotra.or.kr>) 통해 자체 조회
  - (해외 발주처 상담) : 각 사업별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사업 공지 : 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 상담 메뉴 중 ‘사업신청’
- ※ (기타) 프로젝트 정보 및 해외 발주처 상담 관련 뉴스레터로 안내중
- 신청 방법 : [consultants@kotra.or.kr](mailto:consultants@kotra.or.kr)로 뉴스레터 발송 신청
- 제출서류 :
  - (애로상담, 프로젝트 정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 홈페이지 접속시 기본정보 입력
- 추진절차 :
  - (애로상담) 이메일 접수 → 애로상담센터 검토 → 1차 상담 (국내)→ 필요시 : 2차 상담(해외무역관) → 지원 조치(조사·상담) → 피드백 및 완료
  - (해외 프로젝트 정보) 별도 절차 없음

- (해외 발주처 상담)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 및 기업 정보 등록 → 해외 발주처 및 프로젝트 정보 확인(온라인 사전 게재) → 상담주선 기간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 상담회 기간 온라인 화상 상담 또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 → 상담 결과 제출 → 사후 지원

## 문의처

---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인프라·에너지산업팀  
(02-3460-7484, 7487) (consultants@kotra.or.kr, inbaest@kotra.or.kr)



## 이동KOTRA

수출 및 수출 준비 단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OTRA 수출전문위원이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1:1 현장 컨설팅

### 〈 전년대비 변동사항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출 및 수출 준비 단계에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 바이어 방한 대행 지원' 부분 삭제 'KOTRA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기업 대상 사후지원 컨설팅' 부분 추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 지원조건 : 없음
- 우대사항 : GCL TEST\*를 완료하고, 유선컨설팅을 희망하는 고객기업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문의·상담 → 글로벌역량진단(GCL)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KOTRA 및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해외 수출입 데이터 활용 기업별 목표시장 도출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TriBIG(빅데이터 플랫폼) 잠재 바이어 추천  
KOTRA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기업 대상 사후지원 컨설팅
- 참가비 : 없음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내 문의·상담을 통한 이동KOTRA 유/무선 신청
- 추진절차 : KOTRA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이동KOTRA 1:1 무료 수출컨설팅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KOTRA 지방협력팀(사업총괄) (전화 02-3460-7368)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 KOTRA 지방협력팀(서울 본사) : 02-3460-7374
  - KOTRA 경기북부지원단 : 070-7931-04424
  - KOTRA 경기지원단 : 031-273-6902
  - KOTRA 인천지원단 : 032-822-9820
  - KOTRA 강원지원단 : 033-261-5312
  - KOTRA 충북지원단 : 043-218-2901
  -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 042-362-8328
  - KOTRA 광주전남지원단 : 062-369-9054
  - KOTRA 전북지원단 : 070-7931-0812
  - KOTRA 대구경북지원단 : 053-659-2549
  - KOTRA 경남지원단 : 055-290-0604
  - KOTRA 부산지원단 : 051-740-4153
  - KOTRA 울산지원단 : 052-289-4654
  - 인천 산업단지공단 : 070-8895-7493
  - 천안 산업단지공단 : 070-8895-7625
  - 구미 산업단지공단 : 070-8895-7723
  - 반월 산업단지공단 : 070-8889-0877



## Q&A

**Q** 담당직원 변경으로 인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무역실무 교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역계약에서 운송, 보험, 통관절차 및 무역서식 작성 요령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방문하여 교육진행 가능합니다.

**Q** 회사 소재지가 대구인데 서울 수출전문위원님께 컨설팅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업 소재지 관할 지원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사와 영업장, 연구소 등 상담이 필요하신 지역에 맞추어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원단별로 지원사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려고 하는 내수기업입니다. 이동KOTRA 상담신청이 가능할까요?

**A** 이동KOTRA 지역별 문의처로 연락하셔서 담당 수출전문위원과 상담일정을 잡으시면, 무료로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 용어 설명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이란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 역량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무역사절단

KOTRA가 지자체·유관기관과 전문품목 중심의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현지시장조사·잠재바이어 발굴 및 온·오프라인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 전년대비 변동사항 >

구분	'23년	'24년
사업규모	단독·통합*사절단 병행	통합사절단 중심의 대형화
품목	종합·전문품목 병행	전문품목 중심

\* 유사 지역·시기 품목 중심으로 사절단을 통합 → 유망바이어 유치 등 사업효율성 향상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 지원조건 : 파견기관의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에 속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사항
  - 무역사절단 파견국별 시장 동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
  -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지사화사업 등 KOTRA 사업 연계를 통한 사후 지원 등
- 지원기간/장소 : 연중 / 온·오프라인
- 지원규모 : 1,000개사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상시 (사업별 개최기간 3-4개월전)
- 신청방법 : 무역사절단 파견기관(광역·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 또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참가 신청
- 제출서류 : 기업·품목 정보 (화상상담을 위한 바이코리아(buykorea.org) 상품등록 필수)
- 선정평가 :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로 선정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KOTRA 지방협력팀(사업총괄) (전화 02-3460-7327, 3496)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구분	지역	지역	주관부서	연락처
계획수립/ 사업시행	수도권	서울	지방협력팀	02-3460-7327
		경기 남부	KOTRA경기지원단	031-206-5105
		경기 북부	KOTRA경기북부지원단	070-7931-0744
		인천	KOTRA인천지원단	032-822-9361
	영남권	대구·경북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구미		054-455-2970
		부산	KOTRA부산지원단	051-740-4155
		울산	KOTRA울산지원단	052-289-8056
	호남권	경남	KOTRA경남지원단	055-290-0602
		광주·전남·제주	KOTRA광주전남지원단	062-369-8612
		전북	KOTRA전북지원단	070-7931-0803
	충청권	대전·충남·세종	KOTRA대전세종충남 지원단	042-862-8316
		천안		041-415-1513
		충북	KOTRA충북지원단	043-217-0016
강원권	강원	KOTRA강원지원단	033-261-5314	

\* KOTRA 홈페이지(로그인) > 사업소개 > 무역사절단 2024년 연간 파견사업 내역 확인 후, 관심사업 주관부서(지원단) 또는 기업 소재지의 KOTRA지원단으로 문의



## Q&A

**Q** 무역사절단 참가 신청은 소재지 구분없이 연간 사업내역에 명시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역사절단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유관기관 등 파견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업기관에 따라 관할 소재지 또는 관련 산업군 대상으로 업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바, 관심있는 사업의 주관부서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서울지역의 연간 사절단 사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지역의 해외사업은 KOTRA 산업부서별로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업체 품목에 맞는 부서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00-7119)

**Q** 사절단 참가비는 얼마인가요?

**A** 지자체·유관기관 주최 사절단은 파견기관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바(참가기업 출장여비 제외), 업체의 참가비 부담은 없으나, 전시연계 사절단이나 세부프로그램 등 사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심사업의 주관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사절단 참가신청관련 파견기관에 신청했는데, KOTRA 홈페이지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자체·유관기관 등 파견기관에서 주로 사업 참가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KOTRA 홈페이지에 사업 참가토록하여 시스템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마이코리아에 등록된 업체의 상담품목을 검토→마이어발굴·상담주선→상담실적입력 등 시스템화하여 평가하기에 참가업체의 KOTRA 사업신청은 필수사항입니다.



##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입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가점대상	혁신조달제품(5점)	혁신조달제품(5점), 통합기술마켓 중소기업(1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
- 지원조건 : 사업 선정평가 후, 선정기업 대상 지원(기업참가비 납부 필수)
- 우대사항 : 혁신조달제품 보유기업, 통합기술마켓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동 사업 5년 연속 참가한 국내기업은 지원 불가능
- ▶ 사업 참가 신청 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미선정 시 사업 진행 불가능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참가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연간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ex) 전시회 참가, 제품홍보 세미나 개최, 홍보 광고 제작 등

- 지원규모 : 국내 중소기업 13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단, 기업 참가비 300만원 납부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초~3월 초(잠정)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사업 - 참가 신청 및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접수 p300@kotra.or.kr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2) 해외 마케팅 로드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국문 카탈로그, 5)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영문 카탈로그,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선정평가 : 기업 제출서류 기반, 선정평가 진행  
(KOTRA 본사 및 무역관,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적합성, 해외 마케팅 역량, 기업 적합성 등 평가
- 추진절차 : 참가기업 모집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협약서 체결 → 전담 해외무역관 관리하에 사업 수행 → 결과 보고

## 문의처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행기관 :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02-3460-7494, chyeonjun@kotra.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 (경로) bizinfo.go.kr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참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참가신청은 무역투자24 홈페이지의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주셔야 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 이메일(p300@ko-tra.or.kr)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기업 참가비는 필수로 납부 해야하나요?

**A** 네, 기업 참가비(VAT포함 3백만원)은 필수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Q** 해당 사업참가 시 주로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A** 기업별 타겟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 제품설명회 개최, 조달벤더 발굴, 입찰정보 발굴지원 등)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11개국 16개 도시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실시하며 각종 애로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센터신설	10개국 15개도시	11개국 16개 도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지원대상

-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수출기업

### 지원내용

- FTA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
  - FTA 활용 설명회(웨бина) 및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실무활용가이드북 제공
  -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공동 홍보부스 운영

- FTA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관세율, 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현지기업, 진출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 (헬프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등

##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문의처로 연락 시 해당 FTA 적용 지역의 센터로 연결

## 문의처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연락처

센터	전화	이메일
베이징	(86-10) 6410-6162	shensy23@kotra.or.kr
상하이	(86-21) 5108-8771	yinji@kotra.or.kr
칭다오	(86-532) 8388-7931	yuanqq@kotra.or.kr
광저우	(86-20) 2208-1939	huizhen@kotra.or.kr
도쿄	(81-3) 6371-4438	hyjchoi@kotra.or.kr
하노이	(84-24) 3946-0511	minsulpark@kotra.or.kr
호치민	(84-28) 3822-3944	wsjeon@kotra.or.kr
뉴델리	(91-11) 4230-6300	yun.cca@kotra.or.kr
첸나이	(91-44) 2847-2281	herimlee@kotra.or.kr
자카르타	(62-21) 574-1522	chitra@kotra.or.kr
방콕	(66-2) 035-1555	parkhk@kotra.or.kr
쿠알라룸푸르	(60-1)-2956-2144	jason1119@kotra.or.kr
마닐라	(63-2) 8894-4084	dnqnrqr@kotra.or.kr
중남미	(52-55) 5514-3173	jisunpark@kotra.or.kr
프놈펜	(855-23) 999-099	fta.bryan@kotra.or.kr
시드니	(61-2) 8233-4050	mahnsydney@kotra.or.kr

### KOTRA 통상협력팀, 02-3460-7515



## Q&A

**Q** 국내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국내에서 FTA상담을 원하실 경우 궁금해하시는 FTA 적용 국가의 FTA해외활용지원센터에 연결해드리거나 본사 자문 관세법인과의 상담을 주선했드립니다.

**Q** FTA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FTA 활용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전담직원과의 FTA 활용 전반에 관한 상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용어 설명

**비관세 장벽**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필수요건 1,2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필수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년 이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 ② 필수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것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개인, 재외동포, 외국인투자기업 가능) 당사자가 종속사업장 중 지원받을 투자사업장명으로 신청

-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현금지원, 조세·일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 ✓ 대한민국 법인의 자회사, JV 등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며, 법인 자신만 가능

신청일로부터 아래 이행요건이 완료 되어 있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이행요건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우선 선정된 이후 이행기한 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 신청시점의 계획으로 선정이 가능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신청 가능

#### ③ 이행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1. 청산 2. 양도 3. 생산량 축소(매출액25%감축)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것.

[요건 면제]

-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기업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 기업

[요건 완화 : 축소비를 완화]

- 연구개발업 : 경산연구개발비의 10%~25%
- 협력형 복귀 : 생산량(매출액)의 10%

#### ④ 이행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동일)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투자유형 중 한 가지를 이행할 것

1. 신설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설치
2. 증설 증축 등 공장건축연면적을 넓히는 것
3. 공장매입(임차) 공장을 매입(임차)하고, 제조시설 설치
4. 유류면적투자 기존 공장 내 유류면적에 제조시설 설치



#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 ① 국내복귀기업 선정 절차

### 1 신청·접수

신청기업 → KOTRA

[국내 기업 명의로 신청]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모기업의 투자사업장

✓ 국내 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설립 후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Invest KOREA (KOTRA 內 국가투자유치기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 Invest KOREA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 국내복귀기업지원 메뉴 - 신청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022/web.do>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3종 서류	증빙 서류
 제출서류	공통신청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5호서식 6호서식 1호서식 2 or 3호 서식 4호서식 계획 완료	[해외사업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투자등록증, 장권, 재무제표 등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장권,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회사소개서, 재무제표 등 ✓ 진출국가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KOTRA 국내복귀지원팀에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a href="mailto:reshoring@kotra.or.kr">reshoring@kotra.or.kr</a>   문의 : 02-3460-7361~4 📍 (06792) 서울 서초구 한양로 13, KOTRA 국내복귀지원팀

기업 100일 내

### 2 검토·심사

KOTRA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검토 및 1차 심사
- 해외사업장 현장실사(2주 소요)
- 외부 평가위원 검토

### 3 심사보고

KOTRA → 산업부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4 선정여부결정, 선정확인서 발급

산업부 → 신청기업

- 심사보고서 검토
- 선정 여부 결정 및 통보

· KOTRA 국내복귀지원팀: 02-3460-7361~4, [reshoring@kotra.or.kr](mailto:reshoring@kotra.or.kr)



## 경제외교 활용포털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경제행사 (예:비즈니스 파트너십)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제외교 비즈니스 활용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 이용방법

- 경제외교 활용포털 접속 후 무료이용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외교 성과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산업 성과를 수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원	대통령 및 총리 순방 계기로 추진하는 경제사절단 모집공고 게재
경제외교 활용사례	해외 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 계기의 수출계약, 투자 진출 등 성과를 거둔 기업사례 소개 및 공유
후속조치 사업	정상회담 공동성명·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 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관심기업도 활용 가능한 참가 사업 및 결과 안내

### 문의처

- 경제협력지원팀 : 02-3460-7655
- 경제외교활용포털 :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Contact KOREA는 KOTRA에 설치된 해외인재유치 전담부서입니다. 14개국 21개 CK 거점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전 세계에서 발굴하여, 인재 발굴부터 채용, 비자, 국내 정착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국내기업,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 지사 및 해외 현지법인 포함

###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대기업 : 1,100,000원(VAT 포함)
  - \* 직종별 1명 채용 기준
  - \* 대기업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상호출자제한기업

### 유치대상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글로벌 인재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비자 직종에 해당

- 경력 5년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 + 경력 1년 이상이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

##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Contact KOREA 홈페이지(www.kotra.or.kr/ck\_kor)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 소요 기간 : 인재 발굴 신청 후, 2주~1개월



## 문의처

- 글로벌인재센터 : 02-3460-7387 contactkorea@kotra.or.kr



## 고용추천서 발급 서비스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여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발급대상

- 공통요건
  - 전문대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학사 :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단, 국내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경력 무관)
  -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
- 소득요건
  - E-7-1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 (기본급)
  - \*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 고용 외국인 중 국내 근무 경력이 3년 이하인 자는 70% 이상 적용
  - E-7-S2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100% 이상 (기본급)

### 발급분야

- E-7-1 : 8개 첨단기술 분야 내 28개 직종(홈페이지 참조)
-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E-7-S2 :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35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등 종사자

##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Contact KOREA 홈페이지(www.kotra.or.kr/ck\_kor) 온라인 신청
- 추진절차
  - 소요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1개월



## 문의처

- 글로벌인재센터 : 02-3460-7388 contactkorea@kotra.or.kr



## KOTRA아카데미 교육·연수

KOTRA아카데미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또는 지역), 산업, 기능, 기업 역량별 해외 마케팅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	(수강혜택)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연 3회 무료 수강 우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무료 수강 우대(연 3회)

### 지원내용

[교육과정]

-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 진출 희망 지역별 수출 특화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러시아·CIS 등
-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 특정 국가 내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

-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내수·수출초보, 유망·중견기업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교육 과정
    - \* 수출 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기능별 해외마케팅 실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 \* 해외전시 마케팅, 온라인 수출 마케팅, 영업 역량 강화과정 등
-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GBC)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컨설턴트 양성 과정
    - \* 컨설팅, 마케팅(온라인 플랫폼 포함), 해외시장 진출방안, 협상 및 계약관리 등
- FTA활용 컨설팅 교육
  - 국내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위원, 멘티기업을 중심으로 한 FTA 컨설팅 교육

## 문의처

- 전 화 : (본원) 02-3497-1185 / (대전분원) 042-338-1702
- 이메일 : academy@kotra.or.kr

## 참고사항

- 신청·접수
  - KOTRA 무투24 홈페이지 (www.kotra.or.kr) 사업신청 참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사업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신청은 KOTRA 홈페이지인 무역투자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단 '사업신청' 탭을 누르신 후 화면 아래에 신청 접수 중인 교육을 클릭하여, 구체적인 커리큘럼, 신청서 및 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매주 나가는 KOTRA아카데미의 교육 홍보 메일을 받아 수강을 희망하시는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수강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네 맞습니다. KOTRA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일부 유료 교육과정의 경우, 사회적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 3회 무료 수강의 혜택이 있습니다.

각 교육 별 선착순 3개의 기업이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회적기업/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 과정 신청 전,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외교 활용 사업

전략시장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및 해외정상 방한 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며, 경제외교 후속사업을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모든 국내기업

### 지원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 시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무역·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기업의 무역·투자·프로젝트 유망상담 건 상시 지원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등 추진

## 문의처

---

- 경제협력총괄팀 : 02-3460-7688
- 경제협력지원팀 : 02-3460-7655



##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부처·기관 및 민간에 산재된 분야별 해외진출 정보를 수출 및 시장진출 단계별로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도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이용자격 : 수출, 해외 투자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 연구소, 학교 또는 개인은 무료로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해드림 홈페이지([dream.kotra.or.kr](http://dream.kotra.or.kr)) 접속

\*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기업회원) 필요

## 제공정보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경제정보	해외진출 관련 기초정보 제공 해외경제정보: 국가별정보, 산업·품목정보, 경제·통상정보
해외진출	진출 단계별 해외수출·투자에 필요한 정보 해외수출: 수출기반준비-해외시장개척-계약및통관-사후관리 등 해외투자: 현지조사-투자준비-투자추진-현지경영-청산·복귀 등
분석서비스	국별모아드림, 수출통합보고서, 지원사업검색, 해외투자분석, 해외시장뉴스 이미지검색, 수출 MBTI(기업별 맞춤형 콘텐츠/사업 추천)
해외시장뉴스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전세계 산업·상품정보, 국가정보 등 수출관련 정보 등

## 문의처

- KOTRA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 (전화) 02-3460-3304. 3305  
(이메일) bigdream@kotra.or.kr
- KOTRA 해외정보관리팀 : (전화) 02-3460-7403  
(이메일) jyhahm@kotra.or.kr



## Q&A

Q

해드림의 해외진출 통합정보는 어떠한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A

정부(기재부, 관세청 등), 공공기관(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연구소, 협회, 민간기업 등 현재 80개 기관의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국별모아드림** : 국가개황정보, 출장자료, 산업정보, 보고서 등 해외진출정보를 국가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통합보고서** : 품목별 해외진출 정보를 시가 수집하여 한눈에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미지검색** : KOTRA의 해외시장뉴스에 제공되는 표, 그래프, 사진 등의 이미지 정보를 검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수출MBTI** : 고객의 수출성향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유형별로 콘텐츠 및 수출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



## 트라이빅(TriBIG)

트라이빅은 국가 무역·투자 빅데이터를 추적·분석하여 우리 기업에 필요한 품목, 시장, 해외바이어 추천 등의 맞춤형 정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 지원대상

- 이용자격 : 수출, 해외 투자진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 연구소, 학교 또는 개인은 무료로 이용가능

### 이용방법

- 트라이빅 홈페이지([kotra.or.kr/bigdata](http://kotra.or.kr/bigdata)) 접속
- \* 일부 서비스는 기업회원 대상으로만 제공

## 제공정보

구분	주요내용
무역투자통계	한국 수출입통계, 글로벌 수출입 통계, 투자 통계 등 한국 무역현황: 한국 수출입현황을 시장별/HS코드별(10자리)/연월별 제시 글로벌 무역현황: 전세계 무역현황을 시장별/수출입지역별/HS코드별/연월 제시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외국인직접투자현황(FDI)을 투자지역별/연도 및 분기별 제시
국가별 시장정보	국가 개요정보, World Bank 지표, 유망 품목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무역사기사례, 수입규제정보, 우리기업 수출상위품목 등
품목별 유망시장	AI 기반 선정 품목별(HS코드 6단위 기준) 30대 수출 유망시장 정보, 국가별 대한국무역통계, 해외시장뉴스, 전시정보, 수입규제 정보 등
해외바이어 정보 (기업회원 대상)	해외바이어 추천 서비스 품목별 해외바이어: 관심품목 키워드로 코트라DB 및 실수입 해외바이어 검색 기업별 해외바이어: 등록 관심품목 키워드를 바탕으로 맞춤형 해외바이어 추천
기업별 맞춤정보 (기업회원 대상)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맞춤형 유망시장 정보(HS코드 10단위 기준), 관심 바이어, 전시정보, 바이어 구매 인콰이어리 등

## 문의처

- KOTRA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 (전화) 02-3460-3303 (이메일) bigdream@kotra.or.kr



## Q&A

**Q** 우리 기업에 꼭 알맞은 해외바이어 추천을 받고 싶으면요?

**A** 트라이빅은 귀사에서 직접 입력한 기업 기본정보와 관심품목정보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추천해드립니다. KOTRA 홈페이지에서 기업 기본 정보를, BuyKOREA에서 상품 정보를 보다 상세히 업데이트할수록 더욱 적합한 파트너를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외바이어의 담당자 이메일/전화번호를 알 수 없나요?

**A** 트라이빅은 해외바이어의 대표자명, 대표연락처 및 대표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해외기업 담당자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트라이빅에서 추천해준 해외바이어와 컨택하고 싶습니다. 연계 서비스가 있을까요?

**A** KOTRA 해외시장조사의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을 통해 트라이빅에서 추천한 해외바이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의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시장조사'를 통해 트라이빅에서 추천된 품목별 유망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해외 진출 및 인증상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채팅,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출, 해외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제외 대상

- ▶ 기업의 수출과 관련 없는 학술 목적의 문의
- ▶ 현지 한국기업·한국인에 대한 평판 및 신인도 등의 문의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수출, 투자진출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진행

수출	투자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실무 전반</li> <li>▪ 거래선 발굴 방법</li> <li>▪ 계약관련 서류검토</li> <li>▪ 인증 및 규격</li> <li>▪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li> <li>▪ 해외시장정보</li> <li>▪ 관세, 통관절차</li> <li>▪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li> <li>▪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li> <li>▪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li> </ul>

- 지역·기능별 상담

지역	연락처	
미주·유럽	대표전화(1600-7119) - 2번(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내선 1번
아시아·일본		내선 2번
중화권		내선 3번
중동·아프리카·CIS		내선 4번
인증·규격		내선 5번
무역사기		내선 6번

\* 카카오톡 채팅상담 또는 KOTRA 수출투자챗봇으로도 상담 가능

- 지원금액 : 이용료 무료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유선 상담)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선택 →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 선택
  - (온라인 상담)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 상담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 (카카오톡 채팅상담) QR코드 스캔  → ‘채팅하기’ 또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 → ‘채팅하기’
  - (방문상담) 전화(02-3460-7218)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 방문 상담

##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전화) 1600-7119



## Q&A

**Q** 대표전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A** 월-금(공휴일 제외) 09:00-18:00 상담이 가능하며, 점심시간 (12:30-13:30)은 제외입니다.

**Q** 대표전화 상담 시 지역 구분에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홍콩·대만은 3번 중화권, 몽골 및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는 4번 중동·아프리카·CIS로 문의 바랍니다.

**Q** 방문상담 희망 시 사전 예약을 꼭 해야 하나요?

**A** 방문하시기 전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고객님의 상담 희망 분야와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분야별 담당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기에, 가급적 유선을 통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수출24 글로벌 대행(해외시장조사) 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 컨설팅 기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수수료 2배 적용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 등

사업명	지원내용	수수료 (VAT 별도)
1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원/1항목
2 맞춤형 지원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3 현지 매장 방문조사	신청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45만원
4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5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으로 샘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배송비 실비부담)	45만원

6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발굴(2~3개사)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 (2개월)	30만원
7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이 보유한 해외 수입업체의 귀사 제품에 대한 관심 여부 조사	5만원/개사
8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해외 공급업체 발굴 (3개사)	30만원
9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30만원
10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지역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11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원
12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15만원
13	대리 면담 지원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45만원
14	바이어 실태조사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 중인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원
15	전시회 대리참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참관, 요청사항 수행,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포함), 바이어 명함 확보 등	45만원
16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 여부 및 대표연락처 확인. 연간 5개사까지 무료 지원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 범주에 미포함	1만원/개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 2배

##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온라인 신청
  - ① KOTRA 홈페이지 접속 → ② 상단 ‘사업소개’ 메뉴 클릭 →
  - ③ ‘무역’ > ‘파트너 연결지원’ > ‘시장조사’ 클릭 → ④ 하단의 ‘세부사업보기’ 클릭 → ⑤ 희망하는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바이어 제공용 브로슈어 등)
-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사전 유선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지원 가능여부 사전검토(2주) → 수수료 결제 후 조사 착수(4주) → 결과 보고서 제공 → 결과보고서 확인 및 경우에 따라 A/S 요청

##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전화) 02-3460-7339 / 7335



## Q&A

**Q**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외에도 우수 고용 창출 기업, 우수 방산 기업, 소상공인, 국내복귀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은 15종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 및 유선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A** 예 그렇습니다. 전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규 접수가 불가한 무역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 접수 불가의 경우 무역관과 해당 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의 어떠한 요청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가 가능한가요?

**A** 모든 조사는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 후 진행되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조사대상이 해당 국가의 수출입 제한 품목인 경우 ②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해당 품목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③ 조사대상이 3개월 이내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품목인 경우 ④ 조사로 인하여 지적 재산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⑤ 조사대상이 조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서 우리 업체 간 과다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인 경우 ⑥ 기타 무역관의 특수사정에 의거 조사 기간 내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⑦ 사치성 소비재 수입 목적의 조사, 상도덕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 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KOTRA 기업회원
- 신청제외 대상 : 별도 없음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업의 수출역량 성장단계 확인 및 세부역량별 강약점 분석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등 우선권선택 제공
- 지원금액 : 이용료 무료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otra.or.kr/biz/) 접속
- ② 상단메뉴 중 '맞춤형 서비스' 클릭
- ③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클릭
- ④ 로그인 후 설문 진행

● 추진절차



##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전화) 1600-7119

## Q&A

**Q** 글로벌 역량진단 각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A**
- ① 전략 및 리더십 역량 : 리더의 수출의지, 수출을 위한 지속적 투자 수준, 수출자금여건, 경영진의 글로벌 리더십
  - ② 기술역량 : R&D투자/집중도/인력규모, R&D중 현지화 제품/서비스 투자 비중, 국내외 지식재산권/해외 인증 확보 수준
  - ③ 상품 경쟁력 : 품질 우위 수준, 가격경쟁력 수준, 제품/브랜드 인지도

- ④ 마케팅 역량 : 해외 마케팅 전담인력 규모, 마케팅 전담인력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해외전시회 참여 빈도, 글로벌 고객 접촉 빈도, 해외시장 모니터링 수준
  - ⑤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 해외 고객사 보유수준/평균거래 유지기간, 해외거점/유통채널 확보 및 활용수준, A/S네트워크 수준, 해외 고객 CRM 채널
-



## 열린무역관

KOTRA 해외무역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근무 시간 중 사무공간, 시장정보 및 기초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KOTRA 회원(기업/개인회원)
- \* KOTRA 업무영역과 관련된 무역, 투자 등 일반 비즈니스 목적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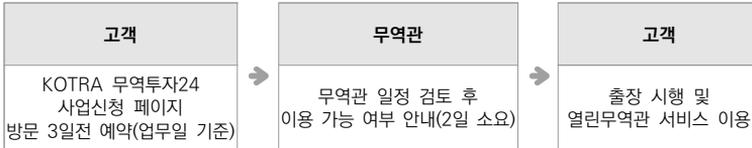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 무역관 : 80개국 125개 해외 무역관
- \* 아바나, 바그다드, 트리폴리, 다마스쿠스 무역관 제외
- 세부 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당 1회만 가능)
-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구분	세부 지원내역	비용
사무공간	회의실, 복사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무료
방문상담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전화) 1600-7119



## Q&A

Q

열린무역관 신청 시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A

별도 기준은 없으며, 신청일이 타 기업과 중복되는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Q

현지 출장 중 급하게 열린무역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용 당일 신청도 가능할까요?

A

열린무역관은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일 기준 최소 방문 3일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후 무역관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사항: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협약개시일 ~ 동일년도 10월 31일까지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수입대행·배송·수출마케팅 등은 서비스 가능 시 필요에 따라 이용)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이란, 쿠바, 라오스 제외
- 1개 사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정보 제공
- 참가비 및 국고지원금(국고지원 비중 : 중소(70%)·중견(50%), VAT 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 ~ 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 ~ 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 ~ 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 ~ 10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참가비 환불 불가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1:1로 매칭, 기업 맞춤형으로 무역 실무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지원조건 : '23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①실적에 없는 내수기업 또는 ② 1~10만불 미만 기업
- 우대사항
  - 영문 카탈로그 보유기업,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 초보기업의 경우, '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 신청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 최근 3년간 수출 경험이 전무한 내수기업 2,000개사
  - '21년 또는 '22년 중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3년 수출 중단기업 1,000개사
  - 수출 초보기업('23년 수출실적 1~10만불 미만) 1,500개사
- 지원 세부내용
  -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 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역량 강화)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분기 내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필수), 영문 카탈로그(선택)
- 선정평가 : 자격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 진행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맞춤형 지원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중소기업팀(02-3460-7546)



##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주요국 스타트업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 스타트업, 정부기관 등 스타트업이 협력 가능한 파트너를 연결하고 협업 기회를 마련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주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Viva Technology (5월, 파리), TechCrunch Disrupt (10월, 샌프란시스코), Slush (11월, 헬싱키) 등
- 투자자, 바이어, 글로벌기업 등 해외 유망 파트너 연결
- 현지 글로벌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지원
- IR피칭,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 등 부대행사 참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 전시회별 상이
- 선정기준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창출, 전시적합성, 정책 우대 가점에 따라 본사, 무역관, 공동수행기관이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책 우대 가점 사항 : 신규수출기업화 또는 내수기업, 전문무역상사, 5대 소비재, 사회적 경제기업, 유턴기업, 뿌리전문기업 등

## 문의처

---

-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69)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수요를 연결하여 기술실증, 공동개발, 투자유치 등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내용	(지원세부내용) 글로벌 기업 수요를 전 지역, 연중 상시 발굴	(지원세부내용) Vivatech, TechCrunch 등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사업과 연계하여 발굴 지역, 대상, 시기 등을 타깃팅 지원
신청 접수	(신청방법) www.kotra.or.kr/biz 또는 www.buykorea.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94)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69)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혁신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국내 혁신기업
- 지원조건 : 해외 시장 진출을 상위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 예비창업자,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 미보유 기업(단순 소비재), 상장 기업, 국내 법인 미보유 기업 등

## 지원내용

- 추진 과정

수요 발굴

관심기업 발굴

글로벌기업 심사

상담 및 후속지원

- 해외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수요에 맞는 적절한 국내 스타트업을 모집,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간 1:1 상담 또는 해외 피칭데이 개최 등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수요별 상이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IR 피치덱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 수요 적합도, 제품의 혁신성, 해외진출 준비 역량 등

## 문의처

- KOTRA 중소기업팀(02-3460-7569)

### 용어 설명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 개방형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 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 CES 혁신상 수상 지원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혁신기업이 공신력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신청대상)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신청대상) CES 혁신상에 출품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기업
문의처	KOTRA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66)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69)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CES 혁신상에 출품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기업
  - 혁신기술과 심미적인 디자인을 갖춘 제품(기술)을 가진 기업
  - 혁신상 수상 연도에 신규 출시하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수상 전략 웨비나
  - 실제 혁신상 심사위원 및 수상경험이 있는 기업 초청
- CES 혁신상 영문 신청서 작성 멘토링
  - 스토리빌딩 방법, 영어 문법 및 어휘 첨삭

- CES 혁신상 신청비
  - 일정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접수

- 신청방법: 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6월 중 예정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제품 영문 소개자료, 동영상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혁신성 및 디자인의 심미성
  - 제품 관련 시각적 자료 보유 여부(이미지, 영문 홍보영상 등)
  - 당해 연도 신규 출시 제품 여부
    - \* 미국 CTA 혁신상 수상 기준 참고

## 문의처

- KOTRA 중소기업팀(02-3460-7569)



## Q&A

- Q** 지원내용 중에 CES 전시회 참가도 포함되나요?
- A** 중소기업팀은 CES 혁신상 수상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CES 전시회 한국관 참가 관련은 'KOTRA 해외전시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이전에 혁신상을 수상했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나, 미선정된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단, 제품에 중요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해외지사화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지역	애틀랜타 무역관 지원 개시	리스본 무역관 지원 개시
지원 금액	-	서비스 수수료 변경
지원 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li> <li>○ 발전, 확장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li> </ul>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협약일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고객사의 제조 품목 및 주력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사와 무역관이 사전 협의하여 HS Code 6단위 1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 결정
- 우대사항 : 정책우대가점(최대10점) 존재

###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갱신·발표하는 대기업 및 소속회사
- ▶ 유관기관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ALIO 등재 기준), 비영리 정부 출자 또는 민간기관
- ▶ 현지거점 보유기업 : 신청 무역관 소재 도시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관별 지원내용 확인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수행기관
진입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OKTA
발전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KOTRA
		1년	KOTRA 중진공
확장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중진공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모집 (차수별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 [www.exportvoucher.com/jisahwa](http://www.exportvoucher.com/jisahwa)
- 제출서류 : 수출실적, 가점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국내평가 + 해외시장성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국내평가 : 수출실적, 정책우대가점(선택)
  - 해외시장성평가 : 품목 시장성, 품목 경쟁력, 단계 적정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가모집 - 선정평가 - 참가비납부 - 사업개시

## 문의처

- 기관별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7439, 7441, 7434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055-751-9676, 9679, 9680
  - 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3년도 해외지사화사업 모집 공고
    - (경로)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 알림마당 - 지사화 모집공고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② 참여한도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Q&A

**Q** 우리 기업의 지사화사업 참여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지사화사업의 참여이력은 지사화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ji-sahwa](http://www.exportvoucher.com/ji-sahwa)) > 로그인 > 우측 상단 지사화 관리시스템 > 전체현황 > 사업수행이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지사화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죠?

**A** [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으로 접속하신 뒤 메인 페이지에서 해외 지사화사업을 클릭해주시면 해외지사화사업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로그인하신 뒤 중앙 상단의 사업신청 탭을 이용해 신청해주세요.

---

**Q** 사업신청은 완료했습니다. 선정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접수가 마감되고 업무일 기준 6~7일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라는 문자 안내를 받으시려면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회원정보에 휴대폰번호 등록 및 SMS 수신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

#### 용어 설명

**HS Code** : Harmonized System Code,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6자리로 구성

**IP**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한국우수상품전

수출 전략시장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단독 해외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전시상담회 외 경제 협력 세미나, 사회 공헌 활동(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해당 상품전 공고 확인
- 우대사항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업 가산점 부여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제외 대상

- ▶ 동일한 전시회로 국고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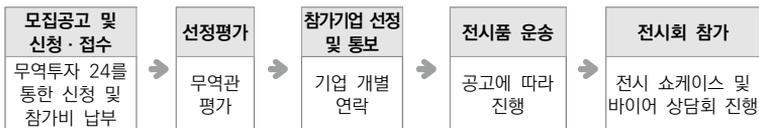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전시 쇼케이스 및 바이어 상담회 진행
  - 전시품 편도운송 (1CBM 내)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 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 온라인 마케팅(Buykorea 전시관 입점 등) 지원
- 지원규모 : 국내기업 약 10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전시품 편도 운송비용, 전시장 임차 비용, 부스 디자인 및 장치비 등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추진
- 신청방법 : 무역투자 24(www.kotr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인터넷 신청시 입력), 전시품목 상세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평가 : 제출서류 적합성 및 무역관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참가 후 기대성과, 현지 시장성 및 바이어 관심도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전략전시팀
  - (전화) 02-3460-7263, 7272
  - (메일) onlinekoreaexpo.or.kr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 오사카 한국우수상품전

- (경로)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한국우수상품전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무역투자 24를 통해 모집공고 예정이니 확인바랍니다.

**Q**

한국우수상품전 바이어 상담주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개최일 전까지 2~3차에 걸쳐 참가기업에 바이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출바우처사업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해서 이용하는 사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규모	국고예산 169억 원, 선정기업 453개 사	국고예산 약 311억 원, 선정기업 약 800개 사
신청 기간	'22. 12. 30.(금) ~ '23. 1. 20.(금) 24시	'23. 12. 22(금) ~ '24. 1. 17(수) 18시
기업 선정	연 1회	연 2회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우대사항 : 모집공고문 내 별첨1 산업별 지원 우대사항 참조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4.1.3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온라인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바우처 금액은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의 합계액으로 표시
  - 기업분담율은 30~70%로, 기업규모별로 상이
  -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로 [exportvoucher.com](http://exportvoucher.com) 메뉴판에 등록되어 있는 14대 분야, 8,000여개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수출 준비	①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법무·세무·회계 제외)
	②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③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
	④	홍보 동영상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⑤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⑥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수출 단계	대분류		정의
수출 이행	⑦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 지원
	⑧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⑨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⑩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⑪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 후속 관리	⑫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⑭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 산업별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단계별 지원요건	바우처 발급한도*	국고 보조율
소재·부품·장비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진입] 50백만원	(중소) 70%
그린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성장] 70백만원	
소비재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확장] 100백만원	
서비스	[진입]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진입] 30백만원	(중견) 50%
	[성장] '20-'22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성장] 50백만원	
	[확장] '20-'22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확장] 55백만원	

\* 바우처 발급액 최소단위 (산업 및 단계별 공통) : 2천만 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7(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http://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① 신청기업의 해당 산업(소재·부품·장비/소비재/서비스/그린) 및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 ② 사업신청서 및 필수서류, 가점서류 첨부
- ③ 세부선택 트랙별 한도 내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 ④ 저장 및 제출완료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내용 참조
- 평가 절차 : (1차) 서류(계량) 평가 → (2차) 면접(비계량) 평가
  - (1차)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 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 문의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KOTRA 통합안내센터 : 02-6004-8400, 070-4866-0722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 02-3771-1100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27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8호

- (홈페이지)

**상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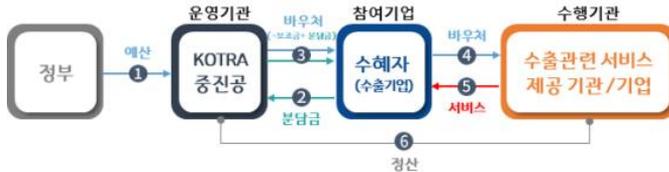
## Q&A

**Q**

수출바우처로 서비스를 구매한 후, 비용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수출바우처 발급과 정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①국고+②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③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④,⑤)를 이용한 후 ⑥비용 정산



## 디지털 마케팅(buyKOREA)

buyKOREA는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입니다. buyKOREA는 한국 상품 해외홍보, 해외 바이어의 구매정보 검색 등록 및 검색,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 국제 배송(EMS,DHL) 등 거래 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없음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출상품등록	· 수출상품 등록 가능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인콰이어리 조회	·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인콰이어리 검색 가능
메시지 발송/ 인콰이어리 수신	· 인콰이어리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메시지 발송 가능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 buyKOREA에서 온라인 수출대금 결제 가능 (PG사*와 별도 계약 필요) - VISA, Mastercard, JCB, UnionPay, Alipay, WechatPay, Paypal * Payment Gateway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배송접수 및 할인혜택(별도계약필요)
비즈니스행사	·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TradeShow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 신청·접수

---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http://www.buykorea.org)) 판매자센터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추진절차 : 바이코리아 홈페이지 → 기업 회원가입 → 상품등록 및 바이어 연결

## 문의처

---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DX가속화팀 (전화: 02-3460-3445)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부상한 디지털 무역 생태계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무역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기업
- 지원조건 : 없음
- 지원불가 :
  -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업
  - 휴/폐업 및 '관심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바이코리아 상품등록을 위한 이미지 또는 실사 촬영 지원(상시)
디지털 무역 인력 및 기업 양성	· '글로벌 디지털 마케터즈'를 통해,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여 디지털마케팅 및 디지털 무역 인력을 양성 프로그램 운영(기수제)
상시 디지털무역상담 인프라 지원	· 발굴 또는 매칭된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위한 공간 지원(상시)
디지털 브랜드 개발, 관리 및 마케팅 서비스	· 바이코리아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바이어 구매수요 발굴 지원(지원기업 대상)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모집공고 참고(연중 수시)
- 신청방법 :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kotra.or.kr) 통한 신청
- 추진절차 : KOTRA 사업 신청 페이지(kotra.or.kr) → 사업안내에서 모집 중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및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사업 신청 → 담당부서/지원단에서참가 선정 여부 안내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KOTRA DX가속화팀 (전화: 02-3460-3454)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전국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 (서울) 서울 deXter 02-3460-7740
  - (대전) 대전 deXter 042-862-8311
  - (경북(구미)) deXter 054-454-0829
  - (부산) 부산 deXter 051-740-4155
  - (울산) 울산 deXter 052-289-8056
  - (고양) 고양 deXter 070-7931-0746
  - (전북(전주)) 070-7931-0813
  - (평택) 평택 deXter 031-273-6039
  - (충북(청주)) deXter 043-217-8007



## Q&A

**Q** deXter를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 예약 문의 관련 아래의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울 deXter 02-3460-7740

(대전) 대전 deXter 042-862-8311

(경북(구미)) deXter 054-454-0829

(부산) 부산 deXter 051-740-4155

(울산) 울산 deXter 052-289-8056

(고양) 고양 deXter 070-7931-0746

(전북(전주)) 070-7931-0813

(평택) 평택 deXter 031-273-6039

(충북(청주)) deXter 043-217-8007

### 용어 설명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란 'digital'과 'export', 'center'를 합쳐 'deXter'로 명명된 KOTRA의 전국 단위 디지털 무역 거점을 말합니다.



##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중견기업
  -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글로벌 기업의 수요품목 및 협력 희망 분야에 적합한 국내기업

### 지원내용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산업별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 북미 미래차 밸류체인 진입 지원사업, 유럽 소부장 혁신 기술 GP사업, GP Honda 등
  - 국내 : 북업코리아 연계 소부장 수출상담회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 SAFRAN DAY 등 글로벌 바이어 연계 사업 지원
  - 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지원(연중 수시)

● 지원 프로세스



##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 바이어 검토 → 상담 매칭
-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
- 카카오톡 채널 'KOTRA 소재부품장비팀' 통해 산업별/지역별 사업 일정 및 세부사항 확인 가능

## 문의처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 소재부품장비팀 각 산업담당자
  - (자동차) 02-3460-7654
  - (조선해양) 02-3460-7644
  - (항공우주) 02-3460-7633
  - (기계·중장비) 02-3460-3224
  - (전기·전자) 02-3460-7651
  - (반도체·디스플레이) 02-3460-7635
  - (소재) 02-3460-7664
  - (그 외) 02-3460-7659

### 용어 설명

**글로벌 기업** : 'Fortune Global 500' 기업 및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해외기업



##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는 해외 지역별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국내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인프라 및 글로벌 파트너링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센터	11개소	13개소 (도쿄, 스톡홀름 추가 개소 예정)

### 지원대상

- 운영센터(13개)
  - '23.12월 현재 운영 중 : 일본(나고야, 오사카), 미국(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오스틴), 중국(상하이),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그리스(아테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멕시코(멕시코시티)
  - '24년 개소예정 : 일본(도쿄), 스웨덴(스톡홀름)
-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즉각적 현지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등

## 신청제외 대상

-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독립입차형 사무실 혹은 공유오피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세일즈랩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랩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지역별 상이(중소 40%, 중견 60% 기업 부담률)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KOTRA홈페이지(무역투자24) > 사업신청 > 해외GP센터 / Pre GP센터 신청하기

## 문의처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 문의처 : 02-3460-7650

## 참고사항

### □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 GP센터 (글로벌 공급망 안착 서비스)

- (경로) 사업신청 > 상단 상시신청 > 2024 GP센터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4 Pre GP센터 (글로벌 공급망 두드림 서비스)

- (경로) 사업신청 > 상단 상시신청 > 2024 Pre GP센터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용어 설명

**GP** : 글로벌파트너링,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 서비스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	좌동
지원 내용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 비용 정산	좌동
신청 접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좌동
사업 기간	'23.2.1.(수)~'24.1.31.(금) * 정산 완료기한 : '23.11.15	'24.2.1.(목)~'25.1.31.(금) * 정산 완료기한 : '24.11.15

### 지원대상

- 대상 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우대사항 : 고용창출 우수기업, 뿌리기업 등(참가신청 화면 참고)

###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신청되어 2024.1.3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 '24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14개 분야 8,000여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해외 전시회, 디자인 개발, 해외규격인증, 통·번역 등)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국가 선정 지원 등
- 지원규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 00개사
- 지원금액 : 바우처 최소 2,000만원, 최대 1억원 / 약 00개사
  - \* 국고지원금/기업분담금 : 중소기업 70%/30%, 중견기업 50%/50%

##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3.12.~'24.1.17.(수) 18시 (연 1회)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명 등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평가 : - (1차) 서류(계량)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수출 성과	수출실적,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등

-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 관세청 수출통계 및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 추진절차



-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수출바우처 통합 콜센터 (02-6004-8400, 070-4866-0722)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양진솔 대리 (02-3460-3224)
- 기타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02-3771-1100)

## 참고사항

### □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3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공고명 : 2024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Q&A

**Q**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이 불가 합니다.

단,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에는 동시신청이 가능하나, 1개 사업에만 최종 선정됩니다.

\* 예)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확장)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Q** 기업분담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A** '24.4월 이내 최대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 이상 납부 후 4월 이내에 분담금 전액 납부 필수,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 협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페널티가 있나요?

**A**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에 의거하여,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 기관별, 월별 지원사업 및 사업공고 현황

-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사업공고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공고명 기재
  - 대표 연락처 : 사업 문의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답변이 가능한 부서 연락처 기재
- 수출상담회 관련 (붙임3) 자료 회신 불가 사유
 

연간 100회 이상의 수출상담회가 예정되어있으나, 정확한 세부 내역은 현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음

이에 추후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상담회 연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에 안내 바람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및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12월 (연중 사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2024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KOTRA	02-3460-3332 / 728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202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02-3460-7285
	이동KOTRA	2024년도 이동KOTRA 사업 안내	KOTRA 지방협력팀	02-3460-7368
	무역사절단	2024년도 지방무역사절단 연간 파견사업 안내	KOTRA 지방협력팀 또는 각 지방지원단	02-3460-7327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KOTRA	02-3460-7361-4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Contact KORE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Contact KOREA)	KOTRA	02-3460-7387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KOTRA	02-3460-7569
	디지털무역인력(deXters)양성사업	2024년도 디지털무역인력·기업(deXters) 양성사업	KOTRA DX가속화팀	02-3460-3454

공고 시기	지원사업명	사업공고명	수행기관	대표 연락처
1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분기 내 진행 예정)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문	KOTRA 중소혁신기업팀	02-3460-7546
	지사화사업	2024 해외지사화사업(연중상시)	KOTRA	02-3460-7445
	지사화사업	2024 해외지사화사업(연중상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1-9676 , 9679, 9680
	지사화사업	2024 해외지사화사업(연중상시)	OKTA	02-2039-5082
	수출바우처사업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KOTRA 수출바우처팀	02-6004-8400 070-4866-0722
2월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KOTRA	02-3460-7494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KOTRA0카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인도네시아 지역	KOTRA0카카데미	02-3497-1198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프랑스 파리 스타트업 전시회 (Viva Technology)	KOTRA	02-3460-7569
3월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KOTRA0카카데미	02-3497-1187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 첫걸음	KOTRA0카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중국 화장품 시장 개척	KOTRA0카카데미	02-3497-114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해외시장 마스터 - 중동 건설플랜트	KOTRA0카카데미	02-3497-1147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1급(16기)	KOTRA0카카데미	02-3497-1185
	디지털 마케팅 과정	온라인 수출 마케팅	KOTRA0카카데미	02-3497-1186
	(대전)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해외 전시마케팅 (1차)	KOTRA0카카데미	042-338-1702
	(대전)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디지털 마케팅	KOTRA0카카데미	042-338-1702
	(대전)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온라인 플랫폼 활용	KOTRA0카카데미	042-338-1702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토론토 스타트업 전시회 (Collision)	KOTRA	02-3460-7569

4월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영업역량 향상	KOTRA0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일본 지역	KOTRA0카데미	02-3497-1198
	트렌드 이슈 세미나	트렌드 이슈 세미나(ESG)	KOTRA0카데미	02-3497-1185
	(대전)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과정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KOTRA0카데미	042-338-1702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테크크러쉬 디스럽트 전시회 (TechCrunch Disrupt)	KOTRA	02-3460-7569
5월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해외 전시마케팅	KOTRA0카데미	02-3497-1187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 첫걸음	KOTRA0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미국 지역	KOTRA0카데미	02-3497-1198
	디지털 마케팅 과정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KOTRA0카데미	02-3497-1196
	(대전)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국제 비즈니스 계약	KOTRA0카데미	042-338-1702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핀란드 헬싱키 창업 전시회 (Slush)	KOTRA	02-3460-7569	
6월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	KOTRA0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베트남 지역(기초)	KOTRA0카데미	02-3497-1198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해외시장 마스터 -북미 자동차부품	KOTRA0카데미	02-3497-1147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1급(17기)	KOTRA0카데미	02-3497-1185
	디지털 마케팅 과정	온라인 수출 마케팅	KOTRA0카데미	02-3497-1186
	CES 혁신상 수상 지원	CES 혁신상 수상 지원	KOTRA	02-3460-7569
7월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KOTRA0카데미	02-3497-1187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KOTRA0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일본 영유아용품 시장 진출	KOTRA0카데미	02-3497-1147
	(대전)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 첫걸음 (1차)	KOTRA0카데미	042-338-1702
8월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해외 전시마케팅	KOTRA0카데미	02-3497-1187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수출 첫걸음	KOTRA0카데미	02-3497-1187
	디지털 마케팅 과정	온라인 수출 마케팅	KOTRA0카데미	02-3497-1186
	트렌드 이슈 세미나	트렌드 이슈 세미나(탄소국경조정제도)	KOTRA0카데미	02-3497-1148

9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연계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GHK)	KOTRA	02-3460-7486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MDB 프로젝트 플라자,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KOTRA	02-3460-7487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영업역량 향상	KOTRA아카데미	02-3497-118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 진출	KOTRA아카데미	02-3497-1147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해외시장 마스터 -중국 소비자	KOTRA아카데미	02-3497-1147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1급(18기)	KOTRA아카데미	02-3497-1185
	(대전)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해외 전시마케팅 (2차)	KOTRA아카데미	042-338-1702

# 제 9 부

---



# 한국무역협회



## 기관별 지원사업(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기관명 : 한국무역협회
- 작성 참고사항
  - 지원사업명 :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에 포함되는 기관별 지원사업명 기재
  - 지원사업별로 지원내용, 지원예산, 지원조건 등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을 해당년도에 기재

구분	'23년도	'24년도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5건(FIBO, OFFSHORE, MWCLV, SGP, ENLIT) 진행	전시회 3건(Reed Gift Fairs, FIBO, SMM) 진행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지원내용) ○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가 보유한 214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지원내용) ○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가 보유한 220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
KITA무역진흥 자금 융자	(융자조건) ● 금리 : 연 2.0~2.5%(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2.5%), 11~20년(2.25%), 21년이상(2.0%)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	(융자조건) ● 금리 : 연 2.5~3.0%(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3.0%), 11~20년(2.75%), 21년이상(2.5%)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문의처)02-6000-5658	(문의처)02-6000-5119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문의처)02-6000-5658	(문의처)02-6000-5119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문의처)02-6000-5658	(문의처)02-6000-5119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지원대상)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신청접수)비즈니스 및업 신청 페이지 '23년 4월 중 오픈 예정 (문의처)02-6000-5658 (Q&A) - 2023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NextRise 2023, Seoul>은 6월 1일(목), 2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신청접수)비즈니스 및업 신청 페이지 '24년 4월 중 오픈 예정 (문의처)02-6000-5119 (Q&A) - 2024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NextRise 2024, Seoul>은 6월 13일(목), 14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포춘 500대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팀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후속 투자유치, 공동 연구 등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문의처	02-6000-5658	02-6000-5119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증사업 진행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mailto:startup@kita.or.kr) / 02-6000-5119



### Q&A

Q

창업 연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협회의 글로벌 기업과의 밋업에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스타트업의 혁신 솔루션을 실제 다중복합시설 및 대기업 내외부 시스템에 접목하여 스타트업에게 기술 실증(PoC)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문의처	02-6000-5658	02-6000-5119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복합시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실증
-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branch.com)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영문 사업소개서 및 협력 제안서)

-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이메일 접수 병행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시장 내 실제 접목 사례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 02-6000-5119



## Q&A

**Q** 창업 연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정해지나요?

**A**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마다 모집요건이 상이하여 개별 사업 계획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용어 설명

**PoC(Proof-of-Concept), 개념 증명** :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용해보는 것.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양방향 매칭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문의처	02-6000-5658	02-6000-5119

### 지원대상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외 기업과 스타트업 연결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챌린지를 생성·관리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직접 운영

### 신청·접수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http://www.innobranch.com)) 가입을 통한 플랫폼 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기술의 시장성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시제품 출시 여부 및 대량 양산 가능성
- 신규사업 등록 시 공고 내용의 적격성

## 문의처

---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 02-6000-5119



## Q&A

---

**Q**

기업별로 한 명의 관리자만이 가입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가입 가능하며, 기가입된 기업의 경우 기업 소개 내용은 추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NextRise, Seoul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로, 국내외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 간 비즈니스 밋업, 부스 전시, 컨퍼런스, 워크샵, 스타트업 경진대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대상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신청접수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3년 4월 중 오픈 예정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4년 4월 중 오픈 예정
문의처	02-6000-5658	02-6000-5119
Q&A	2023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2024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Q&A	〈NextRise 2023, Seoul〉은 6월 1일(목), 2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NextRise 2024, Seoul〉은 6월 13일(목), 14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 지원내용

- 다국적 기업과의 비즈니스 밋업을 통한 해외 판로 확보

- 전시 부스 및 전시 공간 지원, 참관객 대상 기업 홍보
-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 4차산업 혁신기술,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

## 신청·접수

-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 ([www.nextrise.co.kr](http://www.nextrise.co.kr))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 밋업 신청 페이지 '24년 4월 중 오픈 예정
- 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www.innobranch.com](http://www.innobranch.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영문 사업소개서 등)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해외진출실: [startup@kita.or.kr](mailto:startup@kita.or.kr) / 02-6000-5119
- 넥스트라이즈 홈페이지: <https://www.nextrise.co.kr>



## Q&A

Q

2024년도 넥스트라이즈는 언제 개최되나요?

A

〈NextRise 2024, Seoul〉은 6월 13일(목), 14일(금)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 B홀, 더플라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tradeKorea(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등의 거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과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B2B e-marketplace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DB 타겟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협회가 보유한 214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 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어DB 타겟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협회가 보유한 220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li> </ul> </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li> </ul>

### 지원대상

-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서비스>

-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가 보유한 220만개 바이어DB를 활용하여 직접 희망국가 및 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미국, 중국, 일본 등)
  -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
    - 유망바이어와 국내업체 간 온라인 상시 거래알선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 실시간 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tradeKorea 마켓 입점 혜택〉
-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 활용 셀러스토어 무료 제작
  - 편의 및 제휴서비스
    - 화상상담툴 제공, 소액결제 지원, 송금 수수료 할인 등

## 신청·접수

- tradeKorea.com 회원 무료 가입 후 각종 서비스 신청
  - 영문 : [www.tradekorea.com](http://www.tradekorea.com)
  - 국문 : [kr.tradekorea.com](http://kr.tradekorea.com)

## 문의처

- 플랫폼마케팅실 : 02-6000-5577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
- ▶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FTA종합센터는 서울 및 전국 단위 공급망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는 관할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및 기초 컨설팅을 시행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담당 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최대 4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 원센터 (전국 18개소)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기초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 업체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① 50억원 이하 : 무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④ 500억원~1,000억원 이하 : 30% ⑤ 1,000억원~1,500억원 미만 : 40%  
 ⑥ 1,500억원 이상 : 50%

##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콜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서울 : 02-6000-7583~4
  - 경기(남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1번)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2번)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032-810-2824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 041-539-4531
  - 세종FTA활용지원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활용지원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활용지원센터 : 062-350-5862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활용지원센터 : 033-257-4071
  -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043-229-2722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 054-454-6601
  -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활용지원센터 : 053-222-3105~8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 052-287-3060~1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 051-990-7016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064-757-2164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비관세장벽(해외인증·지재권)으로 인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업체들에 맞춤형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콜센터, 특강/설명회 : 제한 없음
- ▶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비관세장벽 컨설팅 수혜기업  
(단, 품목이나 국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① 비관세장벽 대응 1380콜센터 연중 상시 운영
  - 내용 :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전문가의 무료 전화상담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 해외인증/지재권 분야 상담 요청

② 비관세장벽 현장방문 컨설팅

- 변리사 혹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1~4회) 하여 업체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내용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재권 기초교육</li> <li>▶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li> <li>▶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li> <li>▶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li> <li>▶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인증 기초교육</li> <li>▶ 해외인증 취득절차 세부안내</li> <li>▶ 신청문서 작성 지원</li> <li>▶ 해외 기술기준 및 표준 상담</li> <li>▶ 그 외 업체 맞춤 문의 대응</li> </ul>

③ 비관세장벽 특강/설명회 개최

-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제도, 품목별 주요국 시험·인증 획득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설명회 진행(연중 수시 개최)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신청·접수

- 현장방문 컨설팅: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제출 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③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안내 공고  
게시물 → 필수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02-6000-7582)



##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현장 컨설팅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한국무역협회(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 문의처

---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KITA무역진흥자금 용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용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 연 2.0~2.5%(고정금리)</li> <li>- 회비납부 10년이하(2.5%), 11~20년(2.25%), 21년이상(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 연 2.5~3.0%(고정금리)</li> <li>- 회비납부 10년이하(3.0%), 11~20년(2.75%), 21년이상(2.5%)</li> </ul>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membership.kita.net)</li> </ul>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용자
  -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 유의사항

-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 용자조건

- 금리 : 연 2.5~3.0%(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3.0%), 11~20년(2.75%), 21년이상(2.5%)
- 기간 : 3년(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 용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 신청·접수

-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용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선택서류
  - 용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문의처

---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membership.kita.net](http://membership.kita.net))



##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4)

글로벌 빅바이어 초청 및 국내 수출유망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 주선 및 부대행사 개최

- 행사 기간 및 장소 : 2024. 12. 3(화) ~ 4(수), 코엑스 B홀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800여개사(예정)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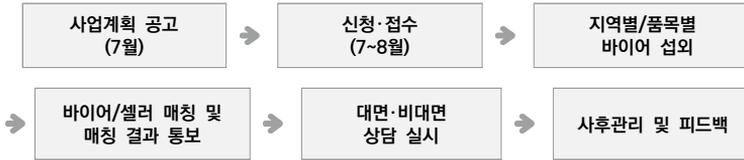
- 글로벌 빅바이어와 국내 수출유망기업 상담 주선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전문무역상사 초청 대형 수출상담회 개최
- 주한외교공관 초청 현지 시장진출 정보제공 컨설팅 및 세미나
- 우수상품 쇼케이스 운영
- 지원규모 : 812개사('23년 기준)
  - \* 참가비 무료(단, 심사를 통해 참가기업 선정)

###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7월~9월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참고] 공고명 : Korea Grand Sourcing Fair 2023 참가업체 모집
  - (경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해외 현지 전시·상담회 및 판촉전

- KITA가 국내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나가 개최하는 전시 형태의 상담회로, 참가기업별 개별 전시 부스 형태를 갖추면서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특징이 있음
- 유럽, 아시아 등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마케팅 행사와 연계, B2B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B2C 참관객 대상 판촉전을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 2024년 추진(예정)계획

순번	전시·상담회명	일정	장소
1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5.22(수) ~ 23(목)	도쿄국제포럼
2	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K-EXPO)	5.24(금) ~ 26(일)	포르트 드 베르사유
3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5.30(목) ~ 6.2(일)	호치민 SECC
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9.5(목) ~ 8(일)	자카르타 JCC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바이어 초청 대면 상담 (B2B), 일반 참관객 대상 홍보 (B2C)
- 상담 바이어 발굴, 매칭 및 통역 지원

- 인플루언서 초청 제품 홍보 등 부대행사 개최 및 지원
- 참가기업 개별 전시 부스 구성
  - \* 부스임차료 등은 참가기업 부담
- 온라인 전시관 (tradeKorea.com) 운영 및 홍보
- K-contents 연계 마케팅 지원 (Kmall24)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 상담회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공고 확인 필수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인터넷 주소)

순번	전시·상담회명	일정	전년도 사업 공고
1	도쿄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	5.22(수) ~ 23(목)	<a href="https://url.kr/otawj8">https://url.kr/otawj8</a>
2	파리 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K-EXPO)	5.24(금) ~ 26(일)	<a href="https://url.kr/5ozsu3">https://url.kr/5ozsu3</a>
3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5.30(목) ~ 6.2(일)	<a href="https://url.kr/67zpyq">https://url.kr/67zpyq</a>
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9.5(목) ~ 8(일)	<a href="https://url.kr/dz83oe">https://url.kr/dz83oe</a>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플래그십 B2B 상담회

대외무역법에 의거 '대한민국 공식 수출 국가대표'로 지정된 전문 무역상사가 해외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 초기 기업의 직접/간접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 \* 산업부 발급 유효 지정서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국내 유망 제조기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매칭 상담 알선 등 수출 마케팅 지원
  - \* 참가비 무료(단, 매칭 후 참가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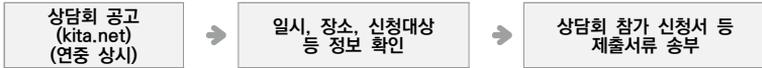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http://ctc.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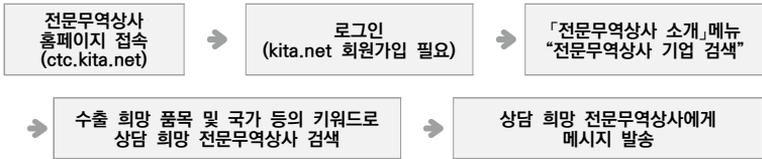
-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상담회 연중 상시 개최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오프라인 상담회



- 온라인 매칭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http://ctc.kita.net)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참고] 공고명 : 부·울·경 제조기업 X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 (경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활용 「Step up to Export」 마케팅 진행

대기업 · 재외동포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력시장 진출사업 추진  
- 글로벌 유통체인 전문무역상사\* 활용 현지 MD 초청 상담회 및  
해외 프로모션 사업 개최

\* 롯데마트, GS리테일, NH농협무역, H마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및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의 해외파트너사와 수출 상담회
- 우수 제조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해외 현지 판촉전 지원
  - \* 참가비 무료(단, 매칭 후 참가기업 선정)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http://ctc.kita.net)) 온라인 신청
  -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병행
- 상담회별 모집공고문 참조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 [ctc.kita.net](http://ctc.kita.net)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참고] 공고명 : Step up to Export with Lotte Mart & H Mart
  - (경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수출 상담회 개최

KITA 주관 유망 산업별 전문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셀러-소비자 간 제품 홍보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과 동시에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회 통해 수출 판로 개척 지원

### ● 2024년 추진계획

	전시·상담회명	전시 주관	일정	장소	홈페이지	비고 (전년 개최규모)
1	서울국제 스포츠레저산 업전(SPOEX)	KITA/ KSPO	2.22(목) ~ 25(일)	코엑스	spoex.com	바이어 140개사, 국내기업 40개사
2	인터배터리 연계 COEX 수출상담회	COEX	3.6(수) ~ 8(금)	코엑스	interbattery.or.kr/ko	바이어 62개사, 국내기업 462개사
3	월드IT쇼 (World IT Show)	KITA/ COEX	4.17(수) ~ 19(금)	코엑스	worlditshow.co.kr	바이어 45개사, 국내기업 123개사
4	코엑스 푸드위크 수출상담회( 서울국제식품산 업전 연계)	COEX	11.20(수) ~ 23(토)	코엑스	foodweek.co.kr	20개국 800개사 1,300부스

## 지원대상

- 해당 산업 분야 관심기업

## 지원내용

-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 전시회 연계 빅바이어 초청 대면·비대면 상담회, 세미나 등 부대 행사 개최
  - \* 전시회 부스 참가 시 참가비 기업 자부담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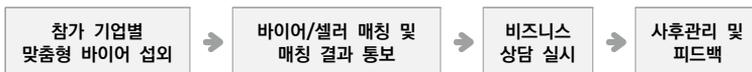
- 전시회 부스 참가 : 각 전시회별 지정 접수처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 전시회 참가기업 우선 매칭

## 처리절차

- 전시회 부스 참가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참가



## 문의처

- 전시회 참가 문의 : 각 전시회 홈페이지
- 전시회 연계 마케팅 사업 문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www.kita.net)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경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인터넷 주소)

순번	전시·상담회명	일정	전년도 사업공고
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22(목) ~ 25(일)	<a href="https://url.kr/26okm3">https://url.kr/26okm3</a>
2	월드IT쇼 (World IT Show)	4.17(수) ~ 19(금)	<a href="https://url.kr/j7v2d6">https://url.kr/j7v2d6</a>



##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KITA가 지자체,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유명 전문 전시회에 단체관 참가를 지원

### ● 2024년 추진계획

구분	전시회명	시기	장소	모집업체	교부기관
1	호주 시드니 선물용품 전시회 (Reed Gift Fairs)	2.17(토) ~ 2.20(화)	시드니 ICC	9개사	KOTRA
2	독일 쾰른 국제 피트니스 박람회 (FIBO Global Fitness)	4.11(목) ~ 14(일)	쾰른 Exhibition Centre	10개사	중소기업 중앙회
3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 박람회(SMM)	9.3(화) ~ 6(금)	함부르크 Messe	10개사	KOTRA

###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3년	'24년
지원내용	전시회 5건(FIBO, OFFSHORE, MWCLV, SGP, ENLIT) 진행	전시회 3건(Reed Gift Fairs, FIBO, SMM) 진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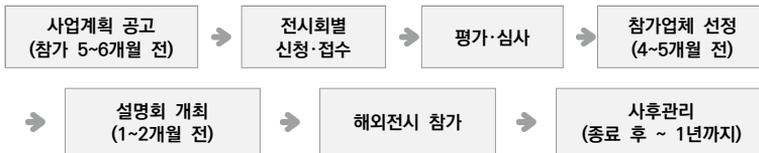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최대 70%) 및 장치비(최대 70%) 지원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 \* 전시회별 지원을 상이, 지원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 신청·접수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www.smes.go.kr/sme-expo](http://www.smes.go.kr/sme-expo))
  - KOTRA ([www.gep.or.kr](http://www.gep.or.kr))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참고] 공고명 : 2023 독일 쾰른 스포츠·피트니스 전시회 (FIBO 2023)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 (경로)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

무역업체의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채팅/화상/전화 맞춤형 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협회 회원사 (비회원사도 연 3회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변호사, 회계사, 무역실무, 해외인증, 지역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채팅/화상/전화)

상담분야	이용방식	컨설턴트
무역거래/결제	(전문가의 상담가능 시간에 맞추어, 고객이 원하는 상담형태로 사전예약)	무역실무 전문가
해외인증		해외인증 전문가
통관/관세		관세사
계약/클레임		변호사
세무/회계		회계사/세무사
환율/외환		외환전문가
온라인마케팅		오픈마켓 파워셀러
인사/노무		노무사
특허/상표		변리사
창업컨설팅		무역업 창업 전문가
글로벌 지역전문가		글로벌 권역별 현지 전문가

운송/물류		지역별 물류 전문가
전시마케팅		전시마케팅 전문가
Dx컨설팅		Dx(디지털화)전문가
기술상담		기술 및 방산 전문가
전자상거래		글로벌 e커머스 전문가
기타분야		농식품수출/해외시장조사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http://www.kita.net) > TradePro > 1:1상담/  
오픈상담



##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해외지점 설치인증 추천
    -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 지원내용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 추천서 발급

## 신청·접수

- 온라인 제출, 협회 심사(5-7일 소요)-> 협회승인 후 온라인 발급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 [발급] -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추천인증] -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전화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제출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또는 신용장 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에서 입력 후 제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
    -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 사업배경(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3개년), 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 \* 현지판매 및 영업 전략(마케팅 전략 포함)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APEC 회원국간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멀티 VISA로써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60~18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추천대상

- 법무부 훈령 제1192호 제3조에 의거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최소 6개월 이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추천 제외 대상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자격 요건 완화 ('18년 1월 ~ 신청일까지 상용목적으로 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한 자) →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추천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21개 가입국
  - VISA 면제(19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준비 서류(온라인 작성,첨부/별표는 별도 우편제출)

- 추천의뢰서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 소지자 명단
  - 사업자등록증명(2개월 이내 발급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확인용 실적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KTNET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명판 및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 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협회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총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온라인 첨부  
(여권서명 포함)
- 정보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서약서(온라인 전자서명)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 온라인발급(공동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처리절차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 Q&A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업무장애요소 발생 시 발급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tc.kita.net)

### 용어 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VISA 면제 출입국카드



##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기업이 무역분야 외국인 고용을 위해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자 할 때, 사증(VISA) 발급의 필요성을 인증해주는 추천제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추천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작성 및 첨부

## 신청서류

- 온라인 제출 및 심사(심사 후 추천서 온라인 발급)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온라인 제출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이력서 1부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무역인력 사증발급 추천 서약서 1부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 처리절차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www.kita.net) 참조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 제공

### 지원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 지원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 [수출입실적 증명서] → [발급 신청] → [용역/전자적무체물] 탭 선택 후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 거래증명서 서류
  - 송금 및 입금 증빙서류

## 처리절차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membership.kita.net) 참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Q&A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개방형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중견기업에 혁신역량을 수혈하고 대·중견기업은 스타트업에 인프라 및 사업화 기회를 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

-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혁신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스타트업 선발
  - 협회가 소싱/추천한 매칭 스타트업 대상, 참여 대·중견기업이 선발
- (스타트업)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 기회 제공
  - 대·중견기업과의 1:1 실무 밋업 및 IR 기회 제공

### 협업 외 추가 지원내용

- ▶ (일부 대기업 대상) 협력 촉진을 위한 실증 PoC 프로세스/자금지원 도입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솔루션의 대·중견기업 수요 연계성 등

## 제출서류

- (대기업) 혁신 수요 분야 자료 (전화/이메일 상담 가능)
- (스타트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협력 제안서 등) 업로드

## 처리절차



## 지원규모

- (스타트업) 약 40개사
  - \* '23년 지원현황 :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16개사 참여, 창업기업 310개사 연결 통해 47건 협업 사례 도출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 [yj.ko@kita.or.kr](mailto:yj.ko@kita.or.kr) / 02-6000-5849

### 용어 설명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



##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무역센터 CMC(코엑스 MICE 클러스터 위원회)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술의 현장검증 및 비즈니스 레퍼런스 축적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제품/솔루션의 실증을 위한 현장 PoC(Proof-of-Concept) 프로세스를 지원

### 지원대상

-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 지원내용

- 무역센터 CMC 보유 인프라(WTCS, 코엑스, 도심공항, 현대백화점, GKL 등)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 및 서비스 실증
- 대기업 협력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에 활용가능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https://innobranch.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솔루션의 무역센터 CMC사 수요 연계성
- 다중 복합이용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등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국문 IR 및 협력 제안서 등)

###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기업 미팅

신기술 테스트/시연

실제 구매 계약 등

### 지원규모

- 약 10개사
  - \* '23년 지원현황 : 무역센터 CMC 6개사와 53개사 스타트업 매칭을 통해 12개 프로젝트 현장 테스트 진행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 yongjun.lee@kita.or.kr/ 02-6000-5389



## 스타트업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서울 코엑스 2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AC/VC), 스타트업지원기관, 창업희망자 등

### 지원내용

-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 내 행사장, 회의실 및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 행사장(피칭센터, 150인 수용가능), 회의실(3개) 및 코워킹 라운지
  -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의 니즈에 따라 공간 대여

### 신청·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지원·사업 - 스타트업브랜치 - 이벤트 - 이벤트&미팅 예약하기 클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사업 내용 등 필수 기재)

## 처리절차

- kita.net 회원 가입 → 스타트업브랜치 멤버십 가입 → 이벤트 예약



## 오시는 길 및 이용방법

- 코엑스 동문(영동대로변)으로 입장하신 후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지나 좌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브랜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간 소개 및 사용 신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bit.ly/3I87ueG>

## 문의처

- 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 : sbranch@kita.net / 02-6000-5609



## 한·중 FTA, RCEP 현장방문컨설팅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 및 RCEP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실무, 중국 인증, 지식재산권, FTA 시스템 운영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수행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 직접 2년 내 FTA컨설팅 수혜 기업, 단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상담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수요자 맞춤형선택형 종합 컨설팅(관세/FTA, 인증, 지재권, 시스템)
  - FTA 활용 교육 1MD를 필수로 선택하고, 나머지 9MD에 대해서 총 4개 분야를 수요자 필요에 따라 구성하는 맞춤형 컨설팅 (MD=Man Day)



## 신청·접수

- 공고(예정)시기 : 2024년 3~4월 中, \* 변동 가능
- 신청 :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okfta.kita.net>)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국번없이 1380 전화→FTA활용상담→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상담 요청
- 신청기간 : ~2024. 11. 30(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기업분담금 : 총 컨설팅 비용이 200만원(MD당 약 50만원) 초과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 \*분담금 비율 전년 동일

직전년도 매출액	컨설팅 기업 분담금
50억원 이하	무료
50억 ~ 100억원 미만	10%
100억원~500억원 미만	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30%
1,000억원~1,500억원 미만	40%
1,500억원~대기업 미만	50%

\* 기업분담금 계산 예시: 총 컨설팅 액이 300만원이고, 해당기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일 경우, 기업분담금은 10만원 [ (300만원-200만원)\*10% ]

- 제출서류 :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okfta.kita.net>)  
내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온라인 신청

신청	▶ 참가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함께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국제청 홈택스 발급분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분 불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 추진절차



##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사업비 1.5억원)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02-6000-5743/4992)  
〈컨설팅 신청접수 채널〉
  - 전화 : 국번없이 1380 콜센터  
(FTA상담활용)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문의)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 참고사항

〈전년도 사업공고 참고〉

- 공고명 : 2023년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로)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공지사항
  - (홈페이지)

상세  
보기





## FTA 콜센터 1380 운영

### 전국 어디서나 FTA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FTA 콜센터 ☎1380은 '화재신고는 119'처럼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입니다.
- ▶ ☎1380은 전화 키패드에서 물음표를 형상화 한것으로, FTA 활용과 관련된 궁금증은 무엇이든 해결해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하시면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상담분야 :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 관세율, 인증 수출자, 원산지 관리시스템, 사후검증, FTA 교육 등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토 · 일 및 공휴일 휴무

## 신청·접수

- 전화상담 : 전화상담은 요청하신 상담사항에 대해 예약하신 시간에 전화로 답변을 드리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내용과 원하시는 상담 시간을 입력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로 답변을 드립니다.
  - 예약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이용안내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가능하며,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율,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시스템, 사후검증 등 FTA활용 실무 전문분야에 대한 문의사항을 FTA전문가가 답변해드립니다.
- FTA 일일방문 컨설팅 :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 해소가 곤란할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1~3회 무료 지원)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80
  -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 지역FTA통상진흥센터
  - 경기(남부)FTA통상진흥센터 : 1688-4684(1번)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2번)

- 인천FTA통상진흥센터 : 032-810-2833~8
- 충남FTA통상진흥센터 : 041-539-4591
- 세종FTA통상진흥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통상진흥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통상진흥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통상진흥센터 : 062-350-5888
- 전남FTA통상진흥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통상진흥센터 : 033-256-3068
- 충북FTA통상진흥센터 : 043-229-2700
- 경북FTA통상진흥센터 : 054-454-6601(구내 134)
-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통상진흥센터 : 053-222-3105
- 울산FTA통상진흥센터 : 052-287-3060
- 부산FTA통상진흥센터 : 051-990-7000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통상진흥센터 : 064-759-2577

## 제 10 부

#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 한경협경영자문단 무료경영자문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대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과 법무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협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스케일 업을 위해 무료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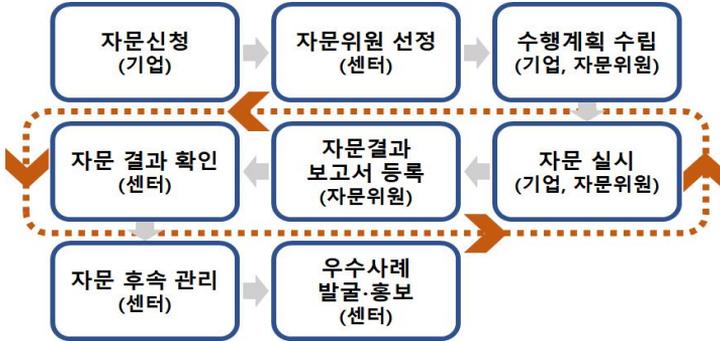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일반자문(단기)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경영전략관리, 마케팅, 기술생산-품질, 해외진출, 자금재무, 인사노무 등 희망 자문분야에 대해 원포인트 현장자문 제공
- 비즈니스 멘토링(중장기)
  - 한경협 경영자문위원이 6개월간 '비상근 고문(멘토)'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중장기 무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 일반자문 진행 중 종합적인 경영자문 희망 시 센터에 서류 요청 및 제출 후 진행

## 신청·접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목표 달성시까지 지속 자문(장기·밀착·공동 자문)

##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 Q&A

Q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한경협경영자문단 경영자문은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배정된 자문 위원이 기업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목표 수립 후 진행됩니다.

---

**Q** 목표 달성까지 지속 자문이라 되어 있는데, 횟수 제한이 없는건가요?

**A** 네, 저희 자문은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무료로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협경영자문단은 대기업 퇴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

**Q** 자문은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A** 자문 내용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 대표 또는 임원 이상 의사결정권자가 자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경영닥터제

대·중견기업, 협력업체, 경영자문단 3자 협력 자문으로 대·중견기업 1·2차 협력업체(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6개월간 현장 중심 자문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 대·중견기업의 협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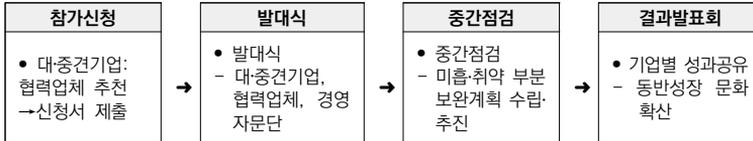
###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실천

협력업체	한경협 경영자문단	대·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신청→대·중견기업</li> <li>- 경영애로 및 경영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매칭→협력업체, 대·중견기업 결과 안내</li> <li>- 담당자문위원 선정(매칭)</li> <li>- 자문프로그램 기획·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추천→센터</li> <li>- 참여업체 추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협조</li> <li>- 경영자문 CEO 참여</li> <li>- 자문이행 전담TFT 설치·운영(권장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제공(6개월 이내)</li> <li>- 종합 경영진단, 강점·약점 분석</li> <li>- 마케팅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li> <li>- 협력업체에 무료 경영자문, 경영노하우 전수</li> <li>- 맞춤형 교육 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점검</li> <li>- 협력업체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협력업체 애로 파악·지원</li> <li>- 협력업체 경영닥터제 성과 분석·취약부분 보완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결과 성과분석</li> <li>- 실행내용에 대한 성과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li> <li>- 결과발표회, 비즈니스멘토링 등 사후 지원·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li> <li>-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 관리</li> </ul>

## 신청·접수

- 센터 공문발송(대·중견기업) 및 홈페이지 공지 → 대·중견기업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참여기업 확정



##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http://www.fkilsc.or.kr)



## 대기업 협력사(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해 한경협경영자문단이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역량진단 및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교육과 자문 등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은 대기업의 협력사(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참여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 → 점검대상 협력사 선정 → 현장실사 및 교육·자문 → 결과 전달 및 개선방안 제시



###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3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http://www.fkilsc.or.kr)



## 중소기업 경영진단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영전략,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생산관리, 연구개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내부의 경영역량을 분석하고 경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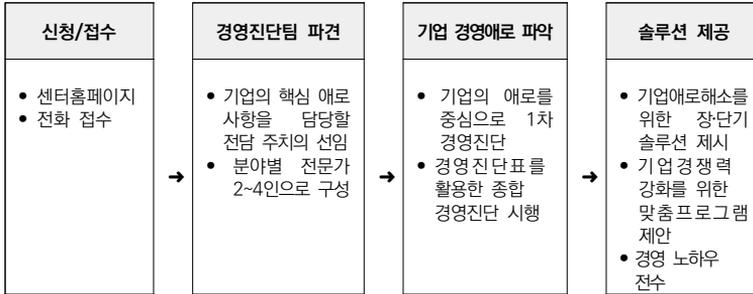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 지원내용

- 경영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종합 경영진단 시행
  - 진행기간 : 1개월 이내(협의 후 조정 가능)
  - 장 소 : 현장방문
  - 진단위원 : 한경협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4인으로 구성된 경영진단팀
  - 진단대상 : 중소기업(CEO, 부문별 임원, 부서 등)
  - 진단내용 : 기업을 방문하여 각 분야별 현장진단 실시
  - 진단비용 : 투입 인력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유·무료 협의

## 신청·접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화(02-3153-7950)



##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



## 맞춤형 교육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개척, 법무 등 기업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 교육대상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예비창업자) CEO 및 임직원
  - 교육접수 : 연중수시
  - 교육장소 : 신청기업에서 준비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커리큘럼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기술/생산, 해외시장개척, 창업, 법무, 기타 8개 분야별 86개

### 신청·접수

- 환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http://www.fkils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 : [www.fkilsc.or.kr](http://www.fkilsc.or.kr)



## Q&A

**Q** 교육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 CEO 및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주제에 맞춰 자문위원 강사를 매칭 및 파견해 드립니다.

**Q** 교육커리큘럼에 희망하는 교육이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희망하는 교육이 커리큘럼에 없는 경우 센터에 직접 연락하시어 희망하는 교육을 말씀해주시면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 드립니다.



## 자문 우수기업 시상

한 해 동안 환경협경영자문단을 통해 자문을 받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와 좋은 자문사례를 창출하여 본보기가 된 중소기업을 우수자문기업으로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대상) 환경협경영자문단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우수자문기업 상패 수여
  - 환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이사장 명의 상패 수여
- 환경협경영자문단 자문 우수사례집 발간
  - 자문우수기업의 성과가 담긴 우수사례집을 통해 사례 공유,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자문 참여 유도 및 자문 선순환 확산

### 신청·접수

- 환경협경영자문단의 추천을 받아, 환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fkilsc@gmail.com)

● 선정과정



**문의처**

- 환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 02-3153-7950



**Q&A**

**Q**

자문을 받아야만 우수사례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네, 자문위원 추천이 필수요건이므로, 환경협경영자문단을 통해 자문을 받아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 중장년내일센터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대상으로 전직스쿨, 생애설계, 재도약프로그램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알선·매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 지원내용

- 전직스쿨프로그램
  - 내용 : 중장년 퇴직예정자(2개월 이내 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전직계획 수립 및 구직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 : 기업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나눠서 운영
    - \* 기업과정 : 기업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단위별로 운영
    - \* 일반과정 : 10인 이하의 소규모 퇴직으로 기업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퇴직예정자를 위한 과정 운영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내용 : 40대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의 경력·진로설계를 위해 경력점검·미래계획 수립 등 장년에 진입하는 시점에 생애주기의

이해와 생애경력 점검을 통해 인생 후반부 일(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능동적으로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구성 : 구직자과정과 재직자과정으로 나뉘서 운영

\*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 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 재도약프로그램

- 내용 :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퇴직 후 변화 관리, 역량진단, 눈높이 조정, 취업 역량 강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재취업 및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인생 2막을 지원

- 구성 : 구직자 과정

\* 구직자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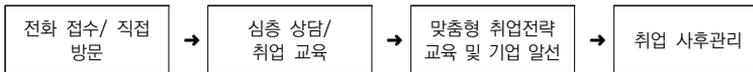
● 취업 알선

- 내용 : 중장년 채용 희망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맞춤 일자리를 알선



**신청 · 접수**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중장년내일센터(02-3153-7962~3)에 전화 신청·접수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문의처

---

-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중장년내일센터 : 02-3153-7962~3



## Q&A

---

**Q** 40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사업은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Q** 비용은 무료인가요?

**A** 네, 저희 센터에서 제공되는 중장년 교육 및 취업 알선은 모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 제 11 부

# 대한상공회의소





##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발생시 일정 부금을 지급하는 유사 보험서비스로 일반보험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모든 완성품/부품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 서비스용역업체(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광고탑 설치, 해체 등)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개인정보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객정보 보유 업체
-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필요비 및 유익비 : 손해의 방지·경감 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 신청·접수

---

- 홈페이지(insure@korcham.net)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참여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02-6050-3875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02-6050-3866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02-6050-3867
-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02-6050-3868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기업소모품을 비롯한 상품쇼핑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 지원내용

-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입점사 : 야놀자/여기어때/살레코리아(국내숙박), 아고다(해외호텔), 롯데시네마(영화), 민병철유포/시원스쿨/이패스코리아/교원구몬(교육), 밀리의서재(도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SK 베네피아/현대이지웰(대기업 임직원 이용 복지몰), 삼성전자/애플(전자제품), 온누리전통시장몰, 수산물 전용관, 스타트업 기업관, 행복마트(직판관)
-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한 기업

- 우대내용 :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우대 등 중기부 사업우대

## 신청·접수

### 가입 및 이용절차

<기업회원 가입 신청절차>

- ① 기업회원 가입신청(<http://welfare.korcham.net>)
  - \*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② 회원가입 승인 (24시간내)
- ③ 기업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임직원 일괄 정보입력 및 로그인계정 생성
- ④ 임직원에게 로그인계정 통보
- ⑤ 임직원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

<기업소속 임직원 개인자격 가입 신청절차>

- ① 개인회원 가입신청(<http://welfare.korcham.net>)
  - \* 개인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
- ②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후 서비스 이용  
단, 기 가입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기업관리자 승인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포인트 신청절차

- ①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 ② 계약체결 → ③ 포인트사용신청 →
- ④ 포인트 사용승인 → ⑤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공지 →
- ⑥ 포인트 사용 → ⑦ 포인트 월 정산

##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신청절차

- ①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완료 후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근로자수 확인용)
- ② 인증서 발급 승인
- ③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

## 문의처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88-6555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 [welfare.korcham.net](http://welfare.korcham.net)



## Q&A

**Q** 복지플랫폼에 가입시 가입비와 이용료가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개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한 후 기업 승인이 되며, 기업관리자가 전체 근로자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개인자격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2022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Q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면 복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의 복지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용어 설명

**복지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성과공유기업**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코참경영상담센터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전화상담(1600-1572)
  -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 온라인 상담(www.korcham.net)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 방문상담
  -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 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 처리절차

- 1단계 상담신청
  - 전화(1600-1572), 온라인(www.korcham.net), 방문 상담신청

- 2단계 상담실행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

## 지원규모

- 연간 약 10,000건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Q&A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A**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해드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사

### 지원내용

- 서비스 분야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 검토위원
  -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

### 처리절차

-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 행사/교육>코참경영상담>온라인 상담신청 탭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용횟수

---

- 제한 없음 (내부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T. 02-6050-3479
- 홈페이지 [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



## 2024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

발행년월 : 2024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전화 : (044) 204-7477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http://www.mss.go.kr)